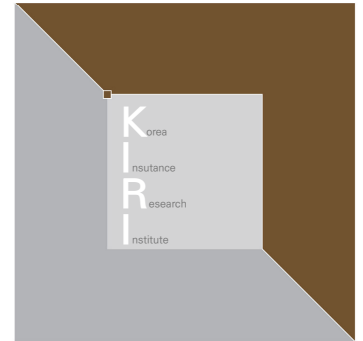




# 2018 연차보고서

2019. 1

## 『2018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2018년은 보험연구원이 개원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여 보험산업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개원 당시 8명이었던 연구 책임자가 현재 30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연구 분야도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거시경제, 법, 사회복지 등의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보험산업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보험산업 싱크탱크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2018년에 연구 관리의 틀을 확고히 하고 금융당국,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연구성과를 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자부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보험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연구계획 등을 정리한 201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등 4대 사업목표하에 이루어진 2018년 연구성과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위기관리와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장의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 각종 연구행사 내용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에서부터 실손의료보험, 여성연금, 해외진출, 자율주행자동차, 소비자 보호, 4차 산업혁명과 판매채널, 사이버보험, 그리고 Solvency II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는 신성장 모색, 경영 효율성 제고,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소비자 신뢰 확보 등 2019년의 4대 사업목표하에 수행하게 될 보험연구원의 주요 연구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자산운용 전략, 채널 전략, 시스템 위험 대응 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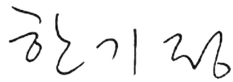
4장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입니다. 보험 및 금융전문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 간행물 소개와 금융·보험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인 5장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험산업은 인구고령화, 소비자 신뢰, 제4차 산업혁명, IFRS 17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보험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당면한 현안과제를 적시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전파하고 공론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보험연구원장

한기정 

# I. 2018년 주요 연구

## 1.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16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21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2.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 26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28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30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32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34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36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38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3.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 42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44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사례
- 46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 진출 현황과 시사점
- 48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50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 52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과 대응
- 54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56 자본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 4.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60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시사점
- 62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64 퇴직연지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5.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 68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 70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72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74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78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 방안
- 80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 8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연구
- 84 보험산업 경쟁도 평가

## 7.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88 Markov 전환율을 활용한 자영업자 생애근로유형별 연금소득대체율 추정
- 89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 9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 91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신계약 성과와 채널다각화 분석
- 92 국제회계기준(IFRS 17)하에서의 사망률 위험조정 평가

### CEO Report

- 93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94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KIRI 리포트 포커스

- 95 주요 인슈어테크 기업 사례와 시사점
- 95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 96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 97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 98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시사점
- 9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 99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
- 100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 10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 102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 103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 104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과 금리위험관리
- 104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 Contents

|     |                                    |
|-----|------------------------------------|
| 105 |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
| 106 |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
| 107 |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
| 108 |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사이버 리스크 관리             |
| 109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
| 110 |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                  |
| 111 | 아베노믹스 5년의 평가와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특징     |
| 111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비교      |
| 112 | 숙박공유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검토과제            |
| 113 |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
| 114 |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비용 편익 분석             |
| 115 |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
| 115 |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분석               |
| 116 |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 117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
| 118 | 국고채 시장 개선과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효과           |
| 119 |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과 시사점             |
| 120 |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 유효성 논란               |
| 120 |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
| 121 |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
| 122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 방안 제안       |
| 123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
| 124 |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써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
| 125 |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
| 126 | 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와 신용부도스왑 발행            |
| 127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
| 128 |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
| 128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 및 시사점             |
| 129 |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
| 130 |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 131 | 빅데이터에 나타난 보험산업                     |
| 132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
| 132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                          |
|-----|--------------------------|
| 134 |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
| 134 | 금리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

- 135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험
- 13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효과
- 13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변화의 영향
- 136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 136 인슈어테크와 보험금청구 간소화
- 136 국내 가상화폐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 137 파생장해 장해율 산정 관련 대법원판례 및 장해분류표 개정안의 내용
- 138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과 영향
- 138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 138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 139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과 시사점
- 139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 140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 140 미니보험 상품의 개요 및 전망
- 140 자연재해 대비와 타조증후군
- 141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전략
- 141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와 시사점
- 142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듀레이션 변화
- 142 국내 PEF 산업의 성장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 142 기업의 평판훼손과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 143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 143 금융분쟁 소멸시효 중단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검토
- 144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4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
- 144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 145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 145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와 시사점
- 146 보험회사 현금성 자산비중의 하락세와 시사점
- 146 블록체인의 발전과 영국 금융감독청의 우려사항
- 146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 147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 147 투자수단으로서 비금융기업 영구채 현황 및 특징
- 147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48 영국과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강관리 사례: 행동경제학적 접근
- 148 보험계리사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 Contents

- 149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 149 중국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
- 149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대응
- 150 EU의 IFRS 17 채택 경과와 보험회사 준비 현황
- 150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추가 관련 법적 쟁점
- 151 터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 151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 효과
- 151 IFRS 17 도입에 따른 사망률 추정 관련 이슈
- 152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의 특징
- 152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53 한·중 FTA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시사점
- 153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보험
- 15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 154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 154 주요국의 재해지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 155 미국·EU의 재보험 협상 결과와 시사점
- 15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 155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 156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 156 주요국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 157 호주의 생명보험 수수료 정책과 시사점
- 157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 157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
- 158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
- 158 중국의 소액간단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 159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
- 159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 고령화리뷰 포커스

- 160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 161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 16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 163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 163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 164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원인과 시사점
- 165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
- 166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 167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 발전 방향
- 168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 169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적립금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 170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 171 30~49세 근로세대,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 필요
- 171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 172 건강검진과 국민의 건강성과
- 172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 173 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 173 노년기 가구형태와 인지기능
- 174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 174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과제
- 175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案) 비교
- 175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 176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
- 176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감독동향과 시사점
- 177 연금 선진국의 위험자산으로 투자 전환사례와 함의
- 177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
- 178 일본 디폴트옵션제도 시행과 시사점
- 178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 179 영국 Master Trust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과 함의
- 179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사례 및 시사점
- 180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 180 모바일 건강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과 시사점
- 181 수술입원일수 감소와 보험회사의 대응
- 181 미국 퇴직연금의 TDF 활용 현황 및 함의
- 182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 Ⅱ. 2018년 주관 행사

### 1. 심포지엄

- 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188 보험상품 변천과 향후 과제
- 190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 192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 194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 196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 198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200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전략
- 20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 204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206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208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 210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행사
- 21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 2. 국제심포지엄

- 216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 220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
- 224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 228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232 정량적 위험 관리 선진화 방안 제시 - 생애주기모형 및 보험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 233 채권의 리스크 관리와 시계열 분석
- 234 시장 정보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재보험 전략 이론

### 4. 고령화포럼

- 236 예방의학의 이해
- 237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이슈

### 5. 금융정책포럼

- 240 보험소비자행동 분석: 이콘(Econ)과 휴먼(Human)
- 24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보험산업의 과제



### Ⅲ. 2019년 주요 연구계획

#### 1. 신성장 모색

- 244 해외 주요국 생명보험상품 체계 분석
- 244 질병 및 사망원인 변화와 보험의 역할
- 245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
- 245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46 의료배상책임의 현황 및 과제
- 246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 247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예방서비스 활성화
- 247 인도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2. 경영 효율성 제고

- 248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전략
- 248 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 249 직접판매 채널의 규제와 운영전략
- 249 소비자의 보험가입 특성 및 생명보험회사 마케팅 전략
- 250 퇴직연금 요구자본 제도 도입과 경영전략

#### 3.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 251 보험산업과 예금보험: 확정형 목표기금을 중심으로
- 251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방안
- 252 보험그룹 규제체계 연구
- 252 공제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 253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4. 소비자 신뢰 확보

- 254 암보험 약관의 해석: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25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255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255 보험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 분석

## IV. 2018년 연구 관련 활동

- 258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259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 260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261 고령화리뷰
- 261 각종 대외 연구 활동
- 264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266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 V. 일반 현황

- 268 경영비전
- 268 연혁
- 269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270 임직원 현황
- 270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273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 2018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포커스·이슈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 및 웹 월간지 『고령화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 I.

## 2018년 주요 연구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금융·보험 이슈 연구



# Chapter 1

##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동향분석실 | 보고서

16

**연구배경** 보험산업은 시장포화와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하락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2007년 12.7%에서 2017년 7.7%로 하락하였다. 시장포화에 따른 신규수요 위축, 해약 증가 등은 장기적인 성장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과거 고성장을 주도하였던 저축성보험이 저금리 및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신규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 둔화 효과를 상쇄하면서 지속적인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규제 환경의 변화도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시행과 이에 따른 요구자본 확대는 보험회사의 목표 및 영업전략 수립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토대로 2019년과 중장기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를 전망함과 더불어 효과적인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IMF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18년과 같은 3.9%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금융규제 강화와 수출수요 감소, 무역 분쟁 확산 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여건 개선과 소매판매 증가, 일본 경제의 민간소비 증가 등 수출수요 및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경제는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수출 증가 등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018년에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는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순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0.1%p 하락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활성화 정책,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세 지속,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등은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 경제 둔화, 유가 상승세 확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나 경기부진, 물가상승률 둔화로 국고채 금리(3년물)는 2018년 1.9%, 2019년 2.2%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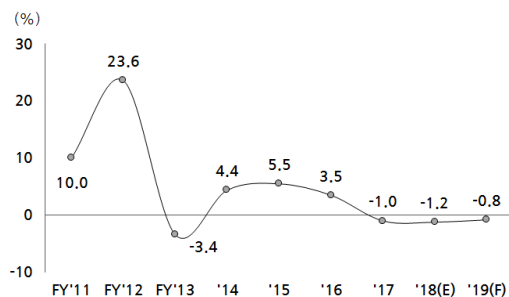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산업 전망

### 〈보험산업 종합〉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포화와 제도적 요인 등으로 전년 대비 2018년 1.18%, 2019년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IFRS 17 등 회계제도와 신진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 확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판매유인이 약화되고 보장성보험의 경우 경기부진 지속, 시장포화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임금 상승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가 둔화되어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새 국제회계제도 도입과 건전성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들이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종신보험의 수요둔화, 시장포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자본부담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판매, 공시이율 하락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각각 전년 대비 17.8%,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퇴직연금은 IRP 가입 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은퇴 시장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 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수수료 인하 압력,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상해·질병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 성장세 회복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IFRS 17 도입 이후 자본부담 확대에 대비한 소극적인 판매전략,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보증이율 하락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성장할 것이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가세를 제한하여 각각 전년 대비 -17.4%,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IRP 가입 대상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 종목                  | 2017  |       | 2018(E) |       | 2019(F) <sup>1)</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전체 생명보험             | 114.0 | -4.9  | 108.9   | -4.5  | 104.8                 | -3.8  |
| 보장성보험 <sup>2)</sup> | 41.8  | 3.6   | 42.6    | 2.1   | 43.3                  | 1.6   |
| 저축성보험 <sup>3)</sup> | 56.5  | -8.9  | 49.6    | -12.3 | 44.3                  | -10.6 |
| 퇴직연금                | 14.9  | -10.9 | 15.9    | 6.6   | 16.4                  | 3.1   |
| 기타 <sup>4)</sup>    | 0.8   | 0.4   | 0.8     | -0.8  | 0.8                   | 0.8   |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

3)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

4) 일반단체보험을 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상해·질병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3.0%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 세제혜택 축소의 영향이 지속되어 감소세가 심화되고 상해·질병보험과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IRP 가입 대상 확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증가, 할인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감소세 지속과 해상보험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보증·특종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 등으로 연금부문과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합형보험이 높은 보험료와 상품구성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한 결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직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해·질병보험은 신상품 수요 지속,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갱신주기 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성장세를 제한하여 전년 대비 0.3%p 하락한 1.9% 증가가 예상된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타 금융권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에 의한 경쟁 심화 등이 퇴직연금 성장세를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증가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무보험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보증·특종보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 종목      | 2017 |      | 2018(E) |     | 2019(F) <sup>1)</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전체 손해보험 | 88.3 | 4.5  | 91.0    | 3.0 | 93.5                  | 2.7 |
| 장기손해보험  | 49.1 | 2.8  | 80.2    | 2.2 | 51.2                  | 1.9 |
| 연금부문    | 13.5 | 14.1 | 50.2    | 5.9 | 15.0                  | 4.4 |
| 자동차보험   | 16.9 | 2.8  | 14.3    | 0.2 | 17.0                  | 0.5 |
| 일반손해보험  | 8.9  | 4.8  | 16.9    | 8.3 | 10.5                  | 8.4 |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중 장 기 전 망**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적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하였다.

OECD 주요국의 자료 분석 결과 기대여명 상승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하락시키고 경제성장률 및 금리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공적보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금융수요를 감소시키고 은행업 및 타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자금수요 부진으로 장기금리는 중장기적으로 2.5~3.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와 경제환경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정하여 수입보험료와 수익성을 전망한 결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 증가하여 성장세가 정체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생명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1% 증가하고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보험산업 주요 경영 및 정책과제로 수익성 관리, 보유계약 관리,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고 중장기로는 성장성 제고, 수익성 제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제시하였다.

**2019년 경영·정책과제** 2019년 보험산업 주요 경영 및 정책과제는 수익성 관리, 보유계약 관리,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수익성 관리를 위해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인건비 효율성 제고, 상품 단순화와 신뢰성 제고 등의 비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요구자본 대비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최적화하고 장수위험의 측정 및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 감소와 해약증가는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유계약 관리를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해약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고 고아계약 관리가 필요하며, 변액보험 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적보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성화 및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해 공적보장 확대가 사적보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경영·정책과제**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로는 성장성 제고, 수익성 제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제시하였다.

양적, 질적 인구구조의 변화, IT기술 접목 확산, 위험의 변화 등은 보험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업을 통한 보험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스페인과 같이 공적보장의 축소를 민영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성장성을 제고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보험료 결정 등에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비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확한 보험금지급 기준을 정립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금리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LM 관리를 통한 자본비용관리를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변액보험 수수료 소송의 영향으로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008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이는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동향분석실 | 연구보고서

21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은 보험시장 포화, 인구고령화, 저성장·저금리로 인한 보험수요 둔화 등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는 2018년부터 둔화되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인구고령화는 보험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금융환경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도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자금시장의 초과공급으로 저금리를 유지시키고 있다. 소득의 감소와 금리수준에 맞는 보험료 조정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성장성, 수익성 둔화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IFRS 17 도입으로 수익인식 방식이 달라지고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금리, 해약률 등의 변화가 보험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성과 수익성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로 수익성의 변동성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전망에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둘째,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우선 본고에서는 보험산업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경제, 인구규모가 유사한 8개 국가(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의 인구구조, 경제·금융환경, 제도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기대여명 상승은 65세 이상 인구비중 상승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과 관련이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의 상승은 노인부양비율 상승과 관련이 있고 노인부양비율은 제도적 측면의 변수인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의료비지출 비중 상승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준조세인 사회복지기여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금융·보험산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비중과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장기금리 간에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의 수익성 간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역 U자형의 관계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증가율이 특정 수준 전후로 하락(혹은 상승)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특정 수준의 증가율 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수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고 있다. IFRS 17 등 자본규제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등 공적부문의 역할 확대 등으로 보험산업 수입 및 원수보험료는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추세적 흐름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 규모는 축소되고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률과 금리 하락 등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변화 등 복지제도의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보험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보험료 규모를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과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전망하였다.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에 따라 수입 및 원수보험료, 신계약보험료와 사업비, 지급보험금,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전입액,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등의 추정방정식을 설정하고 각 변수들을 설명하는 외생변수들을 추정방정식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외생변수는 생산가능인구비중, 물가지수, 실업률, 경제성장률, 국고채 금리, 주가지수 등이다.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각 내생변수들의 표본 내 예측치가 실제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에 필요한 외생변수들의 전망치는 OECD 주요국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수입보험료(1.7%)와 보험영업이익(14.5%)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 차감전이익규모는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원수보험료(0.4%)는 증가하고, 법인세차감전이익(3.6%)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수익성 제고 사례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성장성, 수익성 둔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스페인 보험산업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작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로 보험료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자기자본이익률은 OECD 9개국 평균보다 높다. 재정위기 이후 낮아졌던 스페인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공적영역보완을 통한 성장성 제고, 보험금 누수억제와 자산부채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스페인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6년 기준 72%이다. 2014년 발표된 스페인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연금 상승률 보증을 인하, 셋째, 연금수령 연령 연장 등이다. 연금개혁안 발효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은 증가하였고, 저축성보험 신상품의 보증이율 인하, 보증이율을 지급 시점을 만기 도래 시에 제한, 상품의 보장축소를 반영한 보증 및 판매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요증가에 대응하였다. 한편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료보험 혜택 축소,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 장기화, 고급 의료시설 수요 증가로 민영





## Chapter

# 2

## 보험회사 위험관리 제고

-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황인창(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보고서

## 연구배경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은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채권투자 시 환헤지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주요내용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29.9% 증가하였고, 대부분 채권형 자산을 위주로 한다.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2013년 말 4.7%에서 2017년 말 13.3%로 8.6%p 증가하였고, 손해보험도 2013년 말 6.5%에서 2017년 말 12.3%로 5.8%p 증가하였다. 투자자산별로 살펴보면, 전체 기관투자자의 외국채권 및 Korean Paper 투자 중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2017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Korean Paper가 아닌 외국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운용되는 채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회사 해외투자와 관련된 규제 추이를 살펴

보면, 2000년대 이후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보험회사 해외투자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행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에서 외화자산 및 외국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보험업법 제 106조)를 정하고 있지만, 2017년 7월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환위험관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환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해외채권은 평균-분산 효율성 제고와 장기채권 제공 측면에서 국내 보험회사에게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해외채권투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위험분산에 도움이 되거나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은 장기자산 편입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기투자자 관점에서 해외채권은 다양한 장기채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간 간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해외채권이 장기투자자에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인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는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가지는 확률적 특성과 장기투자자의 위험회피 정도 등과 같은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해외투자 시 외화변동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요 자산별 적



현재 대부분의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 회피를 위해 외화자산에 대해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완전헤지는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 목적·해외채권의 통화종류·기존 투자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 헤지 비용 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환헤지전략이 필요하다.

정 환헤지 비율을 정하여 환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헤지전략은 헤지 정도(환헤지 비율)와 헤지 방법(헤지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적으로는 투자자산의 미래 수익률, 위험 등을 예측해야 하는 최적헤지전략보다는 헤지비용유지 전략을 주로 활용한다.

본 보고서는 200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채권을 대상으로 해외채권별 헤지전략에 따른 수익률 분석을 수행하였다. 헤지전략은 헤지비용유지전략을 중심으로 완전헤지(Full Hedge), 부분헤지(Partial Hedge, 본 연구에서는 50%), 미헤지(Open or Naked)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일본·독일 채권은 환헤지 시 기대수익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환헤지 시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호주 채권은 반대로 감소하였다. 둘째, 미국·일본·영국·독일 채권은 완전헤지전략에서 위험이 가장 낮았지만, 호주채권의 경우 부분헤지전략에서 위험이 가장 낮았다. 셋째, 환헤지가 '해외채권 수익률과 국내자산 수익률(본 분석에서는 한국 국고채 10년물을 활용)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해외채권에서 환헤지 시 국내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넷째, 환헤지가 해외채권투자 기대수익률, 위험, 국내자산과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기간에

따라 분석해 보면, 투자기간이 5년 이내에서는 정성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결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 회피를 위해 외화자산에 대해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 영향을 실증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통화 종류에 따라 환노출을 통해 캐리트레이드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헤지 보다 부분헤지가 해외채권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환헤지는 해외투자수익률 변동성을 낮춰 전체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위험분산효과를 낮춰 해외채권 편입 유인을 감소시킨다. 셋째, 이러한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의 영향은 투자기간이 5년 이내에서는 환헤지 영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5년 초과 장기투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해외투자 목적·해외채권의 통화종류·기존 투자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 헤지 비용 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환헤지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본 보고서의 실증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환헤지전략 수립 시 헤지수단에 따른 헤지 비용 등도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임준환(선임연구위원)·최장훈(연구위원)·한성원(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관점에서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제로금리 유지, 수량적 완화정책, 그리고 선제적 지침으로 특징화되는 초저금리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정상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금리변화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고는 보험부채를 경제적 가치 또는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금리위험 측정의 산출방식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먼저 시나리오별 듀레이션 산출 방법을 소개하면,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보험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 하락금액을 측정하여 듀레이션을 산출하였다. 금리충격시나리오는 DNS 모형으로 산출한 평균회귀, 금리수준상승, 금리수준하락, 금리기울기상승, 금리기울기하강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추정된 DNS 모형을 활용하여 1년 후 금리변화의 변동성 충격시나리오를 신뢰수준 99.5%로 생성한다. DNS 모형을 통한 충격시나리오 창출은 수준 및 기울기 변동성으로 분해하고 곡도의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신뢰수준 99.5%으로 상정하고 있다. 충격시나리오는 만기 20년까지 적용하였으므로 여기에 Smith-Wilson 기법으로 외삽하여 만기 100년까지의 금리시나리오를 창출하고 있다. Smith-Wilson 외삽기법을 적용해 DNS 모형으로 창출된 만기 100년까지의 금리기간구조 경로를 2,0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2,000회 시뮬레이션으로 산출된 결과들의 평균을 충격시나리오의 금리기간구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듀레이션 산출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금리와 보험부채의 실제만기를 적용하여 도출된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은 약 15.1년으로 추정된다. 둘째, 금리시나리오를 도입한 이후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금리위험은 시가평가로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인 15.1년과 유사하다. 평균회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4.5년, 수준상승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3.5년을 보여 주지만 수준하강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5.6년을 보여준다. 기울기상승 시나리오 및 기울기하강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각각 14.1년과 15.1년으로 산출된다. 셋째, 중소형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회사별 듀레이션은 큰 차이가 없다. 대형 보험회사(3사)에 대한 충격 이전의 듀레이션은 15.7년이다. 충격 시나리오 금리위험은 평균회귀 시나리오 15.1년, 수준상승 시나리오 14.1년, 수준하강 시나

본 연구는 보험부채의 시가모형과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리오 16.2년, 기율기상승 시나리오 14.7년, 그리고 기율기하강 시나리오 15.6년으로 각각 산출된다.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충격 이전의 듀레이션은 12.1년이지만 평균회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1.6년, 수준상승 시나리오에는 10.5년, 수준하강 시나리오에는 12.7년이다. 기율기상승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1.0년, 기율기하강 시나리오에는 12.2년으로 각각 추정된다.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충격 이전의 듀레이션은 16.7년으로 추정된다. 평균회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6.3년, 수준상승 시나리오에는 15.5년, 수준하강 시나리오에는 17.1년, 기율기상승 시나리오에는 15.9년, 그리고 기율기하강 시나리오의 경우 16.7년으로 각각 추정된다.

**결론** 본고에서는 보험부채의 시가모형과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였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금리환경 변화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포트폴리오 상품믹스전략, 자산듀레이션 확대,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재무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으로 본 모형은 모든 모형이 그러하듯이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고에서는 현행 RBC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듀레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금리위험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위험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모형은 계약자의 해지행위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향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리상승은 보험계약자의 해지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해지증가는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수익압박으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서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산배분과 이에 따른 금리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금리변화가 보험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도록 보험부채뿐만 아니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보고서

30

**연구배경** 본 연구는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에 기존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추가되는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기대수명의 추세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에 장수위험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바탕으로 요구자본 관점에서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장수위험을 측정해보고 장수위험 요구자본 측정과 관련한 이슈들을 논의한 후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K-ICS 초안의 장수위험 측정 방식인 사망률 17.5% 개선 충격 방식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요구자본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장수위험은 3.91조 원에서 5.46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말 생명보험 전체 요구자본이 33.4조 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요구자본의 11.7%에서 16.3%를 차지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계수는 2.19%, 장수위험 요구자본은 4.6조 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6년 말 현재 요구자본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험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장수위험은 사망위험과의 분산

효과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보험위험 요구자본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요구자본 제도에 장수위험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며, 이에 적용되는 계수들은 ICS의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수위험 요구자본 관련 이슈를 검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주요 이슈로서 시나리오 방식 도입, 사망위험과 장수위험 간의 분산효과 등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시나리오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VaR 99.5% 요구자본 위험계수와 17.5% 사망률 개선 충격에 의한 요구자본 위험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방식의 위험계수가 충격 방식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 방식은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보수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워 보이며, 시나리오 방식을 허용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계약자 속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충격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망률 개선 추세의 변동성이 유럽 주요국에 비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ICS와 동일한 17.5%의 사망률 개선 충격이 우리나라의 장수위험을 다소 과대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요구자본제도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수위험의 지급여력제도 반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망률 예측의 불확실성, 연금 보유계약의 증가, 계약자의 고령화, 종신연금의 연금전환 옵션 등 장수위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수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의 분산효과를 반영하는 상관계수의 수준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사망보험의 주 가입연령인 40~50대 사망률과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인 60~70대 사망률 개선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사망위험과 장수위험 간의 위험분산 효과를 단순화된 분석하에서 계산해본 결과, K-ICS 초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분산효과인 -0.25가 다소 보수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단순화된 가정에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관계수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의 결론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는 장수위험 도입에 대응하여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Solvency II와 같은 요구자본 제도하에서 위험 전가를 통한 요구자본 경감은 분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요구자본 부담이 큰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장수위험은 이에 부합하는 위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요구자본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재보험 출재는 사망률 충격의 일부만을 재보험으로 전가하거나 연금지급 기간의 일부만을 전가하는 비비례 재보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각 위험 간 분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수위험과 여타 위험을 교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보험 이외에도 재보험과 동일한 위험 전가 효과를 가지는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도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위험과 관련된 보험연계증권은 장수파생상품으로도 불리며, 대표적으로 대규모 연금계약 거래, 장수채권, 장수 Swap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장수 Swap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감독당국이 보험연계증권을 활용한 장수위험 전가에도 요구자본 경감 효과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도 관련 논의를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현재 논의 중인 신지급여력제도에 연금보험과 관계된 장수위험 요구자본이 포함되는 것은 보험회사가 장수위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공사가 함께 조성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일부로서 건전한 연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수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Solvency II 시행 이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김해식(연구위원) | 보고서

32

**연구배경** 본 보고서는 2016년부터 시가평가 기준의 새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를 시행 중인 유럽보험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Solvency II와 유사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EU는 유럽의 여러 보험시장을 하나의 경쟁적이고 활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체 규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진입 및 가격규제를 철폐하고 영업 행위규제와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Solvency II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생이 Solvency II 프로젝트를 촉발했다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철폐로 인한 시장의 건전성 이슈는 Solvency II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여건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Solvency II 논의는 협소한 자본규제의 틀 안에서 벗어나 더 시장경쟁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는 Solvency II가 정량적인 방식에 정성평가와 조기개입은 물론 정리제도가 체계적으로 더해질 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이며, 시장경쟁은 건전성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럽보험시장은 건전성 강화가 시장집중도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아직 시장경쟁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국내 보

험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K-ICS 역시 또 하나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상품 및 가격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경쟁이 ‘과도한 보험료 금지 원칙’을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험마진의 구성도 여전히 비차익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Organic Growth)을 통한 자본 여력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Solvency II는 1980년 이후 누적된 유럽 보험시장의 저금리에 대응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만큼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Solvency II 시행을 전후로 보험회사의 상품 및 자산 구성에서 극적인 변화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Solvency II 시행 시 제시된 보완조치는 저금리 대응이 단기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취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은 재무 복원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 보험시장에서 후순위차입을 제외한 자본확충이 Solvency II 준비의 보편적인 대안으로 언급되지 않는 점도 주목되는데, 이는 유럽보험시장이 이익 성장을 통한 제도 대응이 가능한 시장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Solvency II와 관련하여 자본규제와 시장규제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위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이 12년



Solvency II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저금리를 경험해온 유럽보험시장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Solvency II가 시가평가에 기초한 위험민감형 지급여력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고, Solvency II 시행 시 제시된 다양한 경과조치 및 보완조치도 장기간 저금리에 노출된 보험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미시건전성 감독과 더불어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의 유럽금융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인 보험부채의 누적 장래손실을 시가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본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데다, 대다수 회사가 거의 동시에 자본시장이나 재보험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금리를 허용하고 책임준비금 적립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험회사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한 Solvency II의 설계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lvency II는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저금리에 대응하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형 상품 및 장기자산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느낀 보험회사들의 고수의 추구 행위는 거시적으로는 쏠림 현상을 가져오고,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는 투자의 단기화와 안전자산 집중과 같은 경기순응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쏠림 현상과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보완장치가 고려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 200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도 유럽보험시장과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부족한 경쟁 여건과 빈약한 마진 구성, 자산 듀레이션 확대 필요성 증가와 수익률 하락, 성장 둔화

와 신계약가치 하락, 그에 따른 자본 확충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금리에 노출된 보험사업모형은 금리 변동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고, 저금리 대응의 핵심 수단이었던 변액보험은 판매관행에 따른 운영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상품구성과 자산구성 측면 모두 저금리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ICS는 목표 설정, 시행시 영향평가, 영향평가 결과와 목표 간의 갭을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경로를 시장참가자들에 제시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 정리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은 여전히 저축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그동안의 자본건전성 강화와 보험회사 사업모형 변화에 맞춰 재조정(Realignment)이 필요해 보인다.

#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산 중 대출채권은 비중이 높은 자산군이다. 대출채권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왔으며,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무위험이며 수익성이 높은 약관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아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일반대출)은 리스크가 높아 이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보험회사 자산운용 인력 중 절반가량은 대출채권과 관계되는 부서의 인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반 대출채권이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IFRS 9과 IFRS 17을 감안할 때도 적절한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주요내용**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일반 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 중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낮았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한 개사 이외에 모든 회사가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출채권의 수익성이 여타 자산에 비해 낮으며 현행 RBC제도하에서 대출채권이 요구자본 대비 낮은 수익성을 달성한 자산이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현행 지급여력제도하

에서는 대출채권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만, 일부 회사들은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회귀분석에서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다각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대출다각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 대출다각화를 통해 산업 고유의 위험(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출다각화 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심사나 감시에 전문성이 없을 경우 부실자산의 증가로 오히려 리스크가 확대되고, 모니터링 비용 증가로 이윤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은행과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대출다각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도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즉, 전문성이 결여된 대출다각화는 리스크를 확대하지만 수익률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한편, 생명보험회사는 자산규모, 부채듀레이션



향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를 고려하면 일반 대출채권은 여타자산과 비교해 볼 때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이 낮지 않은 자산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은 수익 및 자본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대출채권을 확대할 여지가 있으나, 대출채권에 잠재된 부실 위험과 회계상 상각후원가법으로 측정되어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이 관찰된다. 즉,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RBC 기준 부채듀레이션이 짧은 회사이다. 반면 일반대출의 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이 관찰된다. 손해보험회사도 부채듀레이션, 일반대출 듀레이션과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 간에 유사한 관계가 나타났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총자산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ROA와는 정(+)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는 수익성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유의하게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일반대출과 기타 운용자산의 위험 대비 수익성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회사의 일반대출 위험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RBC제도하에서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2개였지만,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가정했을 때 이러한 회사가 6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부 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출채권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향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를 고려하면 일반 대출채권은 여타 자산과 비교해 볼 때 요구자본 대비 수익성이 낮지 않은 자산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은 수익 및 자본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대출채권을 확대할 여지가 있으나, 대출채권에 잠재된 부실 위험과 회계상 상각후원가법으로 측정되어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기승도(수석연구원)·홍민지(연구원) | 보고서

36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87년에 불량물건 처리 제도들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공동인수제도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공동인수제도가 처음 제정된 이후 전체 구조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공동인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동인수제도에 내재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공동인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공급자(보험회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잔여시장제도(공동인수물건제도 포함) 개선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발견한 현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증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 공동인수물건 규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 공동인수물건 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이 전담보로 확대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담보 수준에서 공동인수대상자의 인수거절을 할 수 없게 된 효과가 손해율에 반영되어 공동인수물건의 손해

율이 증가될 개연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서는 실적손해율에 부합하게 요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요율산출 과정에서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전담보 확대에 따른 손해율 증가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을 공동인수로 가입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배법 때문에 책임보험에서는 보험료 이전효과(안전한 차의 소유자가 위험한 차의 소유자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현상)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공동인수물건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일반물건 보험료보다 저렴한 현상, 즉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일반물건 보험료 산출 시 고려하는 요소, 즉 요율요소를 현행보가 확대함으로써 일반물건 보험에서 위험한 물건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일반물건 요율요소에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을 요율요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수기준에 부합한 요율요소 적용은 현재 공동인수물건으로 간주되는 많은 계약이 일반물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의무보험도 공동인수제도가 적용되도록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자동차

사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효과적 정보공시를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한다. 셋째, 비교공시의 사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 엔진을 개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에 대하여 공동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요율산출기관이 정하는 기준’ 부분을 삭제하고 공동인수물건으로 체결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배법의 인수거절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는 해외사례(미국)의 잔여시장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계약만을 인수하는 회사(또는 공적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동 회사 설립과 함께 현 공동인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 회사의 요율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요율제도와 다르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회사가 설립되면 공동인수제도가 없어지고, 동 회사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놓고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므로 공동인수물건 보험료가 일반물건 보험료보다 낮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공동인수물건 대상담보를 전담보로 확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동인수물건 손해를 악화 현상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 회사가 위험도에 부합한 보험료로 위험한 계약을 전담보 등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동인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그리고 해외사례(미국)연구를 통해서 현 잔여시장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 물리적 한계 때문에 기술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도 미국에 국한된 점은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아무쪼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작은 밑알이 되었으면 한다.

#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김범(숭실대학교 교수) | 보고서

38

**연구배경**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은행의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주로 은행업에 제한되었던 시스템리스크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보험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보험업은 은행업과 달리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한 상품이 적고 금융위험관리상품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의 비체계적 특성으로 인한 분산가능성과 보험인출사태의 가능성 부재 등을 들어 보험업 시스템리스크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동시에 존재했다. 상반되던 주장이 AIG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9개의 보험사를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로 지정하고 규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시스템리스크 규제에 대한 상반된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진행되지 못했던 보험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보험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보험산업에 시스템리스크가 부재하다는 일반적

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인식에 기반한다는 판단 하에 국내 환경에서도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보험업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열 개의 이슈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보험사의 시스템리스크는 금융거래의 주체만을 중심으로 파악하지 않고 금융회사와 금융업무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리스크는 사건의 위험, 원인 및 결과를 기본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리스크를 거시전성의 측면과 미시전전성의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야 한다. 넷째,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는 고유의 업무인 언더라이팅 업무와 투자 및 조달업무로 양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통적 보험업무의 측면에서 타업권과의 상관성이 존재하며 타업권 특히 은행의 충격이 보험사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밝혀진 바 있다. 여섯째, 비전통적 보험업무의 측면에서 보증업권이 내재된 상품이나 금융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일곱째, 보험사의 전통적 투자 및 조달업무의 측면에서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경제불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험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여덟째, 보험사

보험업에 존재하는 전이현상이나 상호연계성을 측정하고 보험업의 특성 변화 즉, 비전통적 보험업무나 투자 및 조달업무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유발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보험업은 시스템리스크가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의 비전통적 투자 및 조달업무의 측면에서 유가증권 대주거래나 신용등급 활용거래 등은 보험사의 유동성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홉째, 유동성 문제와 보험사의 취약성이 악화되는 경우에 글로벌 보험그룹 내의 유동성 위험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의 시스템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본규제, 추가적인 규제의 근거 및 시장규율의 우선 고려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사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험사가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보험사의 전통적 특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으나 보험사의 자본력이 낮아지거나 금융시스템의 자본제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도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인지하여야 한다. AIG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른 거래상대의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거나 보험사의 자산매각으로 인해 시장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그리고 보험상품의 대체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시스템리스크가 촉발된다. AIG와 같이 금융업권에 손실과 자본제약상황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보험사에도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상품에 보증옵션이 내재하고 신용파생상품을 취급하면서 그리고 비전통적 투자 및 조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은행과 유사한 위험에 노

출되기 때문에 은행과 유사하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결론** 국내 금융기관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금융상품의 특성도 다양해지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수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사 시스템리스크를 이해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다. 보험업에 존재하는 전이현상이나 상호연계성을 측정하고 보험업의 특성 변화 즉 비전통적 보험업무나 투자 및 조달업무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유발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보험업은 시스템리스크가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 Chapter

# 3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사례
-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 진출 현황과 시사점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과 대응
-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자본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이진무(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보고서

42

## 연구배경

사회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으로 ICT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이버공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업체들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국가정보능력을 이용하여 불법적 사이버공격을 시행하는 해커들을 색출하는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정보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및 정부들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격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이버공격은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전쟁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사이버공격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상시적인 위험요소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이버보험을 통한 사이버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보험 시장은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시작되었고, 한국 및 다른 국가들에는 시장 활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1) 사이버 위험 관련 데이터의 부족, (2) 사이버위험의 독특한 특성, (3) 재정적 피해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위험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1) 사이버보험 상품의 표준화 결여 및 (2)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험 구매 요인이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점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위험에 관한 데이터 부족과 표준화 미비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이버위험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사이버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스팸 이메일, 피싱 공격, 디도스 등의 여러 사이버공격들의 현황과 그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상장사들의 연간보고서 빅데이터를 수집해 기업들이 공시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중 사이버위험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이버위험 관리를 위한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사이버공격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위험의 측정체계를 제안하여,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별히 여러 사이버공격 중에서 스팸 이메일 전송 데이터를



한국 사이버보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위협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하였다. 사이버공격 데이터는 대부분 IP 주소 기준으로 수집이 되는데, 이를 기관별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한 3단계 매핑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군별 랭킹을 계산하고, 한국 기관들의 사이버위협 상황을 점검한다. 사이버위협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시가 어떻게 기관들의 사이버위협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아시아 6개국 필드실험의 결과를 요약한다.

셋째, 사이버보험료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사이버위협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사이버사고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사이버사고 중 대표적인 데이터유출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사이버위협 측정데이터와 통합하였다. 특별히 CBL 데이터상에 존재하는 봇넷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관의 특징변수를 추출하였다. 전통적 기계학습 및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10-fold 교차검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딥러닝의 한 방식인 전방전달 신경망이 F1 점수 기준으로 94.73%의 확률로 기업의 데이터유출사고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사이버위협 측정체계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 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악의적 사이버공격 또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위협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 때문에, 사이버보험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방법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데이터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기관과 관련된 사이버위협 데이터는 아직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주소 기반의 사이버공격 데이터에서 한국 기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반면, 사이버사고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한국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 사이버보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위협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효율산정 방법 비교 : 실손의료보험 적용사례

이항석(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 보고서

**연구배경**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도 결국에는 연결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쌓여 데이터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도입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데이터 속에 숨은 패턴을 찾아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해외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데이터 통합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ICT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반면에 국내 보험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며, 외부데이터의 활용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같은 경우 역선택 방지를 위해 더 세분화된 효율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다양한 효율산정 방법들이 아직 많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 외에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의 효율산정을 진행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의 데이터로부터 부가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와 설명변수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우선 살펴본 통계적 기법에는 일반화선형모형(GLM)과 일반화선형혼합모형(GLMM)이 있다. 최근의 보험데이터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GLM과 머신러닝기법을 비교하는데 후자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많은 편이다. GLMM은 GLM의 고정효과에 임의효과를 추가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법으로 의사결정나무, 앙상블기법, MARS, 신경망모형을 실손의료보험 자료에 적용해보았다. CART는 예측모형으로는 우수한 모형이 아닐 수 있지만 나무모형의 그림과 이진분리로 해석력이 좋고 데이터의 시각화에 용이하다. 또한 효율산정을 할 때에 CART 모형은 분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최초 분리변수로 선택한다. 실손의료보험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현행효율 변수가 아닌 실적변수가 최초로 분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각 노드의 분리기준을 통하여 연속형 변수를 어떻게 범주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의사결정나무의 예측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앙상블기법들이 발전되었다.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가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배깅은 분류기(Classifiers)들이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반면 부스팅은 이전의 분류기에 의존하여 생성된다. 쉽게 말하자면 분류의 경계에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요율변수의 선택과 보험료 세분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계약들에 적합한 세분화된 모델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보험업계와 학계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험수요의 예측, 위험률 산출, 해약률 관리,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 다양한 주제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잘못 분류된 자료들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이다. 이는 이상치에 민감하고 해석력이 부족하며 과대적합 경향이 있다.

MARS 분석은 단계선형함수로 비선형의 데이터에 적용한다. 많은 면에서 회귀분석과 비슷하지만 비선형성, 교호작용, Missing Data와 같이 선형회귀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 그리고 MARS는 매듭점을 찾아주는 데 이는 요율산정에서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시킬때 사용된다. 또한 GLM 옵션이 있는 MARS 분석을 통해 보험 자료에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반응변수에 대해 설명력 있는 변수 순으로 선택한다. R에서 MARS와 earth 함수를 검증하였을 때 두 함수 모두 비슷한 결과가 산출된다. 신경망모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측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다면, 전통적인 방법인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이 신경망모형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적인 관계를 알고 있을 때에는 회귀가 신경망모형을 능가한다. 신경망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선형의 데이터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신경망모형은 입력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분석 시에는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CART와 MARS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라고만 여겨졌던 신경망모형의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추후에는 실손의료보험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자료에 머신러닝기법들을 적용해보는 학계와 실무진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실손의료보험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요율변수의 선택과 보험료 세분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요율산정에 중요한 요율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계약들에 적합한 세분화된 모델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보험업계와 학계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험수요의 예측, 위험률 산출, 해약률 관리,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 다양한 주제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 진출 현황과 시사점

조용운(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46

### 연구배경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프론티어 시장(Frontier Market)을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보험업 권별 업무를 규정하고 외자계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보험업법이 제정되어 독립적 생명보험 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외자계 생명보험회사가 진입하였고 이들의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저축성보험 중심의 생명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법적 체계 내에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WTO 공식 가입(2007. 1. 11)을 계기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WTO 가입을 위해 상품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 제도를 정비하여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정비로 외자계의 활발한 진입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15.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생명보험시장을 볼 때 이제는 프론티어 시장보다 투자리스크가 작은 신흥시장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프론티어 시장의 주요 투자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투자가

제한적이며 법규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장 투명성이 낮으며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제도적으로 외자계 투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어 제도리스크는 줄어들고 있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 및 종교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인 데다가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다. 다만, 모든 것을 국가에서 통제하던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 있어 공산당의 정책 변화에 따라 외자계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규제 강화로 변화할 수 있고, 세부 제도 정비가 미흡하여 담당 공무원의 교체에 따라 법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 리스크로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프론티어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생명보험회사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프론티어 시장 수준의 리스크로 너무 크게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생명보험회사는 2개 회사만이 소규모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베트남 진출에 적극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는 베트남 생명보험시장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한국과 정서적 이질감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다. 더욱이 발전 초기 단계여서 성숙된 시장보다는 큰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요내용** 우선, 본고는 베트남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진단한다. 저소득 국가이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인구 규모가 크고, 성장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증권업 제도가 정비되어 가면서 성장하고 있어 보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성장성을 평가하였다. 베트남 보험시장 규모는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한국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험밀도 및 침투도는 높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품구조를 분석하였다. 사망보장과 관련된 보험은 조상이 돌보고 있다는 조상숭배 문화와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주변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을 주저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태에 있다. 반면, 저축성 생사혼합보험은 비중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개인연금의 비중은 0.4% 수준으로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사망 이외의 저축성 보험 중심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판매구조를 조사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파트타임 설제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학력 중심의 우수 설제사 확보 경쟁이 과

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력 이외의 기준으로 우수설제사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 직접 판매 비중은 미미하고 방카슈랑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설제사 확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결론**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한국과 정서적 이질감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다. 더욱이 발전 초기 단계여서 성숙된 시장보다는 큰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본고는 베트남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보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 생명보험회사가 베트남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

임준(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보고서

## 연구배경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적절한 위험관리 및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경제의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의 부족 및 사이버위험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터넷 대란 등 거대 위험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사이버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사이버보험 상품 표준화 결여에 의한 약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사이버보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본고에서는 사이버보험 관련 이슈를 기업시장, 가계시장,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시장의 경우,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은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의무보험 도입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2008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2015년에는 신용정보법에, 그리고 2018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무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의무화 중심의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본고에서는 두 가지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는 동시대 주요국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전략 사례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위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 보다 긴 정책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홍수위험 사례이다.

주요국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전략의 경우 공급 측면은 사이버 사고 데이터 집적 및 표준화, 그리고 수요 측면은 사이버위험 인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까지 의무보험이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사이버보험의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사이버보험의 역사가 짧지 않나 여겨진다. 보다 긴 역사를 가진 홍수보험의 경우 미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보험 가입률 제고와 보험제도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책 목표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위험 지역의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경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국가 홍수 프로그램의 재정이 바닥나자 위험 기반 보험료를 부과되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은 주로 의무보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향후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였다. 방안으로는 위험시설 투자 시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세제 지원, 바우처 등이 제시되었다.

가계시장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이버위험 인식 및 사이버보험 상품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사이버위험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사실의 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90% 이상이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셋째,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사이버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입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독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동안 의무보험 도입이 주요 이슈였으나,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 재원 조달과 관련된 위험재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위험재무 측면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공부문의 위험재무 전략의 대안으로 자가보험 또는 정부지원 재보험폴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첫째, 기업 관련 사이버보험 정책은 주로 의무보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향후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 한계에 부딪힐 경우,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단독형 가계성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독형의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설제사 채널을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활용해야 하는데, 부가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위험재무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민영보험회사로의 위험전가가 어려울 경우 자가보험이나 정부지원 재보험폴 등을 통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윤성훈(선임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구도 10년 이내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 보험산업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기가 어렵다. IFRS 17 도입으로 자본 확충에 고심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나침판과 이정표가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가 앞선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자산가격 폭락 및 버블경제 붕괴, 금융개혁, 공적보장 축소 등 일본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환경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와 이에 촉발된 보험수요 변화 등에 일본 보험산업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95년의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다. 1995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는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버블 붕괴 등의 환경 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수요 위축과 보험수요 차별화 및 세분화이다. 이를 요약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시장이 축소되었다. 보험가입률, 가입 규모, 수입보험료 등이 모두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독일, 체코, 핀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미혼 및 만혼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가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별화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사망보장 수요에서 여성은 의료보험(민영건강보험), 연금 등 본인보장 수요로, 청년층은 의료보험 등 본인보장 수요로, 중장년 남성은 사망보험 등 가족보장 수요로, 노인층은 연금, 의료보험, 요양보험 등 노후보장 수요로 보험수요가 세분화되었다. 셋째, 재정 부담으로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보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과 의료보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노인인구 증가와 이들의 자산여력으로 노인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가계 금융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다섯째, 경기가 장기간 부진하고, 임금이 감소하며,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보험수요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은



보험산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비자 선호에 맞게 연금과 의료보험 상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상품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채널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약을 통폐합하는 등 상품을 단순화하였다. 정부도 상품 및 가격 규제, 업무영역 및 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주었다.

또한 일본 보험산업은 시장 축소와 자산가격 거품 붕괴 등 경영환경 악화로부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M&A 및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후순위채 발행, 주식회사 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고, 해외진출도 본격화하였다. 정부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주었다. 보험산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수요 변화 및 사회보장 축소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향후 인슈테크, 초고령사회 대응, M&A 또는 해외진출 등이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품 개발, 판매채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M&A, 해외 진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도 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여 보험산업이 인구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과 대응

김현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권혁준(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보고서

52

**연구배경** 2014년 핀테크<sup>1)</sup>(Fintech)가 금융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기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현재 4차 산업혁명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며, 이는 보수적인 보험 산업에서도 큰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왔다. 보험 산업에서의 ‘인슈어테크(Insurtech)’라는 용어의 등장도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험 업계의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Fintech)의 보험 버전을 의미한다.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의 한 영역인 인슈어테크는 블록체인(BlockChain),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운영 방식이나 상품 개발 및 고객 관리 등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관리 및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보험 산업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보험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중에서도 그 기술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sup>2)</sup>(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동일한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의 특징을 가진다.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 신뢰성이 높으며,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현재, 세계적인 보험 기업들은 재보험, 기업보험 및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처럼 보험사고의 규모가 크고 계약의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한 기업성 재물보험에서 블록체인의 적용 시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컨소시엄인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가 최근에 발표한 2019년 1월 스마트 계약을 상업거래에 적용할 것이라는 이슈와 알리안츠 그룹의 자회사인 Allianz Risk Transfer(ART)

2) 분산원장기술(DLT)이란 분산되어있는 피투피(P2P: Peer-to-Peer) 망 내의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 기술임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혁신적 파급이 보험시장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가는 더 논쟁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블록체인이 그 파괴적 혁신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한 대재해스왑(Catastrophe Swap) 계약의 사례, 미국의 Dynamis 보험사의 이더리움<sup>3)</sup>(Ethereum)에 기반한 P2P보험의 사례 등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한 사례와 LG CNS의 ‘생명보험업계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 혁신 과제 구현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보험서비스 모델의 제시 등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 보험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앞서 설명하였듯, 보험과 IT 기술의 융합으로 미래 보험은 보험 서비스 자체의 질적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기반이 되는 기술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보안성과 무결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은 보험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의한 모집 및 보험금 지급,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입증하는 편익이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보험사들은 당장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하는 것

은 아닌지 조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도 비즈니스 환경 및 해당 조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본연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보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블록체인이 보험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다른 기술보다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다양한 국내외 블록체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제한적인 특정 분야에 보험 상품에 블록체인 모델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테스트 모델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했거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거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가 대부분이다. 즉 블록체인 모형이 보험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혁신적 파급이 보험시장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가는 더 논쟁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블록체인이 그 파괴적 혁신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보험사가 더 혁신적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며 진지하게 블록체인을 더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3) 이더리움(Etherium)은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한 기술로 흔히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림

#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최창희(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 보고서

54

## 연구배경

최근 15년간 보험업계 수입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업계의 수입은 연간 10% 내외의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 성장 둔화, 저금리, 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 폭이 5% 내외로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ROE가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 투자금 대비 보험산업의 수익률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회사의 ROE 감소는 지급여력제도(RBC)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시장 포화로 인한 보험영업이익 감소, 저금리로 인한 투자영업 이익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자본 대비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들은 기존 사업의 효율을 높이거나 신규 시장(예를 들어, 해외 진출)을 찾아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보험회사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상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의 증가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상품개발-인수심사-마케팅-고객서비스-보유계약관리-보험사기예측-리스크관리'로 구성된 가치사슬에 별로 구분해 제공했다. 국내외 보험회사들은 상품개발, 신시장 개척, 업무 효율 제고, 비용 절감, 보험 사기 적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회사의 실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외국 보험회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비교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실무자들은 빅데이터 활용상 문제점들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불합리한 내부 통제절차, 실무에서의 낮은 활용도, 보험요율 세분화 판단 기준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크게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외부 생태계 시스템의 부재, 보험회사 내부의 빅데이터 운영 체계 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를 폭넓게 정의하고 개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일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실무자들은 빅데이터 활용상 문제점들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불합리한 내부 통제절차, 실무에서의 낮은 활용도, 보험요율 세분화 판단 기준 부재 등을 지적했다.

회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원활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된 자료에 대한 활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인 전문인력 조달의 문제는 우리나라 빅데이터 파트너십 생태계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강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빅데이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콘테스트를 통해 찾는 등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합리한 내부 통제절차, 실무에서의 낮은 활용도, 보험요율 세분화 판단 기준 부재 등은 보험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속도를 쫓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도가 완화된 환경하에서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결론** IMD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14위 수준이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능력은 중국(12위)보다 낮은 31위였다. 정부, 국회 보험회사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들, 미흡한 빅데이터 생태계, 불합리한 내부 규정 등이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자본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황인창(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보고서

56

**연구배경** 보험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첫째, 보험은 개인 및 기업 등이 불리한 사건의 발생으로 입는 재무적 손실을 위험의 결합(Pooling)과 이전(Transfer)을 통해 보장한다. 둘째, 보험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험상품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전파하는 기능이 있다. 셋째, 보험은 저축 수단(주로 장기)을 제공한다. 넷째, 보험은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로서 공적·사적 부문에 자금(주로 장기)을 공급한다. 본 보고서는 보험 부문의 경제적 기여 중 자본공급자(주로 장기)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보험의 경제적·사회적 기여에 대한 연구, 특히 자본공급자로서의 연구는 미미하였지만,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이후 정부와 은행의 장기자본공급자로서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투자 현황, 장기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자본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내용** 금융안정성 제고, 시장규율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장기 부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성과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투자기간은 장기가 되고, 장기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투자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기대응적 투자전략은 과도한 투기를 바로 잡고 금융위기 시 완충 장치 역할을 하여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장기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배구조, 자원배분 등의 측면에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자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재무 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를 통한 급격한 이익 창출보다 기업의 장기적 측면에서의 투자와 위험관리를 요구한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는 투자자로서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투자자로 행동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유인과 회사의 장기 성과를 일치시켜 보다 효과적인 시장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투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생산성 증가, 사업비용 감소, 생산수단 다양화, 일자리 창출 등을



금융안정성 제고, 시장규율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 개선,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체계(Policy Frameworks) 설계, 보험회사의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장기 국고채 투자 이외의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 국내 보험회사는 채권 투자를 통해 자본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는데, 주로 공공 부문 발행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실물 경제에 간접적으로 자본을 공급한다. 반면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자본을 공급하는 수단은 대출채권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보험회사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은 투자관리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단기성과주의, 규제적 역유인, 매력적인 투자처 부족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자본을 확충을 통해 유입된 투자자의 압력, 자산운용 외부 위탁에 따른 대리인 문제,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와 위험 평가 시 단기를 대상으로 수행 등으로 단기성과주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가평가 기반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기순행적 투자 유인 발생,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자본 평가, 비상장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험 부과 등 규제적 요인들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정책체계 부재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처가 부족한 점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제약한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EU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장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매력적인 장기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 도입 시 장기보증 및 주식위험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개선했으며, 새로운 회계 제도가 장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적 역유인을 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SG 투자 활성화 등 투자관리 프로세스에서 장기 성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 개선,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체계(Policy Frameworks) 설계, 보험회사의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4

##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시사점

이경희(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 보고서

60

**연구배경** 호주는 각종 국제비교에서 모범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에 대한 국내 퇴직연금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관뿐만 아니라 주목 대상인 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 배경, 지정 요건 및 공시 방법, 디폴트 보험제도 및 인출상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계약형 지배구조는 미미하고 신탁법(Trust Law)에 근거한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금형과 계약형에 대한 감독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으로 수렴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연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원래 사용자 중심의 임의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과방식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1992년 사용자 부담금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강제제도로 전환되었다. 가입 당시 사용자 부담금은 3%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기초연금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

는 정책(2015~2020년: 9.5% → 2025년: 12%)을 단행하였다.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연기금은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공부문, 소매형기금 및 자기관리기금으로 구분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집중도가 높아졌다. 규제당국으로는 감독 대상 및 분야에 따라 건전성감독청(APRA: 연기금), 증권투자위원회(ASIC: 사업자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국세청(ATO: 자기관리기금)이 있고,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2017. 6. 30 기준)는 적립금 \$2.5조, 계좌 수 2천 8백여만 개(전체 인구 2천 5백만 명), 계좌당 적립금 \$84,000, 연기금 수 228개(자기관리기금 제외) 수준이다.

호주 정부는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사업자(연기금) 간 경쟁 유도를 위해 2005년 연기금 선택제(Choice of Superannuation)를 도입하였으나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연기금 변경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정책당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타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행태를 관찰하고 가입자 행동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익률 폭락을 계기로 Super System Review 작업반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부 주도의 디폴트 투자상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투자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이 디폴트 투자(MySuper) 옵션에 대한 지침(상품 및 공시 요건)을 제정하고 시장참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MySuper) 도입을 권고하였다. 호주 정부가 작업반의 권고안을 수락함에 따라 2013. 7. 1 이후 부담금을 수령하는 연기금은 MySuper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MySuper 상품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첫째, 단일상품으로 분산투자 요건을 충족시킬 것, 둘째, 낮은 수수료를 부과할 것, 셋째, 표준화된 보고체계를 따를 것, 넷째, 적용제외(Opt-Out) 방식으로 사망보험과 영구장해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폴트 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요건, 공시항목 및 공시양식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공시 항목은 목표 수익률, 실제 실현된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간 비교, 투자 리스크 수준, 특정 규모(예: \$50,000)의 적립금 대비 부과하는 수수료 금액이다. 현재까지 MySuper 도입은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7. 6. 30 기준 시장점유율은 제좌 수의 56.3%, 적립금의 33.1%에 달한다. 주로 활용하는 계층은 적립금 규모가 작은 청년층과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MySuper 상품을 인가받고자 하는 연기금 수탁자는 디폴트(적용 제외) 방식으로 단체보험상품(필수: 사망보험, 영구장해보험, 선택: 소득보상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MySuper 보유자 중 디폴트 보험 가입률(2017. 6. 30)은 사망보험 75.8%, 영구장해보험 67.8%, 소득보상보험 28.2% 수준

이다. 이와 같은 버보편적인 디폴트 보험제도로 인해 호주의 생명보험시장은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 성장세가 더 높다.

**결론** 호주 정부는 일찍이 퇴직연금제도의 비전을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입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구현해왔다. 이러한 호주의 경험과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효과적인 디폴트 상품 설계 및 성과 공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원) | 보고서

##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고령 화율이 14%(726만 명)를 초과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향후에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20%, 2030년 24.5%, 2050년 38.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지금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 문제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노후준비 문제를 살펴본 후 해외의 대응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적 연금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주요내용

고령화로 인해 노인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초고령 독신 여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은 경제활동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고용률, 경찰률, 소득수준 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 수단인 연금소득 또한 적어 노후 빈곤에 처할 우려가 높다.

노후준비의 주요 수단인 연금수급 상황을 보면, 남성은 연금소득 수준이 고른 편이나 여성은 저연금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 등을 통해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연금 또한 판례를 통해 이혼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분할해 주는 분할연금 사례가 있으나 제도적으로 여성 관련 사적연금 활성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공적 연금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여성 관련 연금제도는 배우자연금(Spouse Pension or Widows' Pension),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분할연금, 육아·출산 크레딧 등 다양하고 급여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할연금의 경우 혼인기간 조건이 짧고, 동거 및 혼인관계 유지 시에도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등 광범위한 여성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제도에는 배우자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출산지원금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구주)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한 사적연금정책으로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과 부부연생연금을 종신연금형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료를 대납(미국 Spousal IRA, 캐나다 Spousal RRSPs, 호주 Spouse Contributions)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배우자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칠레는 출산 또는 입양 시 여성의 연금계좌에 출산지원금을 납입해주며 65세 이후 인출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한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 보장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제도 개선 및 사적연금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여성 관련 사적연금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업주부의 납부액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2.6% 증가하고, 추가 가입 대상자(전업주부)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3천 91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2.7% 증가하고, 연간 재정지출은 대상자 모두 가입 시 연간 4천 110억 원 정도의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제도 개선 및 사적연금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연금제도의 기여성 원칙을 고려할 때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남성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자원 마련은 실업급여와 사내 복지기금 등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둘째, 선진국은 지속적인 여성 관련 공적연금 개선에도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 이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및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까지는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 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제도화되고 부부연생연금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되, 수급형태를 종신연금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가입유인 제고를 통해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성주호(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보고서

**연구배경**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제도의 양적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저조한 자산운용수익률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8.1%가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는 향후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 자산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C형의 경우 선진국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DB형의 경우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여 부채연계투자전략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DC형 가입자들은 자산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에 의해 대다수의 연금자산이 예·적금상품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연금사업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적격디폴트상품 운용 손실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을 법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금 선진국들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한국형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분산투자에 적합한 디폴트 옵션용 펀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통지의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디폴트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검증하고 표준화하여 가입자들이 디폴트상품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상품 투자비중은 2017년 말 현재 94.6%로 2017년 양호했던 금융환경을 감안하였을 때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 저성장, 저소비 등에 의해 경제침체기가 확산되는 뉴노멀시대가 전개되는 현재, 원리금보장형상품 위주의 투자방식은 오히려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연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DC형의 경우, 가입자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적격디폴트 상품을 제공하여 가입자들이 적정 수준의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DB형의 경우, 저연령에서는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수행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지급능력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라 기업재무리스크(특히 부담금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는 2000년 들어 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 전략이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채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이 개별로 DBO(Defined Benefit Obligation)를 산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별 기대 근속기간을 차별적으로 반영한 개별 가입자들의 최적자산배분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합하여 가입자의 연령 구조에 따른 DB 제도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TDF(Target Date Fund)와 유사하게 저연령에서는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수행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최적 자산배분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투자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지급능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실시하고 있는 현행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행태를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DB형 제도 구성원의 연령 구조에 따라 상이한 자산운용이 요구되며 저연령으로 이루어진 DB형 제도의 경우 보다 공격적인 연기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퇴직연금제도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원리금보장형상품 일변도 자산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DC형의 경우, 다수의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에 무관심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당국은 디폴트옵션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DB형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연금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사용자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이러한 연금급부를 고려하여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 사용자, 가입자는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을 인지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 Chapter

# 5

##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방안

황현아(연구위원)·백영화(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보고서

## 연구배경

2010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시 ‘기초서류 준수 의무 규정(보험업법 제127조의3)’ 및 관련 과징금 규정(보험업법 제196조)이 도입되었고, 지난 7년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다수의 사례가 누적되었다. 그런데 제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대상의 포괄성, 법규위반의 중대성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에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주요내용

### 가.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

「보험업법」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부과 대상은 (i)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 (ii)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 (iii)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으로 구분된다.

### 나. 기초서류 준수 의무와 과징금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로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기초서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 및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받게 된다.

2011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 46건을 수집·조사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19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15건, 기타 4건), 보험금 부담 삭감(9건), 보험료 부담 산출·징수(6건), 보험계약 부담 해지(4건), 상품 구성 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등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다. 위 사례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i) 법규위반의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과징금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먼저, 과징금 규모는 법규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야 하는데, 실제 법규위반의 경중보다는 수입 보험료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한 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가 적어 과징금 금액도 적은 경우가 있었고, 이와 반대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관련된 보험계약이 다수이고 보험료 규모가 커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기초서류는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초서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모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위적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로 정해서는 안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 대상 행위의 특성에 따라 과징금 산출 기준도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 현행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하나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를 하나로 포괄하여 일률적으로 산출된 과징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다.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다른 법령들의 경우 ‘관련 매출액’ 또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장의 공정 경쟁질서를 해쳐 소비자 전체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거래 상대방과의 개별적·구체적 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또는 부당이득과 직접 관계가 없는 법규위반행위 경우(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은행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라. 주요국의 사례

기초서류 준수 의무 및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는 외국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내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았다. 미국은 각 주의 보험관련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및 불공정거래 행위(Unfair Trade Practices)에 해당하는 경

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 시 금전제재(Civil Money Penalty)를 부과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보험업무행위지침(ICOBS)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 공정처리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위반시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 의무처럼 포괄적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마.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첫째,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최대한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사항과 위반금액 기준을 적용할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결론** 현행 기초서류 준수 의무 규정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의 규정으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 유형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과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세부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법령상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고서

70

**연구배경** 생명보험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증은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하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의 법률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석론으로는, 상속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상속법의 법리를 반영하여 보험약관이나 보험법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입법론으로는 생명보험 관련 보험법 규정과 유증 관련 민법 규정의 비교, 양자의 차이가 정당화될만한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 규율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상법 보험편의 해석론

- ① 수익자변경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된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자신의 보험수익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현행법상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무방식(無方式)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③ 현행법 해석론으로도 유언에 의한 수익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보험사고 발생 전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사

망 당시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생존해 있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리가 적용되어 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이 새로운 수익자가 된다. 이들의 보험수익권 취득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익자 확정법리를 단계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명보험 수익자의 확정방법

### 1단계

- ◎ 보험수익자 사망시를 기준으로 상속인 확정
- ◎ 이 상속인들 또는 이 상속인들의 상속인들 중 보험사고 발생 시 생존하고 있으면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종국적으로 수익자가 됨
-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고유재산인 수익권 취득
- ◎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수익권 취득

### 2단계

- ◎ 수익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이 없다면, 잔존 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됨. 복수의 잔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수익권 취득
- ◎ 수인의 수익자들 중 1인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취급

### 3단계

- ◎ 수익자의 상속인들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이 전혀 없다면,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취급

### 4단계

- ◎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2차적, 보충적 수익자를 가급적 지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 그들의 수익권 취득비율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⑤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부분은 처음부터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보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⑥ 생명보험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생명보험금 상당액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⑦ 생명보험신탁에서 신탁수익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앞서 검토한 보험수익자 확정법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 나. 상법 보험편의 입법론

- ①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보험자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로 보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점은 의사표시 발령시점으로 소급시키고, 그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진의 존중과 법률관계의 명확성 확보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②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명문의 규정을 둬야 바람직하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확정된다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2문,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새로운 수익자가 된다는 상법 제733조 제4항의 부분은 모두 삭제함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이 원

칙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보아 상법 제7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 보험계약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보험약관 운용의 실무와 관련하여

- ① 수익자 및 수익권 비율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2차적, 보충적 수익자를 가급적 지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의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정수익자가 사망하여 그들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들의 수익권 취득비율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수익자 및 수익권 비율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2차적, 보충적 수익자를 가급적 지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수익권 취득비율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보고서

72

**연구배경**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가망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소개·안내 등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 모집 행위의 경우,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중 ‘중개’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로서 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중개 행위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상법상 중개대리상 조항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중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와 구분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조항에서는 모집이라는 용어 외에 상담 또는 소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며, 보험 모집 행위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 행위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광고비 지급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모집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행위의 실질에 따라 모집 대가인지 광고 대가인지를 구분하여 광고 대가라면 보험계약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가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모집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법규, 감독당국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핵심 유형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안해본다.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인 소개나 추천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에서 2015년에 금융청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모집 관련 행위로 보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라는 것이다. 금융청 감독지침에 의하면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지 않고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싣는 것에 불과한 행위가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CA)의 지침(PERG, Chapter 5)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규제대상행위로서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실질, 규제 필요성,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험 모집에 해당하는 핵심 유형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규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반영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입법론으로서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 소개비 지급 관련 별도의 명시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에 있어 모집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다.



#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원석(연구위원)·김석영(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보험상품은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에게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보험 판매채널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이었으므로 판매채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과거에는 규제로 인해 회사별로 상품이 동일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위촉하고 있는 설계사 숫자가 곧 해당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전속설계사를 앞세운 영업방식이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을 보장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판매채널들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보험회사들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채널들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매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1960년대 이전까지는 생명보험 회사들은 지금과 같이 정립된 형태의 판매조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사 임직원이 직접 모집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모집인 채널이 유일한 채널이 되었다. 1990년대까지는 모집인 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 전속설계사의 숫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시

장점유율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채널로 대졸남성 중심의 설계사, 방카슈랑스, TM, 홈쇼핑, GA, 온라인 채널 등이 등장한 이후 전속설계사 숫자와 시장점유율 간의 상관관계는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판매채널을 둘러싼 소비자측면 그리고 기술측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가. 환경변화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소비계층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태어난, 즉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어른이 된 밀레니얼세대의 부상이다. 밀레니얼세대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Experience)을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획득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판매채널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공지능이 특정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며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간처럼 종합적인 사고(思考)가 가능한 수준(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Level)의 인공지능은 2030년 이후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판매채널에 인공지능을 위시한 기술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기술적인 한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한정된 영역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인간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시기를 빨라야 2030년 이후로 보고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상당기간 동안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가 아닌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 설계사 채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할 인공지능 채널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하는 밀레니얼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 채널보다도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한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채널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변화

인공지능 도입 초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의 신뢰도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태블릿 PC 등에서 설계사의 업무를 돕는 수준에서 보험판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와 고객의 대화내용을 인공지능이 듣고 있다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와 일상을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인공지능 발전하고 밀레니얼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경우 보험·금융소비자는 정보 활용 수준 및 방법에 따라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발달로 독자적인 영입이 가능한 인공지능 채널이 영업을 하게 될 경우 TM 및 온라인 채널은 인공지능 채널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향력은 일정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설계사, GA, TM, 온라인, 방카슈랑스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은 인공지능 채널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채널과 비인공지능 채널로 변화할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보험산업은 ‘보험은 사는 상품이 아니라 파는 상품’으로 인식해왔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널의 등장은 지금까지 보험판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채널이 발전하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수준과 고객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대면채널이 필요한 그룹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그룹으로 고객층이 분화될 것이다. 보험회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판매채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하에 인공지능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



# Chapter 6

##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 방안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연구
- 보험산업 경쟁도 평가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 방안

황현아(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김규동(연구위원)·기승도(수석연구위원)·이아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우리나라에도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도입될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전제로 배상책임 법제 및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배상책임 관련 법령 및 보험 현황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운전자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자배법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당해 차량의 ‘운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별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대인 배상1, 대물배상 2천만 원 이하)은 의무보험,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임의보험 대상이다.

## 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쟁점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으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도로 위에 다양한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혼재되어 운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자율주

행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운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하 ‘자율주행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구별되는 특성들을 갖게 된다.

## 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해외 법령 및 보험제도 변화 동향

영국은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 의해 사고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발의되어 최근 확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책임 및 보험은 원칙적으로 각 주(州)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통일된 법제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의 불법행위법리, 제조물책임법리 및 자동차보험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5월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을 개정하여 레벨3 및 레벨4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고 책임에 관해서는 기존의 책임 체계를 유지하였다. 일본은 2018년 3월 아베수상 주재 미래투자회의에서 레벨4 이하의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현행 일본의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율주행시대에 적합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마련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전자율주행시대에 대한 전망에 더 집아 제도를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전에 있는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점검하는 작업이 오히려 시급하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라. 자율주행사고 관련 책임법제 변화방향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책임을 기반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제도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자 중심의 책임 및 보험 체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고 하여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2020년 도입될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사고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의 운행자책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법령개정방안 및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존 운행자 책임 체계를 적용하는 이상 자배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보험제도 역시 기본적인 틀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산출 체계 중 운전자 및 보유자의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차의 차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해킹 사고 발생 시 어떠한 절차와 재원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정부 보장사업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바.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규명 방안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자동차보다 사고 원인이 다양해질 것이므로,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제고 및 관련 기술의 개선뿐 아니라 공평한 책임 배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기술, 장비, 인적 조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고 조사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초기단계로 앞으로 완전자율주행시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변화를 미리 가정하여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술 변화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재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정택(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연구용역

## 연구배경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제반 여건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실손의료보험에 반사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고려해야 할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지급보험금 변화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공·사건강보험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완형 보험이다.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1963년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보통상해보험을 시작으로,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1970년대 단체건강보험 및 특약형태의 질병보험을 거치게 되었다. 1999년에는 현행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형태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분을 보상하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후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3보험업 신설로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인 실손보상보험 판매가 가능하

였으나, 2008년 5월에 이르러서야 개인형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및 시장현황

2009년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상이하였으나, 감독당국은 2009년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상품을 표준화하였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보험회사가 과거부터 판매해 온 실손의료보험상품은 가입시점에 따라 상품구조(보장한도, 자기부담금, 갱신주기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필요성 및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개인실손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총 3,419만 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3% 증가하였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6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발생손해액 감소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나.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2003년 10월 손해보험회사의 개인형 실손의료보험 도입 이후 복잡한 상품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상품이해도 결여, 도덕적 해이(의료쇼핑, 과잉진료), 손해율 급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감독당국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 변화는 의료이용량, 의료수가, 가입자 구성(신규가입 또는 해약), 보장영역 확대(미보장영역에서 보장영역으로 편입)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조치 이후 실증적 자료의 집적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표준화, 상품구조 개편,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및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금융감독당국에서 추진한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상품구조 개편에서의 큰 변화는 2013년의 단독형 상품의 출시, 2017년 4월부터 시행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영향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산정특례제도 도입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해소를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총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2011년 1,743억 원에서 2015년 5,044억 원으로 189% 증가하였다. 비급여의 경우 2012년

전년대비 35.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5년에도 전년대비 33.8%의 증가율을 보여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조치 이후 실증적 자료의 집적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를 통해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킬 계획에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 변화는 의료이용량, 의료수가, 가입자 구성(신규가입 또는 해약), 보장영역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장률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는 지급보험금 증가를 유발하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결정되게 될 의료수가 수준에 따라 증감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변화 예측 시 과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익(지급보험금 감소) 외 급여본인부담금에서 추가적 손실(지급보험금 증가)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수가상승률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연구

정성희(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연구용역

82

**연구배경** 최근 한 번의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화재에 대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 사례에서 보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설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사고 발생에서 경제적 피해의 확산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체, 유지 및 관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련 다른 업종에 비해 리스크관리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소방사업자별로 노출된 화재 리스크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소방산업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배상책임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소방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주요국의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근거와 보험상품, 보상한도액, 운영기관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소방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최근들어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의 업무 수행상 문제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소방산업체는 8,384개가 존재하지만 연간 매출액은 평균 17억 원에 불과하여,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소방산업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방사업자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는 소방시설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의무화에 따른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자면허 허가 또는 갱신 시에 보험 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 가. 의무보험 도입 방안

국내 소방산업에서 설계감리 시공업종 및 관리업종에 대한 의무보험 규정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법규에서 의무보험이 도입된 업종(설계 및 감리업자, 공사업자)의 경우 소방산업진흥법에 규율하면 효율적인 법규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산업은 민법 불



대부분 소방사업자의 경영 상태는 열악한 수준으로, 업무 수행상 과실 등으로 인해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소방사업자에게 제3자 배상 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자면허 허가나 갱신 시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소방사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화재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보상 체계 마련 및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행위책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책임보험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나. 법규개정 방안

소방사업자의 보험가입 조항규정을 현행과 같이 분산 규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법규 개정은 용이할 수 있으나, 법규의 불명료성 및 피규제자의 혼란 등으로 법규 적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의무가입대상 업종까지 포괄하여 소방산업진흥법에 일괄 규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보험상품 설계

소방사업자 모두 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재물손해는 사업자 간 큰 차이가 존재하여 보험약관 설계가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방사업자를 포괄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 보다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각각 독립된 분리약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법규에서 소방사업자의 보험가입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목적물 자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관련 법규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보험약관에서 고의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포괄 문구

로 규정하고, 추후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라. 보험제도 도입효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담보하는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화재 사고로 인한 신속한 원상회복 및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소화설비와 관련한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연간 최대 160억 원 정도로, 인명 피해 및 간접손해(수익상실 등)까지 감안한다면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무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소방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론** 최근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화설비의 정상작동여부에 따라 피해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방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자본규모가 매우 빈약한 상태로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화재사고 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사업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보험산업 경쟁도 평가

임준(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금융업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규제를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은 고위험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됨에 따라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또한, 기존 산업 이익보호, 정책 결정 과정의 일관성·투명성·신속성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보험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당국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경쟁도 평가가 도입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보험산업 경쟁도 분석을 통해 진입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석방법으로 시장구조-시장행위-시장성과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장행위 및 시장성과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 대응력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쟁분석과 함께 환경 변화, 규제 체계,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 2017년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HHI 지수값은 994였다. 종목별로 보면, 개인보험의 생존보험은 1,226, 사망보험은 1,052, 생사보험은 946, 변액보험은 1,367을 기록하였다. 한편, 단체보험의 퇴직연금은 1,754, 일반단체보험은 3,462를 기록하였다.

시장집중도 지표에만 근거할 경우 개인보험의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보험 시장은 HHI 지수가 1,200 이하로 경쟁시장에 해당된다.

한편,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시장에 한정하여 시장집중도 지수를 해석하면 퇴직연금은 집중시장, 일반단체보험은 고집중시장에 해당되거나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인접 시장을 고려하게 되면 경쟁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손해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와 경쟁하고 있으며, 일반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다.

시장성과 지표인 수익성 지표의 경우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자본이익률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5.2%로 하락하였다. 2005~2017년 평균 자본이익률은 5.7%로 영국(2006~2015년)의 8.65%, 미국(2009~2016년)의 9.82%, 일본(2013~2017년)의 6.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시장구조 지표와 시장성과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 신규 허가 시 일반손해보험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 대부분이 종합보험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품 및 채널 특화 보험회사의 신규 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시장은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경쟁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017년 HHI 지수값이 1,472를 기록하였다. HHI 지수만 보면 집중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접시장과의 경쟁, 시장성과 지표 등을 고려해서 경쟁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하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HHI 지수가 1,400에서 1,800 사이에 위치하여 집중도 지수만 보면 집중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성과 및 시장행위 지표 등을 고려하여 경쟁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시장성과 지표의 하나인 합산비율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이 약 104.6%를 기록하였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0%를 상회하였다. 또한 가격비교 용이성, 시장조사 경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보험종목에 비해 수요 측면 경쟁압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HHI 지수가 1,200에서 2,000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합산비율 평균값이 100% 미만을 기록하였다.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일반손해보험은 집중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결론

경쟁도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반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가 다른 보험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험회사 신규 허가 시 일반손해보험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 대부분이 종합보험회사 형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품 및 채널 특화 보험회사의 신규 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요측면의 경쟁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보험이해도를 높이고 보험상품 비교 및 선택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Chapter

##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리포트 포커스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고령화리뷰 포커스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 보험금융연구

88

### Markov 전환율을 활용한 자영업자 생애근로유형별 연금소득대체율 추정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2호

연금소득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으로, 연금소득은 특정시점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생애기간 동안 고용형태 변화와 이에 따른 소득수준의 변화에 의해 연금소득은 결정된다.

어떤 업종이든 생애기간 동안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금소득 추정을 위해서는 생애기간의 소득흐름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연금소득을 평가함에 있어 ‘생애기간에 걸쳐 변화해 온 근로유형 및 근로기간’(이하, ‘생애근로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시점의 근로유형만으로 연금소득을 평가할 경우 과소 혹은 과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시점의 근로유형을 생애기간의 대표적 근로유형으로 보아 편의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소득을 추정하게 되면 상당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애근로이력의 변화를 고려한 근로유형’(이하 ‘생애근로유형’) 구분을 통해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된 경제활동자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구분은 현시점에서 결정되지만 노후소득 특히 연금소득은 생애근로이력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생애근로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 생애이력을 고려하여 연금소득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Markov 전환율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생애근로이력을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소득(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자영업자 생애근로이력 추정결과를 보면, 생애기간 동안 근로유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5세 입직자의 근로활동기간은 27.3년(임금근로 19.5년, 자영업 7.8년), 비취업 기간은 12.7년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임금우위형 자영업자의 생애기간 동안 임금근로 기간은 86.0%로 임금근로 기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유형별 연금소득 추정결과를 보면, 순수형의 경우 생애임금근로자가 생애자영업자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았고, 혼합형(단,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우위형, 자영우위형, 비취업우위형 순으로 연금소득대체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금소득은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과 해당 근로행태에서 얻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금근로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현재의 근로유형만이 아니라 과거의 근로유형, 즉 근로이력의 변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정원석(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3호

정부는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반면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과세표준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의 소득공제에서 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정 수준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제도변화 이후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효과를 예측한 연구는 동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론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고, 세제 변화 전후의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비율 및 납입액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세액공제 도입이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가 연금자산 형성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이

들 계층에 특화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해 1원의 지원을 했을 때,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1.36~8.05원에 이른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또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도 시행 전 5% 수준에 머무르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비율을 25% 수준까지 증가시킨 독일의 사례 역시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그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안철경(선임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3호

불완전판매는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불완전하게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와 판매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적합성원칙 도입, 판매프로세스 개선, 수수료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왔던 불완전판매 감소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규제로는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최근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접근법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수수료에 대해 직접규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 시장에서 판매보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접근 방법 등 여러 접근법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영국과 미국의 금융보험교육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상품판매 측면에서 영국

의 소매금융상품채널개혁(Retail Distribution Review, RDR) 개혁과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Future of Financial Advice, FOFA) 사례는 보수 체계 개편, 채널 전문성 제고 등 보험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해외 사례와 국내 감독정책을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수요자 측면에서 영국처럼 국회와 금융당국이 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에 금융보험교육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상품 및 채널 개혁으로써 보험상품의 단순 명확화, 상품별 채널 차별화 및 고아계약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감독정책 측면에서 채널 보수교육을 개편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수료 제도의 개선 및 설계사의 불법승환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GA 등 판매조직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신계약 성과와 채널다각화 분석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안철경(선임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4호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므로 핵심적인 경쟁요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채널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신계약 성과를 대면 전속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면 전속설계사의 비중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채널다각화 전략에 기인하여 전체 신계약 중 전속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2.5%에서 2016년 42.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둘째, 전속설계사 시장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이 크게 축소되고,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재적 대비 가동률은 평균 60% 수준에 머물러 전속설계사의 조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속설계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지대하다. 패널 회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가동 설계사 규모가 1% 늘어날 때 전체 월납 초회보험료 및 종신 월납 초회보험료 실적이 각각 0.537%, 0.6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동 설계사 규모와 신

계약 성장 간 유의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채널다각화 수준이 높은 회사의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상품 포트폴리오가 채널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채널다각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과 채널전략 간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본 논문은 그 동안의 채널다각화에도 불구하고 전속설계사가 생명보험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요인 중 하나였으며, 여전히 종신보험과 같은 주력상품의 판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속설계사의 고령화와 GA채널로의 이직 및 신규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 및 조직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전속설계사 조직을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중심 전속설계사 제도는 1990년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남성설계사 조직의 등장으로 생산성 및 영업조직 행태에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지속적이지 못했다. 전속설계사 중심의 생명보험회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인력 및 조직구조, 상품 및 유통방식 등 새로운 영업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 17)하에서의 사망률 위험조정 평가

박규서(일엔에이컨설팅 부대표)·김세중(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4호

9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17년 5월 IFRS 17 Insurance Contracts를 최종 발표하였다. IFRS 17하에서 보험계약은 이행현금흐름과 계약서비스마진이라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행현금흐름은 평가시점에서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며, 이에 시간가치를 조정하고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조정을 포함한다. 위험조정(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상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해약위험, 비용위험 등이다. IFRS 17에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정기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조정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특성만을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IFRS 17에서의 위험조정 평가와 관련하여 사망률에 초점을 두어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종신연금 및 종신보험의 위험조정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가 IFRS 17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위험

조정 시 사망률과 관련된 위험 중 추세위험(Trend Risk)과 변동성 위험(Volatility Risk)을 고려하고 있는데, 추세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변동성 위험만을 고려할 경우 위험조정 수준이 약 30~50% 정도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둘째, 변동성위험과 추세위험을 고려할 경우 종신연금의 위험조정은 가입연령과 신뢰수준에 따라 남녀 각각 0.69~2.22%, 0.30~1.45% 수준으로 측정되며, 종신보험은 남녀 각각 0.93~3.51%, 1.16~2.81%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동일성별, 동일연령에서 종신보험의 위험조정이 종신연금에 비해 크다. 또한 종신연금의 경우 여성의 위험조정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작게 나타나며, 종신보험의 경우 여성의 위험조정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넷째, 가입연령 증가에 따라 종신연금은 위험조정이 증가하고 종신보험은 위험조정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IFRS 17 위험조정의 원칙을 만족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현행 경험생명표 안전할증 방식은 IFRS 17의 위험조정 측정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위험조정 산출 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위험조정 측정방식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CEO Report

##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 CEO Report

2018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로 2017년보다 0.1%p 상승한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세계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 등으로 채권수익률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 및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부채 등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금리(3년)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흑자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전년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지난해에 비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5.7% 감소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및 퇴직연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심화 현상을

반영하여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5.7%로 하향 조정한다.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시장 포화로 인한 수요 둔화로 1.4%(기존 2.8%) 성장할 것으로, 저축성보험은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심화되어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13.3%, 기존 -3.0%)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간의 경쟁 심화, 상품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년대비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2.8%), 자동차보험(2.8%)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개인연금(-4.5%)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퇴직연금(23.1%)과 일반손해보험(4.8%)의 성장세로 인해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2018년 종목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장성보험이 성장하면서 2.3%(기존 2.1%) 증가가 전망된다. 개인연금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5.2% 감소(기존 -5.0%)가 전망된다. 퇴직연금은 은퇴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확대 요인으로 10.0%(기존 5.0%) 증가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하반기 예상되는 정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세 둔화, 요율인하 효과, 마일리지보험 가입증가 등으로 0.7%(기존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7.2%(기존 4.5%) 증가가 전망된다. 이와 같이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8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3.0%(기존 2.5%)로 상향 조정한다.

##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CEO Report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인구구조,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사회체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다.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이며,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남한에 비해 급격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는 일정 기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시장 경제적 요소가 확대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재해, 질병, 노령 등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향후 개인 또는 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남북경협에 따른 시장(북한진출기업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보험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임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협기업의 리스크를 국내보험회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모두 북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

내 보험회사가 북한 내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민족 간 내부거래방식을 허용하거나 북한 보험회사와의 업무제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분 시장 개방 시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북한보험 회사와의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북한 보험심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 등 단독투자를 통해 북한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도·환경 수준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보험 및 금융시장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이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해도 부족한 보험금융 인프라(인력, 자본력,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 등)를 단기간 확충하기는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보험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 즉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지원, 보험금 지급심사체계 마련,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을 추진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해외 보험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북한 내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북한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현존하는 제도하에서 보험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남북 간의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KIRI 리포트 포커스

## 주요 인슈어테크 기업 사례와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5호

인슈어테크가 보험업의 사업모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인슈어테크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와 핀테크 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는 매년 공동으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는 100대 기업은 혁신성, 자본 조달, 기업규모 및 국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50대 선도 핀테크 기업’과 혁신적 기술로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50대 이머징 스타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보험업 관련 회사의 대다수는 헬스케어 및 건강보험 혹은 보험판매 및 중개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50대 이머징 스타기업에 선정된 영국 Cuvva사의 자동차보험과 독일 Clark사의 판매 및 중개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Cuvva사는 자가운전자이지만 정기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지인의 차량이나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기 혹은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은 기존에도 공급된 자동차보험상품이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상품과 차별되는 점은 소비자가 적시에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를 보험료, 수수료, 관리비, 세금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주목할 특징이다.

Clark사는 독일 최초의 디지털 보험중개회사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평가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어드바이저(Adviser)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회사가 구현하는 기술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맞춤형 보험상품 및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며, 혁신적 기술은 이들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기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행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가 적시에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상품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슈어테크 기업이나 IT 기업과의 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5호



2015년 10월 영국 금융당국(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핀테크 영역에서 매년 약 200억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의 핀테크 허브를 유지하기 위해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부합되며 운용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FCA의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Sandbox Eligibility 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업영역, 혁신성, 소비자 혜택, 필요성, 준비상태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영국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FCA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현재 4차 모집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FCA는 홍콩보험 당국과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3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규제 테스트베드 추진으로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창희(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6호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 이율(연 5%)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가 채무변제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을 복구하는데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을 인하 및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 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 피해

4) 1958년 2월 「민법」이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

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9억 3,141만 원에서 11억 9,211만 원으로 2억 6,070만 원 증가한다.

이와 같이 법정이율의 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손해배상액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일본의 경우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또는 점진적 인하)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등과 같이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이기형(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7호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 2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명피해(Personal Damages)는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는 25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부상자는 1,430명으로 매년 3.8%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산피해(Property Damages)는 2,9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

1.0%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상당한 인적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화재피해의 심도가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형 화재사고가 재현되는 이유는 작년에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화재리스크를 인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보험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인수의 경우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의무보험을 인수하고 있고 재산손해도 인수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소화설비 할인, 특수건물 할인 등 화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2016년 화재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화설비 작동여부에 따른 화재피해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험 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인검사와 할인율 적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율체계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시사점

정원석(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7호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기여율, 적립금운용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비중이 2012년 52.1%에서 2017년 64.9%로 상승하였다. 특히, 기여율은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 비율 및 평균 기여율 역시 상승하고 있으며,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가입제도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동가입 방식에 따라 기여금 납입 수준과 방식이 달라진다. 기본 자동가입 방식(ACA) 혹은 적극 자동가입 방식(EACA)의 경우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며, 사전에 결정된 기여율에 따라 퇴직연금에 기여하게 된다. 인증형 자동가입 방식(QACA)의 경우 가입 시점에 3~6% 범위의 기여율을 선택하며, 연차에 따라 기여율이 자동적으로 상승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 기여금의 50~100%를 추가로 기여한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고용주가 8.3%를 의무적으로 기여하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추가 납입이 가능한 반면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고용주 기여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은 일정조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족시키며 근로자의 연령 및 은퇴계획을

반영한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운용된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입자의 퇴직연금 추가 기여 선택을 통해 노후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자가 연소득 중 일정 수준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경우, 고용주가 일정 수준의 매칭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 적립금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을 통해 자동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디폴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8호

최근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



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 금융회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 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또는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는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각각 6~9%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향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

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8호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개선방안에 대심제 전면 도입이 포함된 것은 효과적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제재처분에 대해 제재대상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 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를 확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게 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현

저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규제자인 금융 기관 및 임직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사후 적으로 불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심의절차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은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큰 도약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로 나누어 심의를 운영하는 합리화 방안은 개별 건에서 제재대상자의 의견개진 및 대심시간을 확보하여 대심제의 실효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 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대심제 전면 실시의 현실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인다.

현재 개선방안에 더하여 (1)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2)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을 부여하고, 검사부서 단독으로 제재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며, (3) 방어권 행사에 실체적 도움이 되도록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등사·사본교부를 허용하고, (4) 심의회의사록에 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 상세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등 방안이 추가된다면, 보다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39호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공시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2017년 0.33%로, 손해보험은 동 기간 중 0.41%에서 0.1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GA 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 및 이직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보험수수료 체계는 고성장·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하였던 제도임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IFRS 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 간접비는 이연상각이 불가능해져 이연상각에 의존한 현행 보험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아 급격한 보수체계의 개편은 오히려 시장경쟁의 제한 및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 푸쉬·판매중심 보험유통구조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채널혁신이 필요하다. 표준형·단기보험상품의 경우,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인바운드형 채널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표준형·단기보험상품 상품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이나 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공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의 경우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생애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시책 중심의 마케팅은 신계약 창출에는 효과적이거나 무리한 판매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상품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 관리 차원에서 판매자책임 관련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비전속대리점의 급성장,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과 연계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문제 등으로 판매자에 대한 직접책임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대형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려우나, GA 또한 그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자사상품 설명 스크립트 등을 통해 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대리점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을 GA 설계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0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7년부터 상승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대책(일명 8.2 대책)을 발표하였다.

전세가격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내재가치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본고는 전세가격을 아파트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내재가치 변동성과 매매가격 변동성 비교를 통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검토하였다. 미국 예일대 Shiller(1981)는 자산의 내재가치 변동성이 매매가격 변동성보다 작으면 매매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성 비교를 과대분산테스트라고 한다.

1986년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발표하는 국민은행 자료(KB 부동산)를 이용하여 서울 전지역, 한강이남, 한강이북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과대분산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한강이남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이미 거품이 형성되었고, 한강이북의 경우 거품에 근접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매가격 변동성은 2009년 이후 내재가치 변동성을 하회하였으나 최근 들어 한강이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은 내재가치 변동성보다 커졌고, 한강 이북에

서는 내재가치 변동성에 근접해가고 있다. 거품이었던 시가로 알려진 1980년대 말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매매가격 변동성이 내재가치 변동성을 상회함에 따라 전세가격을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방법론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과대분산테스트는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이고 위험에 중립적이며, 사용된 통계자료가 정규분포이어야 하는 등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도 병행되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거품이 형성되고 꺼질 때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정책을 통해 부동산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통화당국 간에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8.2 대책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가운데, 거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품 발생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0호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의 자금 배분을 목표로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감안하여 기

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본규제 개편이 보험회사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최근 개편안과 유사한 2012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위험계수 상향 조정의 영향과 비교·분석한다.

금융당국은 2012년에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당시 주택가격은 정체된 상태였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던 점이 정책효과가 단기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초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계대출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억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규제 개편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는 이번 자본규제보다는 향후 금리 변화와 부동산가격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

최근 대출관련 보험권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1호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확대 전략으로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 보증위험도 커지고 있다. 변액보험 판매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는 변액연금 판매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변액보험 보증위험 확대요인이 될 수 있다.

변액연금을 포함한 변액보험에 부가되는 보증유선은 보증위험이 존재하며, 최근 보증위험이 큰 최저중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이 증가하면서 보증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상품설계 변경과 자산운용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증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한 동적 헤지도 일부 활용되고 있다.

보증수수료가 없고 원금보장이 가능한 변액연금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채권투자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파생상품을 통한 동적 헤지는 일부 보험회사만이 활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방법이 발전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보증수수료를 높이고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변액연금 보증위험에 대응하였고, 동적 헤지전략을 정교화하고 리스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확충 등의 전략을 활용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연계형연금 수요가 증가하였고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비해 위험이 적을 수 있는 지수연계형연금을 확대하였다.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비중과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증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방안은 제한적인 상품구조 변경, 동적 헤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거버넌스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변액연금처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보증위험은 적은 지수연계형연금(EIA) 등으로 연금보험의 상품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중신중도인출금보증(GLWB)을 통해 중신노후소득 확보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증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액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과 금리위험관리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1호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불거진 직후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강세 및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2021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금리위험 평가방식이 정교화됨에 따라 금리위험액이 확대 현행 RBC제도에서는 최대 잔존만기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보험부채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K-ICS하에서 실제 잔존만기가 적용되어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이 증대하자, 2017년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기존 최대 20년에서 25년과 30년으로 각각 확대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실제 만기를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금리위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험회사는 K-ICS 제도관련 금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할 필요금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보장성상품 및 금리연동형 상품이 도입되고, 국내 및 해외에서 장기 우량채권 매입이 확대되었다.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최근 기법으로 단기 및 중기 금융채발행을 통한 보험부채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축소와 장기채권 선도 계약 등이 있다. 채권 선도계약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에 채권을 매수할 것이라고 약정하는 계약이다. 채권 선도계약은 전통적인 금리위험관리기법에 비

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채권선도 매입은 계약체결시점에서 현금지출이 소요되지 않아 투자자산배분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듀레이션 불일치를 감소시킨다. 둘째, 장기 우량의 채권 만기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예컨대 10년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5년 선도채권 계약은 5년이 지난 후 10년 국채보유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15년 채권 보유와 같은 효과가 있다. 셋째, 재투자 위험에 대한 헤징기능과 우량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채권선도계약은 채권선도계약 계약체결 시 금리위험에 즉시 노출되거나, 결제시점에서 유동성문제가 발생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선도계약은 거래상대방위험에 노출된 장외파생금융상품이므로 보험회사는 채권선도계약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증거금 및 담보제도 등 별도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2호

IT 기술 발달로 비대면 채널이 확산됨에 따라 설계사 인력 축소와 설계사의 고연령화가 진행 중이다. 인력구조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과거 상품판매과정에서 설계사가 담당하던 기능

을 온라인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젊은 인력이 진입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 조직 또한 신규 경쟁채널의 등장, 청년층의 저조한 신규진입, 설계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으로 고연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30대 미만 설계사의 비중은 2017년 기준 5.7%로 1997년 대비 16.0%p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30%p 증가한 40.7%이다. 고연령화는 여성설계사(50세 이상 비중, 45.6%)가 남성설계사(24.9%)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형태별로는 대회사(47.0%), 중·소회사(36.3%), 외자계(22.3%) 순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의 고연령화가 진행될수록 신계약에 대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단순한 상품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업조직의 역동성이 상실되면서 손익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 설계사 중심 보험회사 영업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은 점차 복합화·고도화되고 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적 기반이 약한 고연령층 설계사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상품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연령화가 진행된 회사들은 채널 포트폴리오가 고령의 여성설계사 중심이어서 젊은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장기적으로 연계판매 기회가 적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고령화는 보험회사의 손익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설계사 인력 및 조직 인프라 재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문설계형 채널과 단순판매형 채널로의 역할 분담 등

보험시장 신환경에 상응하는 인력 및 조직 인프라 재구축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일정기간 임금을 보전해주는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 생산성 및 직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 신입 설계사의 지속적인 영입 및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상품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라 고연령 설계사의 완전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설계사 보수교육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고 상품교육의 비중이 낮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구조, 수수료 및 소비자 보호 이슈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2호

P2P(Peer to Peer) 보험은 유럽에서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최초 도입되었는데, 계약자 간 상호 부조와 재보험이 결합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친구·가족·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한 후,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는 내부 적립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로 초과손실에 대비해 재보험을 가입하는 형태이다. 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



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줄일 수 있는 보험 형태로 알려져 있다.

P2P 보험은 상품 유형 및 운영 주체에 따라 ① 유럽처럼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형태, ② 보험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 ③ 회사는 P2P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계약자들이 직접 보험을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가 운영하는 형태로는 영국의 So-Sure나 독일의 Friendsurance를 예로 들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는 미국의 Lemonade가 있다.

가장 최근에 출현한 P2P 보험은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들이 서로를 보장해주는 완전한 손실 공유형태인데, 영국의 Teambrella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언더라이팅부터 보험금 지급심사까지 계약자들이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자율규율(Self-Governing) 모형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P2P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Friendsurance나 영국의 So-Sure처럼 보험중개사가 모집·운영하는 P2P 보험 형태는 국내 보험업법에 부합하지 않아 당장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P2P 보험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P2P 보험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던 위험보장의 일부를 계약자들이 직접 부담하므로 보험회사들이 P2P 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도 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P2P 보

험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커서 전통적인 보험상품으로 보장하기에 리스크가 큰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요조사, 보장내용 설계 및 판매는 보험중개사가 대행하고 상품 운용은 보험회사가 할 경우, 상품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eambrella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 보험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P2P 보험의 확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P2P 보험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형태의 P2P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험환경을 전제로 제정된 보험규제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과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3호

일본은 2018년 3월 30일 아베수상이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 L4 이하의 자율주행차(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상용화관련 법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운영된 손해배책임 연구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적용시의 다섯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3월 20일 6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첫째, AV사고 시 운행공용자책임을 적용하여 현행과 같이 보험회

사가 보상하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운행공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지도나 인프라 정보 등 외부데이터 오류나 통신차단 등에 의한 사고도 AV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를 보상하였다.

일본의 지배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개념을 적용하는 운행자 책임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AV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은 향후 국내의 관련 법제 마련에 시사점이 있다. 특히 L4 이하의 사고는 여전히 운행자책임이 지배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분석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과제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4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간 경직되어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즉 대표적인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하여 경험·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험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경험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경험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측 보험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 보상에 대한 불신 제거 등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공동으로 합영보험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방식, 적정 보험요율,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험보험 참여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원 검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한도는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

액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경험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미평가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보험가입을 미리 합의하는 기평가보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남북 간 경험 활성화에 대비하여 경험·교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나 해외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 누적가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회사 및 해외재보험사의 담보력(Capacity)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험 관련 보험상품 운영에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 보험회사 뿐 아니라 Lloyds 등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사이버 리스크 관리

변혜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4호

기업 사업모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 확대, 사이버공격 증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사고는 정보 유출 사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과 더불어 이미 판매되었거나 판매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증가시키고 있다. 보험회사가 사이버 관련 손실에 노출된 보험계약의 인수에 따른 위험을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는 크게 명시적(Affirmative) 사이

버 리스크와 묵시적(Non-Affirmative 또는 Silent) 사이버 리스크에 기인하는데,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명시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로서 사이버 보험계약에서 명시한 과학수사, 법률비용, 알립 및 신용 모니터링, 제3자 배상책임 등과 같은 유출 대응 비용 보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지, 제외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원배상책임(D&O)보험, 전문배상책임(E&O)보험, 재산보험 등 기존 손해보험은 사이버 리스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 사고에 따른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2017년 영국 건전성감독당국(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감독성명을 통해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손해보험회사에 보험료 조정이나 명확한 면책조항 등을 통해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 중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보험시장의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노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사이버보험이 보장하는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이 보장하는 묵시적 사이

버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명시적 사이버 리스크와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리스크 관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장이 어렵다면 명확한 제외조항이나 보장의 제한을 명시하는 등 PRA가 제시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에 내재하는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의 수준을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5호

모집 수수료 등 수당체계의 차이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독립대리점(GA)으로의 이직하는 설계사가 늘어남에 따라 고아계약(孤兒契約, Orphan Policies)이 증가하고 있다.

고아계약의 증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보험계약을 관리해 주던 설계사가 없어지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연체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대하였던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본인이 보유한 보험상품에 대해 불안감

을 느끼거나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고아계약은 정상계약에 비해 해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회사 수익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고아계약 관리가 미흡하여 향후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고아계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후속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고아계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고아계약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 고객보장 최적화 서비스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고아계약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으로 추가판매(Upselling) 등 단기실적 제고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뿐 아니라 GA 등의 판매조직에서도 고아계약 관련 전담조직 운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자 배정, 양질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고아계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센터 운영이 요구된다. 고아계약의 관리는 보험회사(관리)·영업조직(추진)·설계사(실행) 간 유기적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계사의 수수료 중 판매수수료와 유

지관리수수료를 구분하는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유지관리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상품 별로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의 비중과 지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고아계약 발생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아계약 관리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에 대한 공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아계약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설정, 고아계약 관리지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

변혜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5호

2017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결과에 따르면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적발금액의 6.2%를 차지하였다.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허위,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입원, 장애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연성 보험사기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행위이다.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과 평범한 계약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충동적으로 사고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범은 경성 보험사기범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경성 보험사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연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접근과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접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단순하고 명확한 정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연성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 연성 보험사기를 합리화하는 가장 흔한 논리이나,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를 비난하여 보험사기를 정당화하는 합리화를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규범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자각을 돕는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 등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자가 소속감을 갖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전에 성실신고 확인



서명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상품이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연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연성 보험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아베노믹스 5년의 평가와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특징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6호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자민당이 2017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노믹스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베 내각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 구조개혁 등 세 가지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정책목표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실질기준 연간 2%, 명목기준 연간 3%,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간 2%이다.

아베노믹스 5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작도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평가의 배경은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8분기 연속 성장하였고,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주가도 크게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점 등이다.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고, 대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부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만 개선되었을 뿐 서비스업의 경우 하락하였으며, 국가경쟁력도 노동시장 규제 및 혁신능력 부족 등으로 후퇴하였다는 점 등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일부 제조업에서 경제 전반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실업률 개선이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베노믹스 5년간 생명보험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개인보험의 계속보험료 감소세가 멈추었다는 점과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개인연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 등이다. 비록 경제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았으나 양(+)의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취업자 수가 늘어났고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점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막대한 정부부채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층은 취업이 용이해지자 노후소득보장 수요부터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비교

전용식(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6호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6년 7월 6일 1.38%에서 2018년 5월 21일 3.06%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 페소화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두 차례의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기의 글로벌 주가, 환율, 금리, 경기 등을 비교하여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은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상승시키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04년 6월(1.0%)부터 2006년 7월(5.25%)까지 미국의 정책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2008년 3월 베어스틴스 인수,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으며, 2015년 12월부터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전 세계 주가지수(모건스탠리 세계 주가지수, MSCI)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신흥국 국채발행 스프레드는 두 시기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2015년 말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비교해 보면 2004년에는 정책금리가 425bp 인상되었을 때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8bp 상승하였으나, 2015년 말에는 150bp 인상에 82bp 상승하여 정책금리 인상폭에 비해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말에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세계주가(MSCI)는 2004년 시기에는 264.72 상승하였으나 2015년 말부터는 423.72 상승하였고 달러가치의 상승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국채금리와 달러가치 상승세, 주가지수 상승에 미

치는 효과는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2015년 말부터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채 금리(3년 만기)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는 2004년 6월에 시작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비해 2015년 말부터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환율과 주가에 대한 영향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에 물가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고채 금리(3년 만기)의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회복세 둔화로 환율과 주가의 선행관계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국내 경기가 2005년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될 경우 금리상승의 부담 확대로 이자부담 확대, 투자 증가세 둔화 등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공유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검토과제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7호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는 국내법 기준으로 민박업에 해당되는데,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허용되는 반면, 도시 지역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지역의 내국인에게도 민박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미국의 사



례를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 확산에 따른 보험 이슈와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숙박공유를 비롯한 공유경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가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기업으로 보아야 할지의 모호함에 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장공백(Coverage Gap)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성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숙박 서비스 제공 중에 재산피해나 기타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숙박 영업 행위는 낯선 사람의 관여로 인해 가계의 일반적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성 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보장공백 이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당국, 보험산업이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지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어떠한 보상 정책도 제공하지 않았으나, 규제당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집주인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정책을 제공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는 집주인과 고객에게 숙박공유 관련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매사추세츠나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보험가입 의무화 관련 입법 시도가 있었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단기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국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 규제당국과 보험산업도 향후 숙박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선, 규제당

국의 경우에는 보장공백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7호

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는 기업보험과 개인보험에 적용된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보험이나 재보험계약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로는 Allianz Risk Transfer AG의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대재해스왑 발행과 블록체인의 보험산업 컨소시엄 B3i(Blockchain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의 재물 초과 재보험 계약의 베타버전을 발표, AIG와 IBM의 스마트 보험 계약 파일럿 버전 발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업보험 및 재보험의 적용 사례는 모두 전통적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을 적용한 경우이다.

반면, 개인보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는 전통적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과 P2P 보험의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효율성 향상의 사례로는, AXA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체계인 이더리움에 기반한 항공자연보험 피지(Fizzy) 개발과 교보생명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Teambrella의 완전손실공유형 P2P 보험은 P2P 보험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국내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적용이 활성화 되면, 여러 방면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효율성 및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회사 공동망 운영과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Teambrella 모델과 같은 완전손실공유형 P2P 보험이 도입되면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위험도 계약자 스스로 보장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정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험산업 이외 영역에서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망에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정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하여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금 지급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보험금 지급심사 자동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 보험은 보험중개사가 개입하는 P2P 보험에 비해 허용의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결함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 규제와는 다른 방향의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비용 편익 분석

임준환(선임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8호

최근 국내보험회사는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하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자본 확충 수단으로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등이 있는데 특히 해외통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대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기업회계 기준의 자본과 감독회계 기준의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도움이 된다. 반면 투자비용 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신종자본증권을 조달하는 것은 향후에 재무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평가에 앞서 먼저 해외통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회사가 발행한 해외신종자본증권은 미국 달러화표시 5년간 중도 비상환(Non-Call), 만기 30년, 5% 수준의 금리, 중도 상환 시 금리상향조건이 부여된 유가증권이 대부분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국내 보험회사가 발행한 높은 금리의 신종자본증권 수요는 높은 편이다.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과 더불어 잠재 편익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해외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순조달비용(=달러운용이익률-달러발행비용)이 높아 순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신종자본증권의 순조달비용은 투자운용이익

률(=3.5%)과 달러화표시 발행비용(=5%)의 차이인 -1.5%의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자지급 손비처리에 따른 세금절감효과, 환헤지 시 달러 프리미엄 확보,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의 조달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있다.

그러나 미국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금리격차가 확대될 경우, 해외신종증권 발행이 줄어들 수 있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장기보장을 위한 보험료 무보증상품 활성화

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8호

최근 다양한 건강보험상품이 갱신행 또는 비갱신행 상품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비갱신행은 보험가입 시 보장기간이 갱신 없이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을 만기로 하거나 20년 만기, 30년 만기 등 연단위로 보장기간을 설정하는 반면 갱신행은 보험계약 갱신 시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요율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하여 80세, 100세까지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보험은 갱신행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암보험과 같은 일부 건강보험은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비갱신행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갱신행 상품과 비갱신행 상품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모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갱신행 상품은 리스크 관리와 저렴한 보험료라는 장점이 있으나 고연령 갱신 계약자에게는 미래 보험료 상승,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계약을 유지하는 역선택에 노출

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비갱신행 상품은 향후 의료기술변화와 같은 환경변화로 손해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비갱신행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장래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보험금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비갱신행 상품과 갱신행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2003년 장기요양보험이 처음으로 보험료 무보증상품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개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무보증상품이 개발되어 미래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급증할 수 있는 상품을 장기보장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 무보증상품은 고연령화로 인한 보장 확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치매보험과 같이 장래 요율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보장들도 장기보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양한 보장들의 보장기간이 장기화될 필요가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경험 부족으로 충분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험회사의 IFRS 9 적용 사례분석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49호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FRS 9은 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

해 2018년 1/4분기부터 IFRS 9을 적용한다. IFRS 9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방식 변화에 의해 각 측정 방식의 자산 비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본 및 손익의 변동성이 달라진다. 둘째,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이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의한 손상인식 방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전환되는데,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한다.

IFRS 9 적용으로 4개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2.9%에서 25.3%로 크게 증가한다.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선행연구 결과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식, 수익증권, 기타증권(주로 파생결합증권)이 외에도 많은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급증하면 손익변동성이 확대되지만, 보험회사는 IFRS 17 시행 이전까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여 손익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정 두 회사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당기순이익이 각각 52, 105% 감소한다.

2021년 IFRS 17 및 IFRS 9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익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정 세 회사는 IFRS 9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이 평균 28%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의 증가율은 높지만, 대손충당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으며 회계기준 전환에 의한 일회성 사건이므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험회사는 IFRS 9 적용으로 인한 수익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자산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손익변동성·금리리스크와 자산운용수익률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각사에 적합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수 보험회사는 ALM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비금리부자산 및 듀레이션이 짧은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은 축소하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IFRS 9 적용에 의한 대손충당금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향후 대손충당금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임준환(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0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중(對中) 무역적자의 누적, 글로벌 기술·경제력 약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촉발된 것으로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중국도 관세부과로 맞대응하면서 극단적 대립의 형태인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불거진 직후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변동성이 확대되

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강세 및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지수인 VKOSPI가 한 때 20%까지 상승하였고, 원화대비 달러가치에 대한 미래의 상승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리스크 리버설(Risk Reversal)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원화가치는 위안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하락폭이 원화하락폭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10년 이상 중장기 국채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 및 수출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경제회복세 둔화는 장기 금리상승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불안은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의 보증준비금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어 추가변화에 대한 헤징빈도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환율이 불안한 가운데 최근 장기 환헤지 부담비용이 단기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환헤지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금리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는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1호

117

본고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산업과 관련된 주된 쟁점을 검토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정무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017년 7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재분류·체계화하여 판매 행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i) 변액보험 외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ii)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iii)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에 관한 것이다.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i)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ii) 투자성 상품과 달리 다수 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견해가 존재한다. 아울러 ‘적합’·‘적정’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평가되나, 분쟁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인 상황에서,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여서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큰 경우 특례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로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회사에 지휘·감독 관계를 선언하고, 사용자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적용을 위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금융소비자 보호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 국고채 시장 개선과 보험회사에 대한 기대효과

황인창(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1호

국고채 시장 변화는 국채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보험회사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 확대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금리위험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중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은 ①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 ②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스트립) 활성화, ③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 등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 $30\pm 5\% \rightarrow 35\pm 5\%$ )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채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국고채 스트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트립 공급을 확대하고, 스트립 재결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연간 총 발행량을 제시(약 1.5조 원)하는 한편 물가연동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채 시장 개선이 보험회사에게 주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채 장기물(특히, 초장기물) 발행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회사 자산듀레이션 확대, 이자소득 증대, 해외 장기물 수요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국고채 스트립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는 국고채 스트립 채권 투자를 통해 자산듀레이션 확대, 재투자위험 제거, 다양한 만기구조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이자소득세 이연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는 실질 가치 기반 연금 등 신상품 개발, 저물가 탈피 기조에서의 투자수단 제공,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부채평가 및 보험료 산출에 활용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주요 정책에 대해 발행시장 참여자

(국고채 전문딜러)와 더불어 국고채 최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고채 시장의 질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자금 조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국고채 장기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국고채 50년물 발행의 정례화, 장기 국채선물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과 시사점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2호

TM·홈쇼핑·CM·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은 2000년 이후 ‘신채널’이라 불리면서 대면채널·방카슈랑스채널과 함께 보험유통시장의 주된 채널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성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기준 생명보험(초회보험료 기준)과 손해보험(원수보험료 기준)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각각 1.4%, 12.1%이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2012년을 최고점으로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상품별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단순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저관여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대면채널별 비중의 경우 TM채널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손해보험의 경

우 CM채널의 약진이 돋보인다.

비대면채널의 경우 대면채널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중저가 상품공급에 유리하며, 고객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차별적 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유지율도 대면채널과 유사한 수준이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향후 소비자들의 비대면채널 가입의향도 현행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거 TM채널과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설계사채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강화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채널 간 불완전판매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유통의 흐름이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접목을 통해 변화·발전해 나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대면채널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채널의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판매에 용이한 상품의 요건, 즉 상품 표준화, 단순화(특약최소화), 소비자이해 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춘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설명대본 충실화, 경품제공 판매시책 등 보험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 제거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채널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채널 간 상호보완과 경쟁을 통해 보험상



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대면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Outbound 위주의 영업에서 Inbound 영업 패턴의 활용, 인터넷이나 모바일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과도한 규제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비대면채널의 가격경쟁력 및 소비자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가 요구된다.

###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 유효성 논란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2호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통화론자와 케인즈학과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미국과의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케어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의 단순화가 필요한데, 단순화 과정에서 현실과 다른 가정이 사용되며, 가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둘째,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이 경제현상과 부합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

해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실증분석도 관련 변수 통제(Control) 여부, 축약식(Reduced Form) 사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셋째, 경제이론이나 이로부터 도출된 경제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수리적이며, 특정 경제학파의 사고와 주장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주류 경제학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여 신뢰가 떨어졌으며, 통찰력보다는 수리적 기법에 의존하여 일반의 이해 역시 낮아졌고, 소득 불균형 등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이 정치적 성향에 좌우된다.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통상정책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이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이론의 결과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상 가능한 경제정책의 간접효과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고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3호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법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동차사고 관련 배상책임 체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보유자가 부담하는 운전자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하는 운전자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으로 구분된다. 그 중 피해자 구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보유자가 부담하는 자배법상 운전자책임이다. 운전자책임은 보유자가 실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나, 보유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다.

2020년 우리나라서 상용화될 레벨3 단계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이다. 따라서,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완전자율주행차의 전면상용화 이전까지는 여러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도로에 혼재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사고의 경우 운전자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사고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원인 규명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는 이러한 레벨3의 과도기적 특성 및 일반차 사고와 구별되는 자율주행차 사고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로 (i) 현행법제 적용 방안(1안), (ii) 제작사 무과실

책임 방안(2안), (iii) 보유자·제작사 공동무과실 책임 방안(3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방안 | 내용                                                          |
|----|-------------------------------------------------------------|
| 1안 | - 보유자: 운전자책임<br>- 제작사: 제조물책임<br>- 운전자: 운전자책임(예외적)           |
| 2안 | - 제작사: 운전자책임<br>(일반차 사고는 보유자 책임)<br>- 운전자: 운전자책임(예외적)       |
| 3안 | - 제작사·보유자: 공동운전자책임<br>(일반차 사고는 보유자 책임)<br>- 운전자: 운전자책임(예외적)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법제도 일반차 사고 배상책임 법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 3가지 방안은 각각 이론적, 현실적 근거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분하여 피해자 구제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역행하므로, 현행 법제를 자율주행사고와 일반차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레벨4 이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는 인공지능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3호

현행 자배법상 운전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용될 경우,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 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형태 등이 일반차와 큰 차이가 없어 소유 구분과 용도 구분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종목과 담보종목도 현행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료 산출 시에는 운전자의 특성 외에 차량별 특성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차량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의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차량모델별 요율이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서는 모든 담보종목에 차량모델별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의 보험제도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현행 자동차사고와는 원인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킹이 소프트웨어 결함처럼 제작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의 손해는 제작사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상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게을리하는 등 소유자의 과실로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손해 및 배상책임은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제작사나 소유자가 해킹방지를 위해 통상적인 노력을 하여 그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현행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

부보장사업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난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보는데, 소유자나 제작사에 책임이 없는 해킹에 의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도난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로 발생한 소유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없다.

현행 자배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명백하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자율주행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사고원인을 엄격히 규명하여 보험회사가 사고의 책임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 방안 제안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3호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 강화, 사고책임 배분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차사고 피해자 보호, 즉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자배법의 운행자책임 법리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운행자책임 법리를 유지하면서 제작사책임 확대를 통한 사고책임 배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절차로는 구상제도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를 완료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제작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제작사에게 구상을 하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소유자와 제작사의 책임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구상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가 객관적,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자동차사고의 원인규명 체계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의 물적증거에 의존하여 운전자의 과실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현행 사고규명 체계로는 자율주행차의 전자정보 및 전자기기의 정보처리,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고조사 체계가 다음과 같이 재구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차 내부의 전자적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정보 기록장치(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율주행차 사고당사자 간 구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의 정보를 피해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기록장

치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고가해자(보험회사)와 피해자(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신력 있는 사고조사기구(가칭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고조사기구에서 분석한 정보는 민간(보험회사 및 제작사)에게 제공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사고책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3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공청회 및 Rand Corporation 발간 보고서 및 관련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비추어 보면,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현행 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제작사 상대의 대규모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제작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제도 변화보

다는 제작사의 책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에 구상하는 방안(Single Insurer Model)을 채택하였으며, 위 내용을 반영한 법안인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2018년 7월 19일 확정되었다.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을 개정하며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는 종전 일반 자동차사고에 관한 보유자(Halter) 책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독일은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유자 책임’은 일반 자동차사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사고책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을 의무화하고, 교통당국 및 사고 피해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일본도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자배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運行供用者責任)을 자율주행 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2019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일반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를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리적인 측면과 피해자 구제의 적합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3호

노폴트보험(No-Fault)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즉, 소송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노폴트보험 제도의 목적이다.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자율주행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



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자율주행시대에는 미국식 노폴트보험 또는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노폴트보험은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미국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배법은 이미 자동차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가불금, 가지급금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은 큰 실익이 없다. 한편,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뿐 아니라 인적 손해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도 자동차등록세 및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며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이다. 즉,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는 그 체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식 노폴트 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율주행시대에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함께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생각건대, 자율주행시대의 자동차보험 문제는 노폴트보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 시 사고책임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추이 및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4호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고객은 신용보험 가입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회사는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방카슈랑스 규제(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이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채무의 상속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채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중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속성 보험(꺾기)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청약을 권유할 경우는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보는데, 신용생명(손해)보험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험이 활성화된 이들 국가에서는 상품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설명 의무 준수 미흡, 채무자의 보험가입 사실 미인지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 교육 강화, 표준(핵심)설명서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상품판매 행과 관련해서 끼워팔기, Opt-out 판매 금지, 대출 발생 7일 후 상품가입 등을 추진하였다.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과도한 보험료 수준, 일시납 보험료 징수 구조 등을 막기 위해 공시제도 및 보험료 환불제도를 마련하고 보험료 및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다. 한편, 상품 특성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의 역선택(자살, 고의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한도 및 횟수를 설정하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를 규정하였다.

향후 국내에서도 건전한 신용보험시장 형성을 위해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감독당국은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사망(자살 제외), 심각한 장애, 중대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적정환율 산정 규제가 필요하다. 끝으로 불완전판매 및 역선택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와 신용부도스왑 발행

임준환(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5호

최근 보험회사의 해외채권 매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환헤지 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환헤지 비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매칭과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채권투자에 소요되는 환헤지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 신용부도스왑(CDS) 발행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른 제반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외평채 CDS 발행자로서의 보험회사는, CDS가 신용사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과 미국 국채와 같은 우량채 담보제공 측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CDS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신용사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CDS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우량 채권을 매입하므로 상시적으로 국제적 적격담보물(Eligible Collateral)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거래상대방위험을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CDS발행으로 얻게 되는 기대수익은 CDS 프리미엄이고 잠재적 위험은 우리나라 정부의 채무불이행위험 또는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위험이다. 그러나 높은 국가신용등급,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및 순대외금융자산 등 양



호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로 인해 정부의 파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한 해외 우량채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위험을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다.

향후 보험회사가 외화표시 CD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및 담보관리 능력, 달러 크레딧라인(Dollar Credit Line) 확보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산다변화 확대 및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해외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헤지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보유 우량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담보물 평가 과정에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 크레딧라인(Dollar Credit Line)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김석영(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5호

최근 경증 만성질환자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상의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었으나 유병력자를 위한 정액보상의 간편심사보험이 이미 판매되고 있어 두 시장 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보장 한도를 줄여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령층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

여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었던 시기에도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손의료보험 도입이 정액형 건강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강보험 판매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이 치료비용을 보전하는 목적과 함께 소득보상의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유병자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관계와 달리 일부 질병치료에서는 경쟁관계를, 다른 질병치료에서는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고령층은 간편심사보험을 소득보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유병자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상품의 경쟁, 보완관계로 판매채널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두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다양화로 고령층 소비자들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두 상품의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해약과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전용식(연구위원)·김유미(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6호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라 할 수 있는 진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한방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1.29% 하락하였다. 실제로 2017년 266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자동차보험은 2018년 상반기 116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상승과 이에 대한 보험료 조정 현황, 조정 지연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 주요국의 2012년부터 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금 원가 상승,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럽 주요국에 비해 보험금 원가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폭이 적고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1년간 손해율 상승폭의 20% 내외가 보험료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산 비율은 106.08%로 주요국 중 경영성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원 증가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8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를 악화 지속으로 파산을 경험하였고 자동차 보험료는 급격히 상승한바 있다. 손해를 상승으로 인한 합산비율의 상승은 영업이익을 악화시켜 가용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급여력비율(RBC)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관리를 위해 인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9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와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85% 이상인 구간에서 보유계약 10만 건당 자동차보험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안정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보험사기 등으로 의심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였던 사례에서처럼 배상 및 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6호

최근 보험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가에 힘입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잔액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6월말 잔

액기준 장외거래 비중이 96.3%, 장내거래 비중이 3.7%으로 대부분이 장외거래이다. 장외거래는 통화관련 거래(통화스왑, 통화선도)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장내거래는 금리선물 거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식선물과 통화선물 거래가 많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권역별로 비교해볼 때 금융권 파생상품 활용 금액의 1.6%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험회사 운용자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1.85%에서 2018년 6월말 현재 1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국내 주가하락, 대내외 금리 상승, 원화의 환율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노력이다. 원금보증이 내재된 특별계정 변액보험계정은 주로 주가하락 리스크에 대한 헤징수단으로 주가지수선물 매도가 활용된다. 일반계정의 경우 확정금리 및 최저금리수준이 보장된 연동금리형 보험상품이 금리(하락)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금리관련 파생상품(금리선물, 금리스왑, 금리선도 등)을 활용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시 금리 및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스왑, 통화선도환계약 등을 활용한다.

향후 금리 및 환율변동성 확대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추가적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예상되며, 2022년 이후 K-ICS 도입안 가운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경감조치기법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관리 수단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파생상품 활용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관리에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손익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용자본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용자본의 변동성 확대로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손익발생 및 원인, 가치평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7호

보험은 리스크재무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개인 또는 기업이 사고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리스크재무에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화재보험에서는 소화설비 등 리스크관리 실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 및 손해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발생 및 손해 규모 축소를 위한 리스크관리 기법을 리스크통제라고 하는데, 과거 영국의 화재보험회사는 리스크재무에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리스크통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고객의 리스크통제 역할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최근 Financial Times는 보험회

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고객의 수요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 시 사고 규모 최소화 및 신속한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리스크관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를 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 소비자들은 사고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감독당국이 2017년 11월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사고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고객의 질병예방 및 수명연장(손실방지) 등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보험환경에 한계가 있어 상품 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업법, 의료법 및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8호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고에서는 OECD 주요국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 첫째, 금융위기 또는 재정위기 충격이 컸던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과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주택가격 조정이 가계부채 조정보다 먼저 마무리 되었으며, 주택가격은 2013년을 전후하여 빠른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국가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 가계부채 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택가격 지수는 미국, 영국과 포르투갈에서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2007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둘째, 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있던 국가들에서 2007~17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는 본격적인 조정 없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및 우리나라의 2017년 가계부채 비율은 190% 수준에 달하는데, 동 비율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위기 발생 전 가계부채 비율의 평균 수준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는 같은 기간 주택가격 지수가

55~75%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고,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 가져올 충격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조정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가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충격에서 한 발 벗어나 있던 국가들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가계부채 비율 역시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기 경험국들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부채조정으로 위기 발생 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비율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게 상승하였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빅데이터에 나타난 보험산업

김석영(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59호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크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들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운동습관 등 건강관리 자료 빅데이터 등을 분석을 경영활동에 접목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검색 빈도 분석을 통해 보험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검토하였다. 포털사이트 검색 빈도는 사용자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아지는 시점, 지역별 및 상품별 검색 빈도 등을 분석하였다. 검색 빈도 분석결과,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정부의 보험관련 서비스 및 홍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에 대한 검색 빈도가 급증하는 시점은 연후 전후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높은 검색 빈도를 보이는 온라인 전업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의 70%가 서울에서 발생하였다. 보험회사의 검색 빈도가 급증하기 시작한 해부터 F보험회사의 CM채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정부가 시작한 보험다모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작 초기 및 관련 이슈가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는 검색 빈도가 증가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검색 빈도를 보였다.

검색 빈도 분석은 보험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존과 다른 각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빅데이터 분석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0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올해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법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4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및 본법을 지칭)의 일환으로, 본 제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최종통과가 전망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제·개정을 마친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운용하고자 할 때,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는 규제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의 혁신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 범위 내에서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규제 적용 없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성장을 위해 다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

로 인해 본 법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시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된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 혁신적 아이디어가 재정적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기준 설정
- 지정심사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에서의 보호장치 마련
- 시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및 배상 기준 관련,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설정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포커스

제460호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공개변론을 열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심리하였다. 가동연한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만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실회의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그에 따라 일실회의 인정 규모도 커지게 된다.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업에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동연한을 결정한다. 한편, 장래 직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대수명(남자 67.5세, 여자 75.3세), 연금수급연령(60세)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보는 기존 판례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폐기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 선고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기대수명은 당시보다 10세 이상 증가하였고, 국

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며, 고령자가 생계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할 필요성도 커졌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실체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정신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및 정년 연장 압박,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조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연한 상향에 수반되는 보험료 조정,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 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5호

2015년 이후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인 ANZ, CBA, NBA 등은 보험자회사의 수익성 저하, 금융그룹의 자본 확충 필요성, 불완전판매와 평판 위험 등을 이유로 보험산업을 매각하고 있다. 각각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사업을 매각한 금융그룹의 경우 보험자회사의 수익성 정체로 보험부문의 이익기여도가 감소추세에 있거나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이 2017년 7월 호주 4대 은행들의 자본요건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 즉 2020년부터 ANZ, CBA, NBA, Westpac 등 호주 4대 은행의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비율이 10.5%로 강화된다. 보험자회사의 이익 창출능력 약화로 인한 자본 확충의 어려움이 매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016년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금지급 과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계약자 보호 강화를 권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요 금융그룹의 평판이 크게 훼손되었다.

즉 호주 사례는 금융그룹 내 보험사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전체 그룹의 평판위험

을 크게 훼손함에 따라 보험자회사 매각으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 금리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6호

2017년 11월 30일에 한국은행이, 12월 13일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3.0%였던 금리를 3.25%로 올린 이후 6년 5개월만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8년 1월 3일 2.13%로 2017년 10월 평균 2.03%에서 10bp 상승하였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상승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신용위험 상승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 가중은 보험계약 해약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2008년 1/4분기부터 2017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 해약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금액 증가율과 보험회사 자기자본이익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해약증가는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의 해약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유계약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험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6호

Smidt and Botzen(2017)은 네덜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자신의 조직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만 우선적인 공격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not-in-my-organization’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발생 빈도와 관련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한 반면,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소수만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저자들은 낮은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피해규모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이버위험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와 잘못된 위험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효과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6호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1일부터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2016년 3월부터 보험업계 TF, 의료자문을 거쳐 작성된 개정 방안과 지난 2017년 7월 12

일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①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②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③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장해분류표 개정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장해분류표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변화의 영향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7호

2018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만기 이전 일부 금액의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서민형 ISA의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중도인출 허용은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ISA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형 ISA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확대는 중산층·서민 계층에 추가적인 ISA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중기 비과세 금융상품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보험계약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보다는 ISA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7호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8년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G20 국가 중에서는 9번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호주에 이어 3번째가 된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데 12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의 평균 기간과 같다. 이들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나 걸린 이유는 남북 대치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외환위기 경험, 그리고 미약한 원화 국제화로, 그동안 환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환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등 내수 활성화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등 내수 부문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의 경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환율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 인슈어테크와 보험금청구 간소화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8호

최근 교보생명 및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청구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도는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병원·소비자·보험회사 간 아날로그 방식의 보험금 청구·지급절차를 온라인·모바일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이 취지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보험금청구 간소화는 인슈어테크를 견인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진일보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가상화폐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8호

최근 국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활용, 화폐로서의 인정 여부, 가격거품에 대한 논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이슈

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에 규제당국자의 입장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중국은 거래소 거래금지 및 채굴금지 등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조치를, 일본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등 자유방임적 규제조치를,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입장에 있는 듯하다. 송금 및 결제 효율성 제고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향후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현상을 비합리적인 버블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초기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금융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작년 말까지 가상화폐(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금년 들어 가격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시장(Crypto Market)은 24시간 거래되는 온라인 디지털 시장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국내 가상화폐시장의 거래규모는 국내 금융시장 또는 다른 국가의 가상화폐시장 거래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 가상화폐시장에서 비트코인(Bitcoin)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경제규모 또는 금융발전 수준 등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설명력이 약하다. 반면에 국내 가상화폐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투자자의 투자동기 또는 성향(분산투자동기, 불법자금 회피수단, 투기심리)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파생장해 장해율 산정 관련 대법원판례 및 장해분류표 개정안의 내용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8호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는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되,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통상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및 동일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복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지급률 합산 대상인지, 가장 높은 지급률만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잦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로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의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복수의 파생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급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파생장해의 장해율 산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재정비하였다. 다만 여전히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일부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대형 IT기업의 보험사업 진출과 영향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9호

138

미국 IT기업 아마존은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 버크셔해서웨이와 함께 헬스케어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고,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형 IT회사 텐센트와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온라인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등 최근 대형 IT기업의 보험 관련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회사들의 온라인 보험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의 출현으로 보험산업과 IT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대형 IT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39호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인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은 상

승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0.13% 하락하였다. 이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보험회사의 경쟁 심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일용임금은 4.3% 상승하였다.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5.2%로 확대되고 일용임금 상승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크지 않지만 보험금 원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을 확대시키고 자동차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 역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0호

도로교통국제협약은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2020년 전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독일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현재와 같이 보유자가 책임을 지고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정부기관 요청 시 블랙박스 기록을 제공하고 제3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독일과 법제가 유사한 우리나라도 독일 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과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0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18년 3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규정(Testing Regulation) 개정안 및 보급 규정(Deployment Regulation) 제정안을 최종 확정·공포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규정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 즉 무인상태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제로서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논의되어 온 중요 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ATDR)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 전 30초부터 사고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

록 한 것은 자율주행사고 관련 데이터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위 규정은 2015년 12월 최초 초안이 마련된 이후 2년여에 걸친 공개적 토론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 중인바,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0호

미국의 경우 유통 계약 시 물품 공급자가 충분한 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유통업자들이 유통계약 시 제조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생산자가 보상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유통업자들은 생산자와 물품 구매 계약 시, 생산자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물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제조물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유통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요구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1호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빠른 인구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인구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총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 공동화 및 양극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특화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 통폐합과 관련된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가 앞선 일본을 보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 통폐합이 추진되어 왔다.

## 미니보험 상품의 개요 및 전망

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1호

최근 보험시장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보장 중심

으로 위험보장 범위는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미니보험은 신규 보험상품 개발의 어려움, 소비자 니즈의 변화와 규제환경의 변화로 등장하였다. 보험료가 소액이므로 판매수수료가 적어 전형적인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가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판매수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가 적합하다. 그러나 미니보험이 활성화하려면 가입절차 간소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미니보험은 기존 보험회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신규 참여 보험회사 등이 전문보험회사로 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자연재해 대비와 타조증후군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1호

지진, 태풍 등에 의한 대형 자연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개인과 사회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곤 하였는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혹자는 타조증후군에 빗대어 묘사하였다.

Meyer and Kunreuther(2017)는 자연재해 대비에 있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근시안적 사고나 낙관주의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 자체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자연과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전략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2호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25일 정책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중 4회 이상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리는 1.25~1.50%에서 1.50~1.75%로 0.25%p 인상되었고 금융시장에서 예측하는 연내 미국의 정책금리 4회 인상 확률은 2018년 1월 말 20.6%에서 3월 21일 현재 26.9%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1.5%를 상회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8년 중 미국의 정책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인상될 경우 한·미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를 확대시켜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채권투자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헤지 비용을 증가시켜 해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투자 편입비중(Home-Bias)이 높은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내 보험회사가 환헤지 비용을 관리하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헤지 비용이 아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유로화 국채,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국 우량회사의 아리랑 본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신흥국 정부발행 달러표시 채권 등에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치아보험 시장의 경쟁심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2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하고 있는 치아보험은 충치, 보철, 잇몸질환, 발치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치과치료는 발생 빈도가 높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아보험 수요는 높은 편이다. 정부에서도 높은 치과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 임플란트 보장 등 치과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치아보험은 공적 보험의 제한적인 보장, 소비자의 높은 니즈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우려로 출시되지 못하였으나 2008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최초로 출시한 후 최근 다수의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치아보험은 공적 보험의 제한적인 위험보장 영역을 보험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킨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위험보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회후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다레이션 변화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3호

142

보험회사의 자산다레이션은 2016년 말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7년 하반기에 확대 폭이 감소하였다. 회사별로 보면, 2017년 상반기에는 총 33개사 중 4개사(생명보험 2, 손해보험 2)만이 자산다레이션을 축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증가하여 10개사(생명보험 7, 손해보험 3)가 자산다레이션을 축소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 자산다레이션을 축소한 생명보험회사들은 확대한 회사들에 비해 RBC 비율이 낮고, (보정)부채다레이션이 짧으며 다레이션 갭이 작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자산다레이션을 축소한 회사들은 확대한 회사들에 비해 (보정)부채다레이션이 낮지만, RBC 비율과 다레이션 갭이 유의하게 낮지는 않다.

보험회사는 중·장기적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자산다레이션을 축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자산다레이션 축소 전략은 대부분의 회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험회사는 여력에 비해 큰 폭으로 자산다레이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국내 PEF 산업의 성장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3호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이래 우리나라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 산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PEF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운용자금을 출자함으로써 PEF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자산부채관리(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ALM)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PEF 투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회사의 국내 PEF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국내 PEF 산업의 질적인 미성숙과 더불어 자본규제,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수적 자산운용 전략과 PEF에 대한 성과분석 역량 부족 등이 있다. 하지만 향후 국내 PEF 산업의 질적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국내 PEF 산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업의 평판훼손과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전용식(연구위원)·권오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3호

최근 발생한 국내 증권회사의 배당사고는 487

억 원의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관측되지 않는 평판 및 신뢰도 하락 등 해당 증권회사의 무형자산을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무형자산 리스크는 사이버 리스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무형자산 리스크관리의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IT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전통적인 인수방법 모색과 더불어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상품을 개발할 때에 고객(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이다.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전략은 리스크 요소의 선별 후 위험을 보장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사고 시 대응 및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형자산 리스크관리를 위해 기업은 적극적으로 평판위험 등을 관리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새로운 리스크 유형인 무형자산 리스크 인수 방법을 기업과 협력을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4호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평화정책이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가 정착될 경우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경영성과에 비해 할인된 원인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로 주가 상승과 원화강세, 그리고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 하락이 예상된다. 이 중 원화강세와 CDS 프리미엄 하락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 확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경제협력,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북한 투자위험 보장 방안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금융분쟁 소멸시효 중단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4호

2018년 4월 17일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단기간에 완성되어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금융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용이하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일 이후 신청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분쟁조정이 취하 또는

각하 외 사유로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나아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 조정 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동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4호

보험계약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 목적물의 리스크 정도와 관리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과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고,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고지의무제도의 수동화와 손해보험계약자의 소방법 등 안전법규 준수의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변화의 국제적 흐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5호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등 행위규제 관련 금융감독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시너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해상충 문제도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감독의 기능별·영역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너지를 중시한 통합형 금융감독체계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통합형 금융감독체계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중시한 부분통합형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감독유관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의 세 기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감독유관기관 사이의 협조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김석영(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5호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재에서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해외재보험 출재로 약 9,25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재보험 출재는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해외재보험 출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산업은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5호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및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상품의 주 가입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가입연령 상승과 더불어 상품별, 연령별 가입자 수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연령 상승 원인은 고령인구 비중 확대, 저연령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증가세와 1~2인 가구 비중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회사는 가입연령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노후 건강 및 소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연령층의 보험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을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가입연령

상승은 생명보험회사에 다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마케팅, 리스크 관리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6호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FY2008 금융위기 당시 급상승한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종목별로는 상이한 수준을 보인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해지율이 높은 수준이고 연금보험, 종신보험 순으로 해지율이 낮다.

변액보험의 경우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 변액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계정보험 종목과 비교해 볼 경우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설 해지율은 일반계정과 유사한 수준이나, 변액연금 해지율은 비적격 일반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변액보험 종목별 해지율이 일반계정 보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장기 횡보로 안전자산 회피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 종목별 해지율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성장성 둔화로 보유계약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종목별로 적극적인 해지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보험회사 현금성 자산비중의 하락세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6호

보험회사는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 보유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현금성 자산보유행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대형보험회사의 현금보유비중이 중소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주된 요인들로 해지율이 낮은 보장성상품비중 증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장기자산편입비중 확대 등이 있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급변동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들의 현금보유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블록체인의 발전과 영국 금융감독청의 우려사항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6호

블록체인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분산시켜 저장하는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로 2016 세계경제포럼에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기술로 지목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P2P 보험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토지대장을 블록체

인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등 그 응용분야는 금융을 넘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금융당국(FCA)는 블록체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인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7호

최근 드론의 사용이 사업용, 취미용, 군사용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업용 드론의 경우 사업등록 시에 제3자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사업용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향후 정부는 드론보험이 전용종합보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드론보험이 드론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3자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정보상한도액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과 계약자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가 드론 사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8호

1998년 이후 19년 만에 907억 원의 흑자(2017년 1/4분기)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1년 만인 2018년 1/4분기 483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적자전환의 원인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경쟁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생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증가세가 금리상승으로 확대될 경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과거와 같이 확대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험금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인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경영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투자수단으로서 비금융기업 영구채 현황 및 특징

황인창(연구위원)·홍민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8호

영구채(Perpetual Bond)란 만기(상환일)가 없고 영구히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를 의미하는데, 채

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신종자본증권(또는 하이브리드증권, Hybrid Securities)의 한 종류이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영구채 발행은 2012년에 시작되었고, 2017년까지 44개사가 12조 원(52건)을 발행하였다. 투자수단으로서 영구채는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고금리·투자 다각화 등에서 투자유인이 있지만, 유동성위험·만기불확실위험·파산위험 등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데이터 분석 결과, 2012~2017년까지 발행된 비금융기업 영구채의 평균 발행금리는 4.31%로 국고채 5년물 수익률에 비해 2.14%p 높았다. 하지만 2017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 중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은 채권이 있고, 2018년 조기상환 예정 영구채 발행사 중 일부는 조기상환 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금융기업 영구채는 투자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영구채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및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 가계부채 연착륙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9호

우리나라는 2017년에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부동산 규제 등 정부의 노력과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대출

수요 증가 또는 대출 공급 증가에 의해서 늘어나는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경우 가계부채와 소비 및 금리 간의 관계가 같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는 항상 양(+)으로 동일하다. 이는 수요나 공급 등 어떠한 요인에 의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영국과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강관리 사례: 행동경제학적 접근

변혜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9호

최근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도입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와 건강관리 분야 정책에서의 활용 사례가 두드러진다. 먼저, 영국 BIT는 채무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우편물 형식을 개선함으로써 예비 퇴직자가 연금정보에 접근하도록 독려하거나 연체에 직면한 담보대출 채무자가 은행과 문제를 상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품이 해력 제고 측면에서 영국 BIT와 MAS가 함께 설립한 금융역량실험실은 실험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가격비교사이트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회원혜택 프로그램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건강에 대해 배

우거나 건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행동변화를 독려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고려하고 사전 실험을 통해 정책수단의 효과를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러한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보험계리사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김규동(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49호

국내에서는 보험계리사의 역할 확대로 인해 보험계리사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 보험계리사 제도는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내 시험제도는 보험계리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여, 보험계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계리제도가 표준화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험제도를 선진국 수준과 부합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선진국 계리사 제도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여 2014년과 2018년에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정하였는데, 평가범위 확대와 과목별 합격 인정 등 개정된 시험제도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험가격 자유화,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인슈어테크로 인한 데이터분석 능력 등 보험환경 변화로 보험계리사에 게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포함한 보험계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정성희(연구위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0호

최근 빈번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관련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추세다. 국내 의료기관은 의료배상공제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낮다. 이처럼 일부 의료사고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당수 의료기관의 배상자력 확보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유럽 상당국, 미국)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 지침 등을 통해 강제(일본 등)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중국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0호

중국의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주가지수의 하락은 우리나라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나라 ELS 비중이 71%에 달해 H지수의 하락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는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무역연계성 강화 때문인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 장기화 가능성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주가의 동조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기업부채 조정 등은 중국 주가지수 및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성과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대응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1호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정한 이후 실질적인 유럽연합 탈퇴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보험산업의 경우 연간 수입 보험료 227억 파운드의 35%인 74억 파운드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체제에서 설계된 규제체계를 영국의 규제체제로 흡수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및 EU 금융회사들이 브렉시트 이전과 같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이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역시 이러한 영국정부의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지역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EU의 IFRS 17 채택 경과와 보험회사 준비 현황

황인창(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1호

현재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IFRS 17 채택을 위한 법적 승인 자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제 정책 영향분석을 수행 중이다.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EFRAG이 실시한 사례분석에 의하면, 약 20%의 보험회사만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절반이 넘는 보험회사는 영향평가를 시작하거나 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EFRAG이 수행 중인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유럽 보험회사들은 기술적 해석에 대한 합의 도출, TRG 논의 일정, 도입 준비에 필요한 인적자원 등의 측면에서 현재 예정된 IFRS 17 적용일정을 맞추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유사한 기간 동안 수행된 다른 설문조사

(Deloitte와 SAS)에 의하면, 유럽보험회사들은 IFRS 17 시행일 준수에 낙관한다고 답변하여 유럽 보험회사들의 IFRS 17 도입 준비 상황과 적용의 어려움이 회사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 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추가 관련 법적 쟁점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2호

재산종합보험의 재물손해담보 부분에 관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 등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함께 명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계 및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재산종합보험은 계약자별 맞춤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를 기재할 수 있고, 그 합의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재물보험은 소유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므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의는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소유이익으로 제한되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로 귀결되는데, 이 논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가 없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서 이 쟁점과 동일한 구조의 사안에서 부정설로 보이는 설시를 한 판결이 나와 향후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터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임준현(선임연구위원)·문해정(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2호

지난 8월 1일 미국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후 리라화의 가치 폭락, 터키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터키발 금융위기가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 및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터키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과 국내 고용감소 등 대내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 해약의 증가 및 신계약 증가세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해약의 증가 및 신계약 증가세 둔화가 심화될 경우 대형보험회사는 가용자본에,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세계 및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이탈리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관리 정책 효과

전용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2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발생손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장기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

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인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보험이고, 자동차 보험료 하락의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운행 대수 감소,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마일리지 할인, 온라인 판매 등 경쟁 심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 흑자가 지속되는 원인은 발생손해액 감소인데, 2012년 보험사기 억제 를 위한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가 발생손해액 감소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보험료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확대될 수 있다. 온라인 판매 확대, 블랙박스 장착, 마일리지 할인 등 보험료 할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발생손해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IFRS 17 도입에 따른 사망률 추정 관련 이슈

김세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3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7이 20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들은 사망률의 시가추정(Current Estimate)을 포함하여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험데이터는 장기간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 추세를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사 데이터의 집적



기간이 단기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사 데이터와 접목 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추세를 장기에 걸쳐 반영하는 것은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된 개선추세의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측정에 사용되는 위험률 산출 기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의·식·주 관련 소비자물가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의 특징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3호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특히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의 소비자물가 변동은 체감소득과 서민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25.2%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6.9%)와 의류 및 신발(34.0%)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반면, 주택·수도·전기·연료(26.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5.9%), 교육(22.4%)의 경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의·식·주에 대한 물가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유일한 국가였다. 의·식·주 관련 물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변해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3호

저소득층은 평균 소비자보다 금융의사결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비용도 더 심각하다.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압박하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일상적 결정에 정신적 능력을 소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였는데, 첫째, Bertrand and Morse(2011)는 단기대출자에게 대출기간 중 예상되는 총상환금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핀테크 서비스인 Salary Finance나 Neyber는 근로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직장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출접근성을 높였다. 셋째, 불안정 소득자들이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인출방법 선택이 가능한 저축방식을 제공하는 Even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하였다.

국내 금융정책에도 소비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정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실수를 발생시키는 편향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FTA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시사점

안철경(선임연구위원)·이규성(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4호

2015년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2018. 3)되어 기존 양국 무역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고 양 국가가 모두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점에서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중요하다. 기존 한·중 FTA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최혜국대우조항 미비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중국 국내법의 진입장벽과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입에 한계가 있어 보험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최혜국대우조항 삽입, 내국민대우조항 이행 보장 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보험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4호

현재 우리나라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

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악기상(惡氣象)에 민감한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과거 손해 통계를 토대로 볼 때, 이러한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은 폭염·태풍에 특히 취약하다. 예를 들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12년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을 통해 6,19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올해(2018년) 수도권 폭염 일수는 25.8일로 2012년(11.3일)에 비해 두 배 이상이었다. 최근 진행된 자연재해보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올해 발생한 역대급 폭염으로 올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올해와 같이 고온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정부는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 요령 및 모범 사례 홍보,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 해지율

조영현(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5호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해지환급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DSR이 개인보험 종목별 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해지율(신해지율) 지표를 고안하였다. 전통적인

해지율과 계약금액 대신 계약 건수로 계산한 해지율, 신해지일 등 세가지 해지율 지표와 DSR의 관계를 개인보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해지율이 DSR과 보다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4년간 보험종목별 신해지율을 보면, 변액보험의 신해지율이 가장 먼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저축성보험이, 그 다음으로 보장성보험 신해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최근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해지율 상승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부담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의 지속적인 해지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계약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개요

양승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6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금융기관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준법감시인 위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실질적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임직원의 1% 이상의 준법지원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등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혁신 방안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에 근간을 둔 실질적이고 유효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내부

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 및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i) 금융기관 내부통제 ‘조직 및 체제’의 강화, (ii)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iii) 각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제도 혁신으로 구성하여 각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위 개선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경우 쟁점 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의 재해지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6호

지난 50여 년간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2.3% 증가하였으며, 기상 이변이 심화되면서 피해액의 변동 폭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잦은 태풍·홍수 등으로 인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나 민관 합동으로 재해지도를 작성·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재해 위험 인식 제고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재난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으로 정부 주도로 재해지도를 작성·배포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국가홍수지도 개발 및 국민 재난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보험협회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합동으로 작성된 재해지도는 보험회사의 재해 위험평가 및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인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재해지도의

사회적 공개를 확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미국·EU의 재보험 협상 결과와 시사점

이기형(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6호

2016년부터 재보험 등 재무건전성 보험감독에 대한 협상을 해 온 미국과 EU는 2017년 9월 커버드협정(Covered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018년 10월 현재 양 당사국은 협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향후 5년 이내에 해외 수재사의 100% 담보요건을 폐지하고 유럽연합은 보험회사의 현지설립요건을 폐지해야 하며, 양 당사국은 보험그룹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보험모델법에 재보험담보요건 폐지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 등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보험업계가 면밀한 조사와 대응을 하여 자국 보험회사의 재보험거래가 유리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재보험에 대한 역외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가 가능하도록 상호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계는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 방향과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수재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황현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7호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8년 9월 14일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대표이사의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대한 영향력 제한, (ii)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 강화, (iii)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투명성 강화 및 (iv)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등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사외이사 외부 평가 의무화’, ‘고액 연봉 직원 보수 공시’ 등 그간 논란을 야기한 쟁점들은 최종 발의된 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번 정부 발의 개정안은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윤성훈(선임연구위원)·한성원(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7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18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회사 규모가 비슷하면 상품 포트폴리오도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다.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생명보험회사별로 경쟁력을 갖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회사 규모별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유사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회사별로 명확하며 주력 상품에 특화된 모습을 보인다. 시장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적정 보유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명보험회사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생명보험 회사별로 상품 경쟁력 제고 노력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

김석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7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하여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보장은 제한적이다.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경증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최창희(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8호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사고 피해자는 생산자에게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배상여력을 상실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법원이 가슴기살균제 생산자인 세퓨에게 5억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39개 주)과 중국은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공적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를 통해 제조물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는 생산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판매자 등 다른 주체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이러한 손해배상 체계는 판매자 또는 안전인증 기관이 제품의 안전을 한 단계 더 관리하고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생산자가 손해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호주의 생명보험 수수료 정책과 시사점

안철경(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8호

호주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는 판매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에 따른 판매자와 소비자 간 이해상충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생명보험보수규정(Life Insurance Remuneration Arrangement)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시행하였다. 즉 선취수수료 중심의 보상체제에서 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보다 수수료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적절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년도 보험료의 130%까지 지급하던 선취수수료를 2020년까지 60%로 낮추고, 유지수수료 비중을 갱신보험료의 10%에서 20%로 높였다. 또한 2년 이내 계약 해지 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Clawback)을 도입하여 판매자에게 적어도 2년간 계약유지책임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유지기간 중 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 정책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내에서는 판매수수료를 간접 또는 자율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지급수수료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일부 채널의 경우 시책비 등 고액의 판매수수료가 초기에 지급되나 환수대상이 짧아 특정 회차 이후 해지 시 차익거래 발생이 가능한 실정이다.

##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김석영(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8호

중국정부는 1998년부터 증권,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금융감독 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은행 및 보험회사는 자산규모 및 회사 수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2006년 9월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의 겸업화가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노출되었다. 이에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합으로 중국 금융기관의 은행과 보험업 겸업 시너지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중국정부의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따른 중국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손해보험료 지출 현황과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9호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나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내 기업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한 손해보험료는 6조 8,149억원이며 매출액에 대비하여 0.17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미국 기업의 1.0%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1월 KT 통신구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화재 등의 직접손해 리스크 외에도 영업중단 등의 간접손해 리스크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기준,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의 발생요인을 인식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

임준(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9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과제로는 사이버위험 평가능력 제고와 거대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풀(Pool)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보험의 공급 측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간 협력과 보험회사와 관련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한데, 싱가포르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및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 학계, 통신 보안업체 등이 참여하는 CyRi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에는 세계 최초로 사이버보험 풀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이 성숙되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전까지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중국의 소액간단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59호

최근 중국은 인슈어테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슈어테크의 활용 확대로 보험 상품의 개념이 장기간 동안 전통적인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위험 보장을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구매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구매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존 보험상품과 판매채널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생활 밀착형 상품(이하 ‘소액간단보험’) 개발 및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송보험, 항공지연보험, 교통체증보험, 주차위반딱지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전문회사인 중안보험은 인슈어테크 기업과 활발한 제휴로 젊은 층 대상의 소액간단보험 판매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기술과 보험산업의 융합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시적으로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

며, 인슈어테크 활용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의 필요성

정원석(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0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다른 특성이 있어 소비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일반적인 상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지 않으면 제공받는 정보와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정보 및 권리 강화와 더불어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FRS 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황인창(연구위원) |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제460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당초 IFRS 17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보험회사의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서 공표(2017년 5월)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결정하였다. 이후 기준서 시행일 연기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하였으나, IASB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 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우려사항 및 직면 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IFRS 17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IFRS 17 개정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은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고령화리뷰 포커스

160

###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7호

퇴직연금 운영에는 기업인 사용자, 금융기관인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정책당국 등 많은 이해관계자(수탁자)가 참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와 경영자로 분리된 일반기업에 비해, 퇴직연금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제도를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퇴직연금 이해관계자인 수탁자는 근로자 이익을 위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영재량권을 행사하는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고위험자산의 투자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 및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관련 감시기능 장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선진국의 수탁자 감시기능 장치를 수탁자책임 측면, 수탁자감시 측면, 내부통제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면, 첫째, 미국 등은 수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별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사업자, 컨설턴트, 정책당국까지 확대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고 있다.

둘째,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과 같은 감시인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감시인제도에 의한 제도 운영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미국 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제도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등은 수탁자에게 보고 및 통지의무 등을 엄격히 부여한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 문제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OECD 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수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로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규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련 규정정비와 수탁자의 보고 및 통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8호

최근 국내에서는 모기업이 매칭기여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매칭기여는 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해 본인 납부 수준에 상응하여 정부 또는 고용주가 추가로 보험료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복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직원의 노후생활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을 도입 또는 예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칭기여 방식은 미국, 호주, 일본, 오스트리아, 칠레, 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다. 매칭기여는 기본적으로 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주체에 따라 운영목적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정부주도의 매칭기여제도 운영은 주로 저소득층, 소기업근로자 등 연금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 매칭기여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은 복지혜택 제공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인력수급의 유연성 등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기업형 DC연금에 대한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부담금 납부한도의 50%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401(k) 제도를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매칭기여 방식 적용 이후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10월에 도입된 개인연금의 가입률

이 부진함에 따라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개인연금 매칭기여제도를 도입한 터키의 경우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을 대상으로 한 Carranza et al.(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매칭기여제도 도입이 가입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매칭기여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매칭기여 방식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참여의 경우는 조세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입유인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칭기여 방식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회·경제적 환경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진국들과 다르므로, 퇴직연금 납입액(8.3%) 이상에 대한 매칭기여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방식은 추가적인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므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19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 91명이며, 인출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인출자 수 기준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절차개시(10.1%)의 순으로 나타나 주거 관련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비 등으로 대부분 중도인출되고 있어 연금재원 소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규제수준(인출 범위 및 한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연계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반면, 미국은 근로활동 중단(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 의료비 지출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과 같은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사유 외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한도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가입

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인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비의 경우도 요양에 대한 정의 및 세부요건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과도하게 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중도인출 한도가 엄격하여 중도인출 신청시 제도규약에 근거하여 심사 후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고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은 총소득의 7.5%를 초과한 금액, 최초 주택구입비 및 재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1만 달러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담보대출의 세부규정 미흡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등은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담보대출의 경우 적립금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노후재원 소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등 연금선진국처럼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중도인출 제도 개선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사망,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한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재정비가 요구된다.



##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조용운(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0호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는 장애부위·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 및 장애등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애등급은 삭제되는 것이다.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최근 7년간 280만 건이 판매되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대안적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상품의 보장 중단 및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 방지를 위해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산업이 마련해 놓은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에는 등급이 없다. 등급제 기준 상품의 지급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기존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애분류표와 의학적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 유사

한 형식이므로 보험회사가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자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회사 간 등급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등급을 판정해야 하므로 개정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오승연(연구위원)·안소영(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1호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기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개인의 건강생활습관은 사회의 문화, 규범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큰 직장단위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문화의 확산이 지역단위 인구집단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은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적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직장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행태의 특징,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건강증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직장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질환자 및 고혈압·당뇨의심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근로자에게서 발병빈도가 높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다.

건강행태 측면에서 남성 근로자는 성인 남성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흡연과 고위험음주 비율이 성인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감정노동의 증가로 직무스트레스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현재 건강증진정책의 주요 단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이며, 학교나 사업장의 경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고용노동부의 건강사업은 작업환경 개선 및 그에 관련된 질병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줄이는 건강생활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대상 건강증진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원 마련이 어려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비스 업종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보건의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에서 보다 포괄적인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건강은 보험산업에도 중요하다.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 계층이며, 직장인의 건

강증진은 건강리스크의 증가에 대응한 보험금 지급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복지 차원의 건강생활서비스를 공급할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업과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원인과 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2호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로 인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국민연금의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2017년 45%에서 2028년 40%로 인하될 예정이다. 따라서 준 공적연금의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연금급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아 노후보장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실적배당형 상품

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호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고 수익률의 위험(변동성)이 큰 상품은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위험수준을 같도록 조정한 후 각각에 대해 무위험수익률(CD 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수익률(Sharpe Ratio)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균 연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DC형과 개인형 IRP에서 각각 0.82%p, 0.9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 수익률의 표준편차도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각각 7.42%p, 6.58%p 만큼 실적배당형 상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Sharpe Ratio)을 비교해 보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DC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각각 3배와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선호도가 높은 원인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더 높지만 수익률의 리스크인 편차가 커서 체감수익률은 오히려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안정적이지만 매우 낮으므로 이 상품에 너무 편중될 경우 수익률이 매우 낮게 된다.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고 이에 따른 변동성 증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같이 보

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주식 위주의 투자보다 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며 최저보증이율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 적용될 경우 수익률의 큰 하락을 막을 수 있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등급제를 시행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경(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3호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94%가 단일 금융회사에 의해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즉,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단일 금융회사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등 모든 퇴직연금 업무를 일괄 전담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반면, 해외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개별 서비스 체계 전환에 대응하고자, 다수 일반사용자에게는 무상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로열티(Loyalty)를 높여 나가되 전문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별서비스체계 도입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미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중 52.7%가 개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일괄서비스체계에서 개별서비스체계로의 전환 배경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가입자가 전문화

된 퇴직연금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기금형제도 시행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문영역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중요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별서비스 체계 환경에 대응하고자 해외 금융회사들은 전문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로 유요고객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영역은 연금제도설계 영역, 연금재정평가 영역, 운용상품 제공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영역, 가입자교육 영역 등을 들 수 있다. 즉,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운용상품을 개발하고 특화된 투자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조직 운영, 교육전담회사 설립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한 금융회사가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 모두 취급 가능해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 유인이 미흡하다. 퇴직연금 규제완화 추세, 기금형제도 도입 논의 등을 감안할 때 전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을 선정해 서비스 차별화로 수익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해외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자사의 사업역량에 부합한 핵심 전문서비스 영역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연금제도설계 영역, 운용상품제공 영역, 가입자교육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 영역 등으로 서비스 전문화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입자 니즈 차이를 고려하여 기업규모별(중소기업·대기업), 제도유형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경(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4호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는 제도 가입 후 자산포트폴리오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품 선택폭이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퇴직연금에 접목해 투자자문 및 자산배분을 자동화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Betterment는 401(k)제도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기초한 투자포트폴리오 서비스를 2016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Fidelity, Vanguard 등은 자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을 통해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향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안, 자산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UBS, Wells Fargo 등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인 SigFig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낮은 수수료, 높은 접근성 등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문제, 데이터 보안, 투자손실 시 책임문제 등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과 관계없이 임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할 수 있어, 시장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침체기를 거치며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책임소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금융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활용 범위 및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기금형제도 도입 논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시킨 미국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일반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보다 근로자와 수탁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다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시 가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일반 금융투자자의 자산관리 관점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파악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주 활용대상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교육과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 발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이 미치므로 기존의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으로 확대해 엄격한 책임부여가 필요하다.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 발전 방향

최장훈(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5호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기수지 적자는 2042년에, 소진시기는 2057년으로 3차 재정계산에 비해 각각 2년, 3년이 짧아졌다.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민영보험에서와 동일한 의미의 수지상등이 아닌 사회보험원리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 간 재분배 등 제도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부담의 주체와 수준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기금소진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라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0%로 OECD 평균인 18.4%의 절반 수준임에 반해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평균인 40.6%와 비슷하다. 따라서 낸 돈보다 받는 금액이 높아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기대수명은 더 높아져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기금투자수익률의 전망도 밝지 못해 기금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재정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인상 또는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연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적극적 기금운용, 정부의 재정보조와 사적연금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며 20~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요국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민영보험의 원리와는 다른,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재분배 등을 고려한

부분적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라는 틀에서 노후소득보장이 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와 조화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 부담 및 급여의 조정, 수급개시연령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같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분을 공적연금 적립기금에 지원한다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에게는 공적부분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소득층 이상에게는 사적부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공·사협력의 다층노후소득보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다층 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조용운(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6호

2018년 상반기 20세 이상 성인 남·여의 77.3%가 가입하여 실손의료보험이 범국민적 보험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가 건진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과거 시장 형성 단계에 도입된 체계 그대로

이다. 현재의 체계는 설계사 대리 청구(52.2%), 팩스(22.1%), 직접 방문(13.6%) 등 단순 업무에 청구자의 불편과 시간 소요를 초래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0세 이상 피보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입원 방문한 횟수는 100명당 7회, 외래는 100명당 95회, 약처방은 100명당 98회이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이 입원의 경우 4.1%, 외래 14.6%, 처방약 20.5%에 이른다. 미청구 이유는 90.6%가 금액이 소액이어서, 5.4%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건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수작업으로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편함과 시간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구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하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전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계약이 필요하므로 대중화가 어려울 것이다.

미청구 사유가 보험금이 소액이기 때문이므로 미청구 사례 발생을 방지하면서 전산체계 활용 등 효율적인 청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청구체계의 개선이 있더라도 체계 구축비용, 운용비용, 행정비용 등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효율적이면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한편,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선행되면 전산체계 구축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적립금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강성호(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7호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장수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은퇴 후 준비해야 할 은퇴자산은 현재보다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연금세제 지원금을 환류세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환류세라 함은 현행 연금세제 지원금(소득공제분 및 세액공제분)을 개인의 연금계좌에 재적립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영국과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적립금을 제고하는 환류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사업자가 20% 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Tax Relief)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개인계좌(Pension Pot)에 불입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Kiwi Saver에서도 연금사업자가 매년 1월 1일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세금환급(Tax Credit)을 신청하고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류세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이 연금 적립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후소

득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제고와 함께 재정안정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류세는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도 연금재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환류세제를 사적연금에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적연금 보험료 전부에 대해 환류세제를 적용할 경우 평균 소득자(연간 총급여액 3,383만 원)의 소득 대체율은 1.0%(20년 납부, 20년 수급을 가정)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연간 최대 납부가능 금액인 700만 원을 신규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3.07%(20년 납부, 20년 수급을 가정)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환류세 적용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적연금 적립금을 제고를 위해 해당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환류세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환류세 방식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 재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류소득에 대한 (준)강제화를 조건으로 하므로 선택에 의한 탈퇴(Opt-out)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류건식(선임연구위원)·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포커스

제28호

170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퇴직연금 운용지시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평균 1.96개의 상품만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본 퇴직연금 가입자의 64%는 가입 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변경하고 있으며, 평균 18.7개 상품을 활용해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퇴직연금가입자보다 적극적인 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일본이 44.8%인 반면, 우리나라는 16.7%에 불과해 일본 퇴직연금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운용제도를 평가하면, 먼저 우리나라는 연금운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양적 규제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질적 규제를 채택해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일본은 2001년 이후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같은 선관주의에 입각한 질적 규제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투자상품 선택폭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투자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반면, 일본은 별도의 제도보완을 통해 투자 중심의 가입자교육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은 2011년 확정기여연금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근로자 투자교육 실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투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인 교육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의 투자교육 강화를 위해 기업연금 연합회 등 전문기관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도록 조치하고 사용주의 투자교육 실시여부를 일본 정부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투자손실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운용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대표 상품을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안하는 대표상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효과는 미흡하다. 또한 기업의 적립금 운용담당자의 교육전문성이 부족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 방식을 일본처럼 질적규제로 전환하여 가입자의 자산운용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가입자교육을 이원화하여 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일반교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일본처럼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투자손실로부터 가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 30~49세 근로세대,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 필요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7호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후를 대비한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17년 순자산은 경향가로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동일 시점에서 순자산의 가치를 물가로 할인하여 비교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30~49세 근로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의 동일 연령대와 순자산을 현가로 비교하였다. 재정패널 분석 결과 2015년 5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 순자산은 5년 전 동일연령에 비해 높아졌으나 30~49세 가구주의 경우는 5년 전 동일 연령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2015년 30~49세 가구주의 순자산 가치가 2010년 동일 연령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으므로 노후가 되어도 유사한 차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30~49세 가구주의 가구 순자산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은 과거보다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비금융자산의 감소 규모가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30~49세의 근로세대는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순자산 감소를 줄이기 위한 지출 조정 계획 등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8호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회사의 적립금 운용담당자 개인 의사결정보다는 노사가 합의한 정형화된 자산운용지침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기업의 적립금 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용실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입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 의사결정 체계 특징은 첫째,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에게 노·사 및 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를 사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 목적,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리스크 허용도, 운용성과 평가 등이 제시된 투자정책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미국 등은 수탁자에게 자산운용 관련 수탁자책임범위를 엄격히 부여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장기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가 미흡하고 기업 내 퇴직연금 담당자의 개인판단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투자 의사결정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 건강검진과 국민의 건강성과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8호

172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위험군 발견을 통한 질병 예방과 합병증 예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도별 건강검진 통계를 통해 연령별 유질환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정상판정 비율은 하락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유질환자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연령대의 유질환율은 2011년 대비 10%p 이상 상승하였으며, 비만(BMI 25 이상) 비율도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2.8%p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질환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고 1차 건강검진 이상자 중 50% 정도가 2차 검진을 받고 있다는 것은 건강검진의 사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사후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 특성별로 검진항목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검진이 시행되어야 하며,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검진과 질병예방 노력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사건강보험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검진의 사후체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오승연(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8호

치료에서 예방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환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헬스케어 공급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제도적 측면의 걸림돌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Privacy)에 관한 우려다. 다양한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개인건강기록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축하는 전자건강기록도 개인정보 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통제권을 갖는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개인이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 정책의 경우,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제권을 소비자가 가진다. 승인받은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소비자가 설정한 접근 통제에 따라 개인이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개인연금 지급형태가 기초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19호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완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자 중 소득하위 70% 이고, 지급액은 2018년 2월 기준 단독가구 최대 20만 6,050원(부부가구 33만 5,920원)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된다.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초연금액이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분포를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개인연금의 지급형태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시금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이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기타소득(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뿐 아니라 개인연금과의 관계 등 다양한 제도 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노년기 가구형태와 인지기능

이정택(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0호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성, 저학력, 결혼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 흡연, 운동 등과 같은 건강생활습관, 우울증,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연결망 등이 존재한다. 이들 외에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노년기 가구형태를 들 수 있다. 즉 복잡한 가구형태에 속하는 노인이 단조로운 가구의 노인보다 구성원 간 관계를 통해 지적 자극을 더 받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과 배우자 없는 노인이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부부가구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속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치매진행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증가와 치매 돌봄자들의 간병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공급이 미흡한 편이므로 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한 상품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강성호(연구위원)·김동경(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0호

174

만혼 및 출산계획의 지연과 더불어 각종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 8,892명에서 2017년 기준 20만 8,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하였다. 특히, 난임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7년 29.9%로 크게 늘어났다.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본인 부담률은 2010년 39.0%에서 2017년 35.5%로 개선되었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본 금융청은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난임치료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생명명은 공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난임치료기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일본 최초의 보험상품인 ChouChou를 2016년 10월에 출시하였으며, 도쿄해상도 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직원의 특정 불임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단체보험 중심으로 난임치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금융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0호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의무화조치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의 약 34%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산업별 도입 실태 결과(2016년 기준), 산업 간에 퇴직연금 도입률의 격차가 매우 크고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을 고려한 도입률 제고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동일한 기업규모(예: 중소기업)에 속하더라도 산업별로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달라져 도입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로 퇴직연금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해 원인별 세부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금부담이 주된 미도입 원인인지, 아니면 제도 인식부족이 미도입 원인인지 등을 산업별로 사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의 도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차별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금재원 소실을 우려해 과거 근로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案) 비교

이정택(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1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협의체 구성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세 건(김상희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김종석 의원안 등)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 건의 법안은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절감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료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조정하고 손해를 공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방향성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대상이 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범위 및 의료비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실태조사, 벌칙조항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외에 정액형 의료보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세 법안 모두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갑독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1호

2017년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를 이유로, 장기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새로이 적용하였다.

즉 '17년 4월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다가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금액(합산보험료)이 아니라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하므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인계약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 계약 체결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150만 원)를 초과하게 될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한 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제도의 변경은 가입 상황에 따라 추가납입제도(추납) 활성화의 한계 및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등 연금보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 등에서는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합산보험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몇 개의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IRP)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연금보험과 같은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금액기준(합산보험료)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

김동겸(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2호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수는 2017년 기준 91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이며,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64만 명, 27만 명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의 거주기간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2년 58만 명에서 2016년 87만 명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10.6% 증가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 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6,834건으로 동 기간 중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의 2.4배에 달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방지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체류기간 강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된다. 또한, 외국인의 부정수급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 감독동향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2호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 감독으로 전환하고 있다. 리스크 중심 감독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 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주 등은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절차 및 계획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호주, 영국은 법령에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기초해 수탁기관이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기준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실운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금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소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적립비율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건전성 기준을 대폭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리스크 중심 감독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정을 마련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연금 선진국의 위험자산으로 투자 전환사례와 함의

강성호(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2호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노후소득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운영전략이 안전성 중심에서 위험자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 선진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사적연금 적립금의 투자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사적연금은 최소 금리(0~4.5%)를 보증하는 ‘안전자산 연금상품’에서 무보증 시장수익 상품인 주식과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6년 9월 신확정기여 제도법 도입으로 사적연금의 선호 유형이 고정형 연금에서 변액형연금으로 전환되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사례는 퇴직 후 고령기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상품으로 부상되고 있는 TDF(Target Dated Fund) 투자 상품 개발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이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수급자)에게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가마다 사회경제 및 제도적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운용전략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

오승연(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3호

실내 대기오염은 주로 요리나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고체연료(나무, 석탄 등)에서 발생하며, 그 외 실내 대기오염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과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최근 가정 내 휘발성 화학제품 소비에 의한 대기오염이 차량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올해 초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정용 소비재로부터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차량의 연료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꾸준히 이루어져 차량 배출가에 의한 대기오염이 줄어든 반면, 가정 내 소비재에 대한 규제는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 및 생활주변에서 소비되는 휘발성 화학제품은 사업장과 달리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품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휘발성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함량기준 규제 등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일본 디폴트옵션제도 시행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4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가입자가 자산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적립금을 방치하는 자산운용 무관심계층과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 소극적 운용계층이 증가하여 미래 퇴직급여의 수익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이러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동 법률 시행은 종전에 행정지도로 허용해 오던 디폴트 옵션제도를 법률에서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DC형 제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운용상품에 자동 가입하게 되는 운용 메커니즘이다. 동 제도는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에 자동가입될 경우 운용손실 책임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디폴트 옵션의 주무부처의 승인제, 일정기간 운용미지

시자로 제한, 자동 가입 전 가입자에게 예고기간과 최고기간 안내, 기존 적립금 운용기준을 준용하는 등의 엄격한 상품개발 기준, 가입 후 가입자의 상품 지시변경권 보장, 가입 단계별 알기 쉬운 설명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DC형 제도에서도 가입자의 자산운용 무관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디폴트옵션제도 도입과 엄격한 투자자 보호제도 등의 자산운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류간식(산업연구위원)·김동겸(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5호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법)상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관계자의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원보증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기타재산을 취급하는 모든 자(퇴직연금관계자)가 가입대상이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에 비해 포괄적이다. 퇴직연금 기금 및 기타 재산을 취급하는 퇴직연금 관계자의 사기 또는 부정직 등 범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피해를 담보한다.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적립금 사기 및 유용사건 발생 시 근로자 연금 수

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검토되는 상황하에서 제도의 사전적 보완차원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 퇴직연금에 비해 제도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처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 영국 Master Trust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과 합의

강성호(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5호

영국은 2018년 10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규제의 도입으로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약 25%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Master Trust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신탁형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러한 퇴출 배경에는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 이후 자산과 가입자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적합성 및 자본충분성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이에 영국은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에 관한 내용(Code of Practice)이 포함된 The Pension Schemes Act 2017 (이하 ‘PSA 2017’이라 함)을 도입하게 되었다. 물론 PSA 2017 도입 전에도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 이하 ‘TPR’이라 함)이 Master Trust 제도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탁자 적합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PSA 2017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은 단순히 사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동 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가 운용되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격성, 재무건전성 등을 반영한 엄격한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6호

일본은 2017년부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별도의 간이(簡易) 기업형 퇴직연금 도입, 영세사업장 투자교육 강화, 자산운용 기본방침 설정 및 장기자산 투자의무화, 자산운용관계자의 수탁자책임 강화 등이다.

즉 일본은 기업형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과감히 완화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

도하고자 간이 기업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 또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한 기업연금 연합회 등에 계속투자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2018년 4월부터 확정급여형 자산운용 기본방침 및 정책적 자산구성비율의 설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자산운용관계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최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투자교육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간이 기업형 퇴직연금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자산운용관계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및 장기자산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6호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3.3배 수준이며,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2016년 32.6%로 전체가구(9.3%)에 비해 노인가구가 더 높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공적이전소득을 적용받는 비율이 평균 노인가구

소득원의 66% 이상으로 매우 높아 소득수준이 전체가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노후의 일자리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며 노후소득을 위한 일자리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비중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가구의 빈곤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모바일 건강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과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7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급과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생활관리 모바일 앱 이용은 최근 3년(2014~2017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의 건강앱 종류별 이용현황을 보면, 운동과 체중감량 관련 앱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다. 이용자 스스로 유지와 관리가 쉽지 않은 영양 및 식단관리 앱은 건강앱 중에서 이용 비중이 가장 낮으며, 그마저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개입이 없는 독자적인(Standing-alone) 건강앱의 효과성은 아직



확고하게 입증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앱이나 웨어러블 기기의 장기적 이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은 소비자 개인만의 노력으로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건강앱에 전문가를 매칭시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강 생활서비스 제공이 대중화되고 있지 못하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행위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모바일 건강앱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건강 생활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술입원일수 감소와 보험회사의 대응

김동겸(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7호

의료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국내 수술 입원일수는 2006년 6.55일에서 2016년 5.93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는 난이도 높고 중증질환 수술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일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가수술의 증가로 수술전당 진료비는 2006년 180만 원에서 2016년 275만 원으로,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4.3% 증가하였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를 고려할 때 환자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포괄수가제 등 조기 퇴원을 유도하는 수가정책 시행, 당일수술(Day-Case Surgery)이 가능한 외래수술센터의 확산 등으로 입원일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OECD 국가 중 입원일수가 가장 긴 일본은 의료비적정화 계획 시행 등으로 평균재원일수는 지난 15년(1999~2014년)간 10.4일 단축되었으며, 입원자 중 29%가 4일 이내 퇴원하는 등 단기입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단기입원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니즈 변화에 대응하여 단기입원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일 또는 1일 이하 입원환자 수 비중은 2012년 16.2%에서 2016년 21.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시 의료이용행태 및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미국 퇴직연금의 TDF 활용 현황 및 함의

최장훈(연구위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8호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연금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분산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적립금 운용상품 개수도 평균 2개 미만으로 매우 적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적정 투자수단으로서 퇴직연금은 투자기간의 장기화 및 분산투자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Target Date Fund(TDF)가 퇴직연금(401(k))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비용이 낮은 수동형 TDF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TDF의 수익률 변동성은 다른 투자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미국 퇴직연금에서 TDF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많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기본 옵션으로 TDF를 제공하고,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TDF의 비용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TDF 상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투자 상품을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TDF를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시하였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그 제공이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유사한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치매 국가책임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제28호

일본은 치매환자 수가 2025년 730만 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14.5조 엔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치매환자가 일으킨 물적 손해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치매환자 A씨가 전철회사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하여 감독책임이 있는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판결을 2016년에 내렸기 때문이다. 동 판결에 따라 치매환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에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2017년 11월에 처음으로

# II.

## 2018년 주관 행사

심포지엄

국제심포지엄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고령화포럼

금융정책포럼



# Chapter

## 심포지엄

-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보험상품 변천과 향후 과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전략
-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행사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회 | 주관행사

186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 30(화) 10:00~11:45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전홍규 (제네럴재보험 서울지점  
생명보험대표)
    - 조재훈 (영남대학교 교수)
    -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팀장)

## 개최배경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3천만 명이상이 가입한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갱신보험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갱신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물가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소비자의 의

료보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품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 표**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에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며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 향후 위험이 높은 가입자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포괄적 보장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도 미미하다. 따라서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향후 갱신보험료가 가입자가 감당하기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갱신보험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갱신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물가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세분화, 연간공제금의 도입, 보험료 차등제, 평준보험료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다. 현재의 높은 의료물가 상승률과 매우 긴 보장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한 보완형 민영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그 역할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차등제도 단순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모든 회사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의 공공성은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이 대체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의 수단인 경우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보충적 역할에 한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성 규제보다는 다양한 상품의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중요시 하게 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세분화, 연간공제금의 도입, 보험료 차등제, 평준보험료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형태적으로 공공성이 약하고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은 EU 지침서의 권고대로 상품구조, 가격, 가입심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급여력 등 사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역선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둘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연간공제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로 무사고자나 보험금 미청구자 혹은 소액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 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리 추가 납입하거나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은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타협과 절충을 통해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표준화 및 예비급여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보험회사가 영업 위주의 접근방식보다는 효율 및 준비금 산출 등 계리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보험상품 변천과 향후 과제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2회 | 주관행사

188

## 행사개요

- 일시 : 2018. 2. 23(금) 10:00~11:45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상품 변천과 향후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 : 송영흡 (코리안리재보험 상무)
    -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 이동수 (NH농협생명보험 단장)
    -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 정의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전무)

## 개최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세계 10위 권의 시장으로 발돋움한 것은 수많은 보험상품들이 정부 제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요 보험상품들의 개발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상품개발자의 고민과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발 표

### I. 2000년 이전 상품개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보험상품 개발은 리스크 관리 미흡, 경쟁 부재, 저축성

중심의 획일화된 상품 등의 특징을 지녔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등의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2000년대 초반 요율자유화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규제환경의 변화로 상품개발은 선진화가 요구되었다.



### II. 2000년 이후 주요 상품들

2000년대 이후 주요 보험상품 개발의 특징은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 보험전문성 강화를 통한 상품개발 선진화 달성으로 요약된다.

#### 1. 종신보험

소비자 인식 변화와 보험 전문성 활용을 계기로 생명보험회사들이 개발한 종신보험 상품은 2000년대 초반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었다. 종신보험은 보험소비자 니즈, 이차역마진 리스크 방지를 위해 상품디자인이 다양하게 변화했다.

보험회사는 2000년대 이후 종신보험, CI보험, 간편고지상품, 투자형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왔다.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보험상품은 건강나이 보험상품, Connected 보험상품, 계약자 주문상품 등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CI보험

웰빙라이프 열풍과 건강검진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개발의 필요성으로 개발되었다. CI보험은 2002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CI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 3. 간편고지상품

간편심사보험은 기존 보험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고령층 소비자와 만성질환자 및 유병자 등이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보험수요를 창출하였다. 간편고지상품은 보험소의 계층인 고객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대상담보, 가입연령층, 보험기간의 확대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되었다.

## 4. 투자형 보험

생명보험사는 저금리 시대의 이차역마진을 해소하고 타 금융상품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투자형 상품의 발달과정은 “보증의 강화”와 “수익성의 확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5.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70%가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니즈가 일치하여 2006년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신상품 개발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신기술 개발로 인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향후 상품개발

4차 산업혁명을 불러온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은 개별 효율 산출, 실시간 계약자 리스크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형태와 서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여 건강나이 보험상품, Connected 보험상품, 그리고 Ordered 상품(계약자 주문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의 중요성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내부데이터 집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3회 | 주관행사

190

## 행사개요

- 일시 : 2018. 3. 28(수) 15:00~17:3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F)
- 주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심뇌혈관질환 사례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 제도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남국 (울산의대 교수)
    - 김동진 (교보생명 부장)
    -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 하주식 (금융위원회 과장)

## 개최배경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를 배경으로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만성질

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는 있으나 공급 및 수요 측의 장애요인들로 인해 아직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일본의 규제 불확실성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으로 불리는 비전염성 질환에 따른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증가이다. 한국인의 질병부담 증가 역시 만성질환으로 설명되며, 그 배경에는 비만을 증가와 같은 생활방식의 악화와 관련된다. 그동안의 접근 방식과 같은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투자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정량적 근거로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 도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당뇨 위험군에 대해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연간 17% 정도 당뇨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총편익이 총비용에 비해 2.41배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현재 고도성장기를 거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높아진 생활수준에 걸맞게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대치 또한 높은 상태이다.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만성질환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2주제**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에서 암 사망에 이어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며, 사망률도 높아 높은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2%에 달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 및 발생위험도 관리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DB 자료의 건강검진정보를 통해 개인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Cardiovascular Risk 또는 CV Risk)를 산출한 결과, 혈압, 혈당, 당뇨, 금연, 콜레스테롤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별 조절을 통해 1인당 8만 원에서 17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 비용의 효과적 절감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일본은 사업자가 법령 저촉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그레이존)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신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낮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사업소관기관이 사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 소통함으로써 균형잡힌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본 당국은 질의 회신의 요지를 공개하고 유형화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 저해요인 및 구체적 활성화 방안은 물론,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 대두 가능한 의료행위와의 구분, 건강격차 증대, 소비자 보호 등 문제점과 유의사항 등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건강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제반 쟁점에 대해 학계, 언론계, 헬스케어 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4회 | 주관행사

192

## 행사개요

- 일시 : 2018. 4. 4(수) 10:00~11:45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이필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
    - 제종욱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태현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 개최배경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나 판례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보증연장 서비

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 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통상적 소모 및 마모, 제품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볼 수 있고,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다만 관련 법규상으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CA)의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해당 다루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부담하는 단순 보증서비스의 경우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 제조사·판매사의 단순 보증서비스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



현재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넓게 인정할 것인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 있다. 또한 일본 금융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보증연장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법규의 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서비스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담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되, 주별 입법례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의 경우에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도 많다.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실무에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 범위를 좀 더 넓혀서(예컨대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거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인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증연장 서비스의 운영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해서 법리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행사명 :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심포지엄(KIRI 심포지엄 2018년 제5회) | 주관행사

194

## 행사개요

- 일시 : 2018. 4. 24(화) 15:00~17: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주제
    - 1주제: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 2주제: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윤진호 (금융감독원 팀장)
    -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
    -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팀장)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100세 시대의 도래와 노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과 급여수준,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와 연금화 문제 등을 살펴보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1 주제

국민연금은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35%만 수급하고 수급액은 월 37만 원 수준으로 낮은 상태다. 기초연금 20만 원은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70%에게만 지급되어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퇴직연금도 근로자의 50%만 가입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낮아 사각지대 문제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는 공적 및 사적 측면 모두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기초 보장 강화,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제도 간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초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초연금 외 보충급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신규로 보충급여 제도(소득대체율 5%)를 도입하여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보충급여)를 강화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은 축소하되,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 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총목표소득대체율을 65% 수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40%에서 3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화를 조건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사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실행 시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신 연금화를 위해 연금 세제혜택은 확대하되 일시금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탄력적 세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을 고려할 필요 있다. 이때 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OECD는 목표소득대체율을 약 70%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었다. 현실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 소득대체율이 30~35%(혹은 40%)로 볼 경우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35~40%(혹은 30%) 수준은 사적연금의 목표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적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사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조

속히 시행하여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Opt-Out(임의 탈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무화 시행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즉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제도내실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연령 조정, 연금지급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연금화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을 유도하되,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노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사적연금의 높은 사각지대 문제와 낮은 연금화 문제 등 공사적 연금의 문제와 향후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6회 | 주관행사

196

## 행사개요

- 일시 : 2018. 5. 9(수) 15:00~17:30
- 장소 : 코리안리빌딩 강당(12F)
- 주제 :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제1주제 : 금리인상기조 하에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관리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주제 :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 및 시사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넬토론
    - 좌장 : 오규택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세훈 (상명대학교 교수)
    -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 김석중 (현대해상보험 부문장)
    -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
    - 박종수 (금융감독원 실장)

## 개최배경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새로운 회계

제도(IFRS 9/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심포지엄은 경제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위험 관리, 해외채권 투자, 대출채권 운용 등을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1주제**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 및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 및 규제 환경 변화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리상승은 자산 및 부채듀레이션 갭 축소로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지율의 증가를 통해 이익감소와 유동성압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단기금리 상승 및 중장기금리 하락은 중장기 만기에 자산과 부채 간 현금흐름 익스포저가 집중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새로운 회계제도(IFRS 9/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에 기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산부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투자수익률 제고와 투자위험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된 경우 금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리급등은 보험계약자의 해지를 유발해 보험이익 및 투자이익의 감소 및 유동성 문제를 초래해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금리환경 변화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포트폴리오 상품믹스전략, 단기차입의 허용, 자산듀레이션 확대,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기법 등을 통한 금리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본 발표에서는 해외채권 투자에 대한 환헤지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첫째, 통화 종류에 따라 환노출을 통해 캐리트레이드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헤지보다 부분헤지가 해외채권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환헤지는 해외투자수익률 변동성을 낮춰 전체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위험분산효과를 낮춰 해외채권 편입 유인을 감소시킨다. 셋째, 이러한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의 영향은 투자기간이 5년 이내에서는 환헤지 영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5년 초과 장기투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해외투자 목적·해외채권의 통화종류·기존

투자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 헤지 비용 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환헤지전략이 필요하다.

**제3주제** 본 발표에서는 보험회사 비약관 대출채권 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향후 시행될 회계제도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보험회사들은 비약관 대출채권에서 높은 리스크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익률이 저조하다. 특히, 상당수 손해보험회사들은 비약관 대출채권의 리스크 대비 초과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 비약관 대출채권 투자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약관 대출채권의 위험조정수익률이 낮은 보험회사는 투자 비중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비약관 대출채권의 위험조정수익률이 우수한 보험회사들도 비약관 대출채권 비중이 부채시가평가제도 대응에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금리상승, 해외채권투자, 대출채권운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7회 | 주관행사

198

## 행사개요

- 일시 : 2018. 5. 23(수) 10:00~11:45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태현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개최배경**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의무’라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연간수입보험료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도입으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은 높아졌으나, 개별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과징금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로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기초서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 및 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 46건을 수집·조사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19건;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15건, 기타 4건), 보험금 부당 삭감(9건),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보험계약 부당 해지(4건), 상품 구성 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등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다.

위 사례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i) 법규위반의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과징금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먼저, 과징금 규모는 법규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법규위반의 경중보다는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한 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가 적어 과징금 금액도 적은 경우가 있었고, 이와 반대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관련된 보험계약의 건수가 다수이고 보험료 규모가 커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법규위반의



현행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그 규제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징금 산출 기준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지식비대칭 및 정보비대칭, 보험 관련 민원의 다발성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법규 준수의무 이행 확보라는 규제의 본래적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법치국가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명확성 원칙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중대성과 과징금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은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기초서류는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초서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모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는 과징금에 비하여 부과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고, 부과금액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다라도 기초서류 위반이라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고액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 자체는 당위적인 것이나, 위 규정을 곧바로 제재 근거 규정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최대한 구체화하여야 한다. 기초서류 규정 외에 보험업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다른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세분화작업 및 제재대상행위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너무도 다양한데, 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타당한 과징금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사항과 위반금액 기준을 적용할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재를 합리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준수를 유도하면서도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 및 금융위 담당자의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전략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8회 | 주관행사

200

## 행사개요

- 일시 : 2018. 7. 2(월) 16:00~17:45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전략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창수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은섭 (미래에셋생명보험 본부장)
    - 박천수 (KB증권 본부장)
    - 장이규 (보험개발원 부문장)
    - 진태경 (금융감독원 팀장)

**개최배경** 최근 베트남 보험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WTO 가입을 계기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어 외국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해외진출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주요국과 비교할 때 베트남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방법, 보험상품, 판매구조 및 외국보험회사의 진출경험을 살펴보고 진출전략을 구상해 보는 것은 베트남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베트남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 표** 베트남은 인구규모가 1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15~64세 인구 비중(2015년 기준 70.2%)이 증가 추세에 놓여 있어 경제성장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 및 증권업이 발전하고 있어 보험업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보험산업은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WTO 가입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입이 활발해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중과 성장

베트남은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을 볼 때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한 해외 보험회사는 특화된 상품 및 채널 전략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국 보험회사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보험 관련 문화를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규제를 모니터링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은행 이용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종신 보험은 점유율과 성장률이 매우 낮는데 조상승배 문화, 베트남전 등 때문에 사망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편,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험상품이 대부분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한 해외보험회사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푸르덴셜생명과 메뉴라이프는 국영기업인 바오비엣(BaoViet)에 대한 진입보호 장벽과 영업장벽이 높지 않던 1999년 100% 소유의 현지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사에 적합한 영업전략을 통해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다이이치생명은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7년 현지 국영법인(Bao Mihn)을 100% 지분 인수한 이후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베트남 진출로 아직까지 뚜렷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제도 강화, IFRS 17 도입 등은 보험회사 해외사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험회사가 베트남 보험시장 진출 시, 유·무형자산에 대한 소유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유·무형자산에 대한 소유우위가 부족한 경우 일부직접투자(Joint Venture)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합자회사(Joint Stock) 방식의 경우 유한책임이어서 리스크가 크지 않으나 소유우위, 내부화 우위 확보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가격보다는 기업이미지 및 필요상품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가격경쟁보다는 신상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학력 이외의 기준으로 우수설계사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시장 진입초기에는 베트남의 조상승배 문화와 교육열 등을 반영하여 교육보험을 사망보장과 결합한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기반이 정비된 이후에는 정액형 의료보험, 연금상품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속설계사보다는 파트타임 설계사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잡한 상품에 대한 설계사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보험회사가 베트남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경험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9회 | 주관행사

202

## 행사개요

- 일시 : 2018. 7. 13(금) 16:00~17:45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오창환 (보험개발원 부문장)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들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총인구도 10년 이내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인구가 축소되는 시기에, 특히 보험시장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인구 구조를 본다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1995년 당시의 일본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 보험산업에 매우 유용한 간접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자산가격 폭락 및 버블

경제 붕괴, 금융개혁, 공적보장 축소에도 대응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이에 촉발된 보험 수요 변화에 일본 보험산업이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 표**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다. 1995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는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버블 붕괴 등의 환경 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수요 위축과 보험수요 차별화 및 세분화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시장이 축소되었다. 보험가입률, 가입 규모, 수입보험료 등이 모두 줄어들었다. 둘째, 미혼 및 만혼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가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별화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사망보장 수요에서 여성은 의료보험(민영건강보험), 연금 등 본인보장 수요로, 청년층은 의료보험 등 본인보장 수요로, 중장년 남성은 사망보험 등 가족보장 수요로, 노인층은 연금, 의료보험, 요양보험 등 노후보장 수요로 보험수요가 세분화되었다. 셋째, 재정 부담으로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보장이 줄어들

보험산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수요 변화 및 사회보장 축소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품 개발, 판매채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M&A, 해외 진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들자 개인연금과 의료보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노인인구 증가와 이들의 자산여력으로 노인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가계 금융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다섯째, 경기가 장기간 부진하고, 임금이 감소하며,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보험수요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은 소비자 선호에 맞게 연금과 의료보험 상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상품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채널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약을 통폐합하는 등 상품을 단순화하였다. 정부도 상품 및 가격 규제, 업무영역 및 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일본 보험산업은 시장 축소와 자산가격 저폭 붕괴 등 경영환경 악화로부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M&A 및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후순위채 발행, 주식회사 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고, 해외진출도 본격화하였다. 정부도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했다.

보험산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수요 변화 및 사회보장 축소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생

각된다.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향후 인슈테크, 초고령사회 대응, M&A 또는 해외진출 등이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품 개발, 판매채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M&A, 해외 진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도 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해야 할 것이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해 대응해야 하고, 개별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행사명 :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0회 | 주관행사

204

## 행사개요

- 일시 : 2018. 8. 20(월) 16:00~17:3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김현수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 박희진 (근로복지연구원 박사)
    -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 개최배경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긴 여성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많아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노후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여성의 노후준비실태, 국내외 여성관련 연금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적연금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주제발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령 독신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크게 나타나 향후 여성의 노후빈곤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률, 소득수준 등이 낮고, 노후준비 수단인 연금소득 또한 적어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관련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 여성관련 연금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역할은 미미하다. 한편, 사적연금은 판례를 통해 이혼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분할해 주는 사례가 있을 뿐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의 여성관련 연금정책은 공적연금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진국의 여성관련 공적연금 제도는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육아·출산 크레딧 등이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분할연금은 동거 및 혼인관계 유지 시에도 배우자에게



우리나라 여성관련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을 통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기회 확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과 부부연생연금을 종신연금형태로 제도화,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부여,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할되는 등 광범위한 여성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여성관련 사적연금제도에는 배우자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출산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영국과 호주는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적연금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이나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제도화되고 부부연생연금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되, 수급형태를 종신연금화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가입유인 제고를 통해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재원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줄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조세수입원으로 충당한다면 재정중립성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정년의 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에 대해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여성의 노후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의 노후빈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를 포괄한 연금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행사명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공동심포지엄(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2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보험법학회 공동주최)

206

## 행사개요

- 일시 : 2018. 8. 27(월) 18:30~20:00
- 장소 : 손해보험협회 연수실
- 주제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선정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발표 :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이성남 (목포대학교 교수)
    - 이욱 (현대해상 실장)
    - 정찬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제종욱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개최배경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별도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소개·안내 행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에 대해 제안하였다.

## 발 표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 행위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행위 등이 모집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광고비 지급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모집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행위의 실질에 따라 모집 대가인지 광고 대가인지를 구분하여 광고 대가라면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인 소개나 추천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에서 2015년에 금융청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잠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가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모집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법규, 감독당국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핵심 유형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안해본다.

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모집 관련 행위로 보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라는 것이다. 금융청 감독지침에 의하면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지 않고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신는 것에 불과한 행위가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에서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당국(FCA)의 지침(PERG, Chapter 5)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규제대상행위로서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보험 모집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실질, 규제 필요성,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험 모집에 해당하는 핵심 유형으로서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밖에 입법론으로서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 소개비 지급 관련 별도의 명시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에 있어 모집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모집 개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에는 보험 상품이나 채널 등의 특성에 따라 모집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행사명 :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4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황희의원실 공동주최)

208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0. 2(화) 15:00~17:4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황희 (국회의원)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제1주제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 토론 : 김남석 (현대자동차 부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팀장)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박은경 (경성대학교 교수)  
임주혁 (보험개발원 실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개최배경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제1주제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 중 매우 초기 단계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레벨3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과 달리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일어나는 형태이고, 2020년 레벨3 상용화가 개시되더라도 향후 수십 년간 도로에서 다양한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가 혼재되어 운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 배상책임법제와 보험제도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현행 배상책임법체계 및 보험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매우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자율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크게 강화할 계획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사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해외 민영건강보험 운영 사례를 보면 공보험과 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므로, 우리나라는 공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공·사건강보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주행차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특성 및 주요국의 법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적어도 레벨3 단계에서는 현행 법체계 및 보험제도에 따라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배상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제2주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 보험은 일반자동차보험과 자율주

행차 보험으로 구분될 것이나, 자율주행차보험 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수동모드와 자동모드가 모두 가능하고, 수시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특성에 따른 요율의 종류도 현행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전자의 특성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요율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축소되고, 차량별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킹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킹으로 인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통제권이 침해된 경우, 해킹 발생 원인에 따라 제작사, 소유자 및 정부가 각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책임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구상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고 및 운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수집된 정보의 보관 및 사고이해당사자의 정보 접근 보장 등이 필요하며, 사고원인 조사기구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자동차업계, 보험업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정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김승범 팀장은, 오늘 토론회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레벨3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공평한 손해 배분을 위해 레벨3에서는 현행법제를 적용하되,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료 인상 등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행사

행사명 :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5회) | 주관행사

210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0. 4(목) 14:30~19:30
- 장소 : 조선폰호텔 그랜드볼룸
- 주제 :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축하 및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표
- 환영사 및 발표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사회자 : 1부 : 이태열 (보험연구원 부원장)  
2부 : 김정란 (아나운서)
  - 발표 :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참석 : 국회 및 감독당국 인사, 보험 유관기관장, 보험산업 CEO, 유관 학회장, 기자, 보험연구원 OB 및 임직원 등 약 180명

블럼 오픈식, 기념 공연 등 축하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1부행사** 세미나 발표는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 원인을 진단하고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극복 과제를 제시하였다.

##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요**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1부는 세미나 발표 및 기조 연설, 2부는 기념동영상, 엠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로는 ① 수익성관리 ② 보유계약 관리 ③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선정하였고,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로는 ① 성장성 제고 ② 수익성 제고 ③ 소비자 신뢰 제고로 선정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용식 동향분석실장은 현재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인구구조 변화 추세와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의 도입, 판매수수료 체제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2019년과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2019년 경영 및 정책과제로는 ① 수익성 관리 ② 보유계약 관리 ③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선정하였고, 중장기 경영 및 정책과제로는 ① 성장성 제고 ② 수익성 제고 ③ 소비자 신뢰 제고로 선정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세미나 발표에 이어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이 ‘금융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하자’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2부행사**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보험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개원 1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하고 ‘10년을 함께한 KIRI, 미래를 준비합니다.’라는 주제의 엠블럼 오픈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가수 박기영의 기념 공연과 만찬의 순서로 행사가 이어졌다.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행사명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8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

212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1. 19(월) 14:30~17:1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 주제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 축사 : 민병두 (국회 정부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 제1주제 : 금융소비자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방안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주제 :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위원)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  
최준우 (금융위원회 국장)

## 개최배경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소  
비자·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금융위  
원회도 최근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  
국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국회에 장기간 계류  
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통과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1주제** 본 발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  
전적 보호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지 및 설명의무  
강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고지하고 설명해 주는 의무를 명확하  
게 부과해야 하고, 비교정보제공을 강화하되 비교정  
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 측면에서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목표 소비  
자 그룹을 세분화해야 하며, 리스크에 따라 적합성 원  
칙의 적용 강도가 차이가 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  
하며, 공정경쟁시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수립  
하고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행위 규제는 규  
정 중심의 최소요건으로 규율하는 데에서 벗어나  
상황에 적합한 Best Practice로 규율하는 방  
식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사전적 보호를 위해서는 공시나 설명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합성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소비자그룹 세분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후적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취약한 소비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민사소송 중심의 제도보다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금융분쟁조정 권한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과학적 통찰 및 실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크게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크게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 신설·강화되는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를 살펴보면 분쟁조정보다는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일본의 사후구제 제도는 분쟁조정제,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중심의 제도보다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금융 분쟁조정 권한과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정부는 규제, 정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효과는 종종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거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적 금융소비자 정책이 철저하게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수정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여러 국가에서는 공공정책 입안, 도입 등에 있어서 행동과학적 통찰과 실험을 사용하고 있다. 본 발표는 행동경제학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 퇴직연금 가입 독려 이메일 넛지, 두 번째 사례는 우편 안내문 수정을 통해 담보대출 장기 연체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한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신용카드 비교사이트 수정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도운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실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회사 내 성과평가체계 개선, 내년 1/4분기에 마련될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Chapter 2

# 국제심포지엄

-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
-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행사명 :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3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삼성화재 공동주최)

216

## 행사개요

- 일시 : 2018. 9. 7(금) 14:00~18:00
- 장소 : 삼성금융캠퍼스 비전홀(B2F)
- 주제 :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공·사 협력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세션 1. 장기요양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 협력 방안
  - 제1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과제 - 장기요양 10년의 성과, 향후 10년의 과제 (윤종률 한림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요양시설·요양병원 역할 정립 방안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

- 좌장 : 차홍봉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회장)
- 토론 : 강진호 (통라이프그린케어 본부장)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 ○ 세션 2. 일본 개호산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 요인 및 시사점

- 제3주제 : 일본 개호 비즈니스의 동향과 시사점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제4주제 : 동경해상의 개호사업 추진 사례 (신타로 후루이치 동경해상)
- 제5주제 : 일본 개호사업의 수익성 확보 방안 (켄타 타구치 노무라종합연구소 헬스케어산업그룹)

### ○ 토론

- 좌장 : 선우덕 (동아대학교 교수)
- 토론 :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최상태 (50플러스코리아 연구소장)



##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초고령자의 증가로 장기요양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순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한다. 민간영역인 보험산업도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니어케어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순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한다. 또한 민간영역인 보험산업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1주제** 고령사회에서 건강관리의 목표는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건강노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포괄적 노인보건의료 연계체계가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핵심지향은 자립지원, 소비자 중심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장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급대상자를 확대해야하며, 장기요양 질 평가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어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보건·복지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노인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내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자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수요자 대상으로 중간단계 거주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제2주제** 노인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제도적으로 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혼재되어 있어 입원이 장기화되는 사회적 입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신설된 이래 요양병원의 기관 수 및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격하고, 사회적 입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입원료 체감 적용기

간 세분화 및 일당 정액의 비율로 감산하여 감산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치료·재활·요양까지 의료수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은 전문재활분야를 선택하여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2000년 일본 공적 개호보험 도입 이후 개호 비즈니스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생산업으로 정부가 개호보수조정을 할 때마다 기업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고객이 결국 사망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차별화는 어렵다.

M&A가 비교적 활발하여 타 업종에서 신규 진출이 많으며, 일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개호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그동안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개호와 관련한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정책을 시설입소에서 재택간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라는 재택간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재택 간병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본 개호 비즈니스에 비취볼 때 우리나라 장기요양 산업을 복지 또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볼 것인지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증진을 통해 자립생활 강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노인 돌봄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 시설 및 재가 급여 등으로 흡수됨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고, 요양병원은 제도적으로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혼재되어 사회적입원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재택 간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4주제** 공적 개호 보험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개호1부터 최종 중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개호7까지 7단계 상태로 구분하여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동경해상의 자회사인 베티 라이프 서비스(BLS)는 도쿄 등 4개 도시에서 40개의 ‘미즈타마 개호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개호 필요자의 상황에 맞추어 케어플랜을 작성해주고 신체개호나 생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LS는 개호 스테이션뿐 아니라 ㉠개호1 이상이 주로 입주하는 고가격대의 개호형 거주시설인 힐테모어 휴테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BLS는 2016년부터 주택 건설 대기업 ‘다이와 하우스’ 그룹으로부터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용 주택 2개의 프론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개호 노

하우를 활용하여 개호 관련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공적 의료보험 급여액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민간 개호서비스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향후 과제이다.

**제5주제** 개호 서비스는 크게 주거형과 재가형이 존재하며, 업계 1위인 니치이학관은 재가형 중심으로, 2위인 베셋네는 주거형 중심으로, 손보재팬닛폰코아는 M&A를 통해 대형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애드파트너스, Triple W 그리고 Care Design Institute는 ICT·개호 로봇·AI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케어서비스는 M&A 및 사업체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어론티어 클럽과 니치이학관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SOMPO 홀딩스와 ㈜아이알소액단기보험은 정기 식사 배달 및 가사 대행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호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정비하는 등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관 내 개호 요양 병상 등을 개호 의료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 개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 외 서비스 활용 가이드북을 국가 차원에서 제작함

일본의 개호 사업은 고령화로 급속히 성장한 신생산업으로서 정부의 간병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현재 보험업종 및 타업종에서도 진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방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 사업을 볼 때 향후 자택 간병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한국의 시니어케어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으로써 헬스케어 산업 등 보험 이외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시니어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 사업자의 역할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또한 일본 개호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경해상 등 일본 내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

행사명 :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 제11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6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220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0. 17(수) 09:00~16:00

□ 장소 : 조선히텔 그랜드볼룸(1F)

□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

□ 발표 및 토론

○ 개막사 :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 환영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축사 : 윤석현 (금융감독원 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기조연설 : 리오 웡 (RGA 아시아본부장)

○ 세션 1. 국내외 판매채널의 변화

- 제1주제 : 인슈어테크와 중국 보험산업의  
변화 (튀젠룽 동양생명 대표)

- 제2주제 : 인슈어테크와 미국 보험산업  
변화 (로렌 리앙 메트라이프  
미국 본사 부사장)

- 제3주제 : 국내 온라인보험의 변화상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

○ 토론 1

- 좌장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리오 웡 (RGA 아시아본부장)  
로렌 리앙 (메트라이프 미국 본사  
부사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션 2. 국내 판매채널의 변화와 미래

- 제4주제 :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원석 보험연  
구원 연구위원)

- 제5주제 :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 (홍영호 금융감독원  
팀장)

○ 토론 2

- 좌장 :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 토론 : 권대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

홍영호 (금융감독원 팀장)

장만영 (국회 보험과 미래포럼 공동  
대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배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  
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모습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었다. 보험산업 역시 소비자를 비  
롯한 여러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더욱 편리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변화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보험산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지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활용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험산업과 감독당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객 접점에 있는 판매채널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보험산업의 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감독당국 역시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직접 만나는 판매채널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금융 및 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상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오늘 모인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이 자리가 보험산업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는 작은 나침반과 같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주제** 2018년 현재 중국 보험회사는 170개이며, 보험료 규모는 세계 2위, 보험밀도(세계 46위)와 보험침투도(세계 36위)는 지속적인 발전 추세에 있다. 중국은 크게 인터넷보험 시대(태생기-탐색기-발전기-폭발성장기)와 인슈어테크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평안 산하 자회사 14개사는 28일 만에 매출

액 1,060억 달러를 기록, 2017년 7월 안면인식, AI 예측서비스, AI 의사결정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2013년 10월 알리바바·텐센트·핑안보험이 중국 최초의 인터넷보험회사인 중안보험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2018년 기준 중국 내 전문 인터넷보험회사는 4개사(모두 손해보험사)이다. 2035년에 인공지능의 보험산업 활용비율은 75%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험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종사자 및 임직원은 플랫폼 및 데이터 관련 운영 능력과 실행력을 구비하고 설계사는 보험전문성과 종합적인 재무상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첨단기술을 파악하고 적시에 리스크를 발견 및 조치하고, 신사업 영역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제2주제** 기술혁신(Innovation)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고, 이와 유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없다. 따라서 신뢰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 활용이 중요하다. 기술혁신과 관련해 루먼랩(LumenLab)은 첫째, 회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위한 문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루먼랩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인재를 모으고 협업하

우리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인공지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한정된 영역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인간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다.

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혁신의 대상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탐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처리 프로세스가 느린 경우, 이를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 등을 연구한다. 이를 찾아내고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루먼랩의 주요 과제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낸 다음, 실험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결책을 다시 설계한 후 다시 실험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제3주제** 2013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출범 이후 여러 형태의 온라인 유통 채널이 등장했다. 현재 온라인보험은 주로 ① 기존 보험사가 인터넷 사업부를 운영하거나, ② 온라인전업보험사 설립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각 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단독 또는 결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CM·모바일·TM·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CM 채널의 판매 비중 증가 등 온라인보험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채널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예상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IFRS 17 도입,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다

양한 변화현상에 직면해 있으며, 이후 성공적인 업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회사는 대면채널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보험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핀테크 채널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형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토론 1** 좌장 김현수 교수는 10년 후 비대면채널은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비대면채널의 발전의 장벽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년 후 국내 비대면채널의 발전은 판매 관행 및 소비자 성향 파악, 푸시(Push) 마케팅이 어느 정도 변화될 것인지에 따라 자발적 보험수요 확산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비대면채널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리오 웡 RGA 아시아본부장은 비대면채널 상품을 팔거나 살 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정시점이 되면 비대면채널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로렌 리앙 메트라이프 부사장은 비대면채널 발전에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은 이를 추진하는 회사의 문화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규제당국, 재보험사 등 보험업권 간의 교육과 소통을 통해 질문이 많아져야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토론에서 정유신 교수는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인공지능은 상당 기간 동안 인간을 돕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므로 인간 일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4주제**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판매방식 변화가 산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보다 편리한 고객응대와 정확한 상품 추천, 그리고 질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첫째, 인공지능의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전략을 토대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적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과 연산능력은 외부에서 도입이 가능하지만 목적에 맞는 데이터는 외부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인공지능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고객접점은 몰(Mall)과 같은 형태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마존과 같은 사이버공간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로 게임의 규칙을 바꿔 놓을 경쟁자가 나타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제5주제** 소비자 관점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생활습관, 운동정보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유인이 발생하는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한 신용등급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설명의무 측면에서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판매채널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변화에 대응한 향후 보험채널의 감독방향은 선제적 대응과 원칙 중심의 감독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칙 중심의 감독의 경우 적정규제의 확립과 책임을 수반하는 금융혁신 유도 그리고 전략적 인내를 함께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론 2** 좌장 정유신 교수는 토론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이에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 및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은 상당기간 동안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로써 사용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홍영호 금융감독원 팀장은 보험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험산업이 처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권대영 메리츠화재 전무는 현업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행사명 :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국제심포지엄(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7회) | 주관행사

224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1. 5.(월) 14:00~17:4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F)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제1주제: 보험의 사이버-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권옥진 St. John's 대학 교수)
  - 제2주제: 일본의 사이버보험 (도이 다케시 MS & AD 시니어 매니저)
  - 제3주제: 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 및 발전전략 (프랭크 왕 Gen Re China 언더라이팅 디렉터)
  - 제4주제: 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좌장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강용석 (SK인포섹 본부장)
    - 김성호 (보험개발원 부문장)
    - 김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L)
    - 삼현우 (한양대학교 교수)



### 개최배경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물과 사물 간에, 그리고 사물과 사람 간에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로 진화해 감에 따라 사이버 위험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물리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가 물리적 피해를 수반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져 빠른 피해복구가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복구 재원조달을 위한 위험재무 수단의 하나로 사이버보험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사이버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 일본, 중국의 전문가를 초

현재는 모든 유형의 사이버위험을 하나의 상품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고 원인 및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하여 주요국의 경험에 대해 듣고, 국내 보험산업 및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제1주제**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위험은 가능성 측면에서는 3위, 영향 측면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로이즈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전 세계 피해규모가 약 3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사이버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고당 평균 피해비용은 약 784만 달러였던 반면, 중간값은 약 25만 달러로 평균값과 중간값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단독형 사이버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약 5억 달러에서 2015년 약 1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

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금융 분야가 29%, 유통 분야가 21%, 의료 분야가 15%를 기록하였다.

주요 기관들은 향후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PWC는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는 모든 유형의 사이버위험을 하나의 상품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고 원인 및 피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주제**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약 105억 엔이던 사이버보험 수입보험료가 2017년 약 188억 엔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보험회사 MS & AD는 여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사이버보험 가입 기업에 사이버위험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위험 평가와 관련해서는 Verizon, Bitsight 등과 협력하고 있고, 사이버위험 통제 및 예방과 관련해서는 NEC, Insights 등과 협력하고 있다.

MS & AD의 경우 사이버보험 가입 단계에서 기업의 사이버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Verizon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

국내 사이버보험 정책은 의무보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향후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재보험폴이나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입 기업의 사이버위험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Bitsight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에 걸쳐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12.3%만이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10.4%는 가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77.3%는 가입 계획조차 없었다.

사이버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5.6%가 사이버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제3주제** 중국의 경우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되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법률이다. 사이버보안법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칙,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규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2017년 8월 16일에는 사이버 법원이 설립되었는데, 주요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소송을 처리하는 것이다. 접수 건수는 2018년 10월까지 약 1만 1,600건 정도 되었으며, 건당 평균 처리 시간은 약 28분 정도 되었다. 중국의 경우 다양한 개인 사이버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개인은행계좌손실보험은 도용, 불법복

제, 협박 등에 의해 계좌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가상재물보험은 도용 및 해킹에 의해 온라인게임의 계정, 장비, 아이템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중국태평양손해보험회사가 중국온라인게임서비스연맹과 함께 개발하였다.

모바일결제보상보험은 모바일결제서비스 이용자 대상 보험으로 모바일 바이러스에 의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한다. 중안보험회사와 바이두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제4주제** 기업성 사이버보험 시장의 경우 수요 측면 및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낮은 보험 가입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보험 도입 및 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향후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화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재보험폴이나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판매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잠재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주로 특약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단독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다.

토론자들은 현행 사이버보험 시장의 공급 측면 문제해결 방안으로 보험산업 내에서의 협력과 보험산업과 다른 산업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단독형의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모색해야 하는데, 부가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로, 그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피해 발생 시 보상과 관련된 위험재무 전략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토론** 토론자들은 현행 사이버보험 시장의 공급 측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험산업 내에서의 협력과 보험산업과 다른 산업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아직 사이버위험 평가 및

손해사정 프로세스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개별회사 차원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평가 및 데이터 집적 등과 관련해서는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 및 대응 프로세스 등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는데, 보험산업에서 위험평가 툴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협력 관련 해외사례로는 싱가포르의 CyRim 프로젝트를 추천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사이버위험관리 능력제고 및 사이버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행사명 :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9회) | 주관행사

228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1. 30(금) 14:00~17:4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F)
- 주제 :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세션 1. Solvency II와 유럽보험시장
    - 제1주제 :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변화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Solvency II 관련 주요 쟁점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세션 2. 사례분석: 유럽보험회사의 Solvency II 대응전략
    - 제3주제 : Solvency II가 자산운용업에 주는 시사점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 제4주제 : Solvency II 하에서의 자본 관리 (Rötger Franz Societe Generale Director)
  - 패널토론
    - 좌장 :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 : 고인철 (DB손해보험 상무)
    -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 박종수 (금융감독원 실장)
    - 신상만 (교보생명보험 전무)



## 개최배경

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여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보험시장에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K-ICS를 준비 중인 국내 보험시장에는 2016년부터 Solvency II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보험시장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K-ICS의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Solvency II와 유럽 보험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제1주제

유럽연합은 198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영향에 대응하면서 보험시장 통합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공통기준인 Solvency II 도입을 추진하였다. 1994년 유럽연합은 자유로운 보험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상품 및 가격에 대한 감독개입을 금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新지급여력제도인 K-ICS의 2022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K-ICS는 IAS ICS를 벤치마킹하여 세부내용이 EU Solvency II와 유사하다. 따라서 K-ICS를 준비 중인 국내 보험시장에는 2016년부터 Solvency II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보험시장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특히 유럽보험시장의 40여 년에 걸친 저금리 경험과 Solvency II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였다. 동시에 지속되는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회계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Solvency II 작업을 추진하였다.

유럽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취했지만, 주로 신계약에만 적용되어 저금리 대응에 제한적이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Solvency II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회사 자본변동성을 줄이고 시장안정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였다.

유럽 보험시장의 Solvency II는 시장경쟁의 인프라이자 수십 년간 누적된 저금리 영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지급여력제도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경쟁에 개선 여지가 많은 국내 보험시장에 Solvency II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Solvency II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시행되었다.

Solvency II 프로젝트 초기에는 보험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현행 제도 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3축 체계(3-pillar)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의 전반

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후 신제도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수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lvency II의 수용가능성과 경기순응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경과조치 등 다양한 추가조치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 보기 위해, Solvency II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제·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될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EU의 Solvency II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Solvency II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3주제** 보험회사는 주요 기관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시장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Solvency II는 자산운용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에 시장위험을 산출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및 분석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Solvency II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기구의 위험 측정 시 편입자산 분해 활용 유인을 제공한다. 유럽 보험회사는 직접 편입자산분해 방식과 간접 편입자산분해 방



식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유럽 보험회사의 Solvency II 보고의 상당 부분은 자산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들도 Solvency II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및 분석역량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Solvency II 실행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데이터 확보 및 정형화된 서식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제4주제** Solvency II 시행 이후 보험회사 자본관리에 있어 Solvency II 비율, RT1·T2·T3 규모 제한, 요구자본이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Solvency II 시행 이후 대부분의 유럽 보험회사는 경과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 Solvency II를 기반으로 자본관리를 수행한다.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위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위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위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장위험 중에서도 금리 위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상당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유계약(Back Book)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Generali Leben, Generali Belgium, AXA Life Europe, AEGON Ireland 등은 Back Book 판매를 실시하였다.

Solvency II 이전에는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Solvency II 시행 이후 새로운 자본확충 활동이 감소하였다. 2015년 이전에 인정한 가용자본을 Solvency II 시행 이후에도 인정함에 따라 2014~2015년 동안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후 2015~2017년 동안 T2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이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일부 RT1이 발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자본확충 활동이 누그러졌다. 구체적인 자본관리 사례로 AXA의 XL 인수가 있다. AXA는 기존 생명·저축 보험 중심의 사업에서 손해보험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손해보험사인 XL을 인수하였다. AXA는 XL 인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위험분산을 통한 위험프로파일(Risk Profile)을 개선시켰다.

**토론** 이날 토론에서 K-ICS 도입과 향후 정책방향,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Chapter

# 3

##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정량적 위험 관리 선진화 방안 제시
  - 생애주기모형 및 보험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 채권의 리스크 관리와 시계열 분석
- 시장 정보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재보험 전략 이론

## 정량적 위험 관리 선진화 방안 제시 - 생애주기모형 및 보험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행사명 : 제2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32

### 행사개요

- 일시 : 2018. 8. 13(월) 16:30~17:5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정량적 위험 관리 선진화 방안 제시-  
생애주기모형 및 보험상품 개발을 중  
심으로
- 발표 : 박세영 (Loughborough University 교수)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  
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  
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본 포럼에서는 생애주기 동안 개  
인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불확  
실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량  
적 위험 관리의 틀을 제시하고, 일반균형모형에  
서의 경제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보험상  
품 개발 및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  
출된 개인은 자신의 효용이 최대화되는 방식으로 의  
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한다(Utility Maximization  
Framework).

자본주의하에서 개인들은 소비만이 아닌 부에  
의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개인이 소비뿐만 아니라 자산을 가

지고 있으면 효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형하에서는 기존 경제학과 재무학에  
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limited stock market  
participation puzzle, moderate equity holdings  
puzzle, low consumption high savings puzzle  
등)을 설명할 수 있고, 소득위험에 노출된 개인을 위  
한 재무설계 틀을 제공한다.

본 발표에서 제시된 새로운 모형은 고용보험 제  
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사적영역에서의  
고용보험 공급은 실업위험의 도덕적 해이 유인  
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낮은 경우, 즉 비자발적 실업위험  
의 경우, 사적영역에서 고용보험 공급이 가능하  
다고 본다. 예를 들어,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여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이 감소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적영역  
에서의 고용보험 공급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  
소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 채권의 리스크 관리와 시계열 분석

행사명 : 제2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33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2. 3(월) 16:30~17:5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채권의 리스크 관리와 시계열 분석
- 발표 : 김항주 (SQS Investments 대표이사)

##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

본 포럼에서는 미국 Agency MBS 시장 현황과 모델링을 통한 채권의 리스크 관리 및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통계예측모델에 대해 소개하였다.

투자다각화 측면에서 미국 Agency MBS는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MBS 시장은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다음으로 큰 규모(2014년 말 기준 8조 7,290억 달러)를 차지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 1.9~2.2% 정도로 낮은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채보다 약 100bp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정부 또는 산하기관의 보증에 의해 신용위험이 매우 낮으며, CMO/Strip 등 구조화 상품들의 출현으로 다양한 전략투자가 가능하다. 유동성 측면에서 거래량이 전체 채권시장의 27%를 차지하여 국

채(67%)에 이어 2위이고, TBA(MBS에 대한 일종의 선물 거래) 시장을 통해 유동성 확충이 가능하다.

하지만 MBS는 조기상환 위험, 유동성 위험, 스프레드 위험 등 일반채권과는 구분되는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진다. 특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정해진 일정 외에도 원하는 시점에 채무자가 조기상환(Prepayment)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이 예측과 다를 수 있다(조기상환 위험). 따라서 MBS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예측모델을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AR(1) 기준 적어도 50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의 집약(Aggregation) 수준을 예측하고자 하는 수준과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월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예측 결과를 분기 또는 연으로 확장할 수 없다.

# 시장 정보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재보험 전략 이론

행사명 : 제27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234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2. 13(목) 16:30~17:5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시장 정보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한  
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재보험 전략  
이론(Mark-to-Market Reinsurance  
and Portfolio Selection: Implication  
for Information Quality)
- 발표 : 장봉규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본 포럼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자산배분과 재보험을 통합한 모형을 소개하였다. 특히 통합 모형에서 보험회사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을 고려한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Expansion), 후퇴(Recession) 등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말한다. 한국의 금융시장의 경우 확장기는 평균 31개월 지속되고, 후퇴기는 18개월 지속된다. 보험회사는 주요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경기순

환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과거 AIG, Yamato Life 등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보험회사들은 경기 후퇴기에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경기순환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배분 및 재보험전략을 실행한다.

본 모형에서는 보험회사가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경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하는 경우, 어떠한 자산배분 및 재보험 전략이 최적인지 설명한다. 이 때 최적 전략이란 보험회사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모형으로부터 얻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험회사가 경기순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Myopic) 경기순응적(Pro-cyclical) 자산배분 및 재보험전략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경기순환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산배분 및 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경기순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자산배분 및 재보험 전략에 활용하는 보험회사는 거의 없다. 향후 본 모형과 같은 통합모형을 통해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Chapter

# 4

## 고령화포럼

- 예방의학의 이해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이슈



# 예방의학의 이해

행사명 : 2018년 제1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236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 17(수) 16:00~18: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예방의학의 이해
- 발표 : 임준 (가천대학교 교수)

## 개최배경

만성질환 위험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세미나는 예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를 초빙하여 건강증진의 개념과 예방정책의 변천과정,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예방정책의 방향 및 개선 과제 등을 공유하였다.

## 주제발표

건강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단순히 의학적 모형에 기초하여 정의하기보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건강의 통합적' 관점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강의 통합적 관점은 건강을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인적 자원/역량을 강조하는 긍정적 개념(WHO, 1984)으로 보고 건강달성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적 및 환경적 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개인

생활양식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보다는 공중보건정책이 건강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 위험요인은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르며, 특히 건강생활 습관 및 환경 문제는 누적적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생애과정별 건강증진이 필요하다.

현대의 보건의료 방향은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역포괄케어)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역사회의학에 기초한 접근인 '일차보건의료'의 개념이 등장하여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정책에 있어 계량적 의미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보건의료시장의 특성(소비자의 지식 결여, 예측불가능한 수요 발생, 외부효과, 의료공급 독점,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상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접근 시 질병예방과 통합적 관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 건강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효과 평가를 통해야 하며, 비용-편익 분석은 정책 결정에 있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공중보건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펀딩 제공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이슈

행사명 : 2018년 제2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237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1. 27(화) 14:00~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이슈
- 발표 :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팀장)

##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 발표 이후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포럼을 통해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재정불균형 원인, 보험료/급여수준의 개선 방향, 선진국의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듣고 자유로이 토론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 주제발표

공적연금의 실제 가입률은 전체 인구 대비 약 55%를 차지하여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4명(17.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가운데 지역가입자 비중 감소·사업장가입자 비중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증가 추세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는 많지만 수급률은 목표치인 70% 미만이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하고 있으나, 감액수

급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수급률은 85.4%를 차지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급여액이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평균 가입기간이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정노후소득보장문제와 함께 재정안정화 논의가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기 재정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4차 재정추계(2018) 결과, 최고 적립기는 2041년이고(1,778조 원),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재정안정화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마지막 공적연금 제도 간 관계의 명확화이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초래 원인은 수지불균형 및 저출산·고령화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소득보장과 적정부담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Chapter

# 5

## 금융정책포럼

- 보험소비자행동 분석: 이콘(Eco)과 휴먼(Human)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보험산업의 과제

# 보험소비자행동 분석: 이콘(Econ)과 휴먼(Human)

행사명 : 2018년 제1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240

## 행사개요

- 일시 : 2018. 2. 26(목) 14:00~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소비자행동 분석: 이콘(Eco)과 휴먼(Human)
- 발표 및 토론
  - 발표 :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개최배경

행동경제학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는데, 심리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정책 분야에도 도입되었다. 이에 본 포럼은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보험소비자 행동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상품 또는 정책수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주제발표

행동경제학은 전통적 경제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전통적 경제학 모형은 경제주체를 철저히 이성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반

면, 행동경제학은 인간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리적·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도 실수를 함을 지적한다. 행동경제학은 실험을 자주 사용하는데, 실험은 제도, 유인체계 등을 제어할 수 있고, 무작위 집단화를 통해 자기선택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발표에서는 금융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세우거나, 행동경제학에 기초를 둔 정책 또는 상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먼저 Chetty et al.(2014)은 덴마크의 퇴직연금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정책보다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저축이 늘어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였으며, Goldin et al.(2017)은 미국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가입에 있어서 이메일 네티지와 같은 가벼운 개입이 은퇴저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목표에 따라 강조하는 기여율의 수준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Bhargava et al.(2017)은 미국 건강보험 소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의 주요 원인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임을 보였으며, 보험상품 메뉴의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우려는 설계가 소비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제도 도입 전·후의 면밀한 실험과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보험산업의 과제

행사명 : 2018년 제2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241

## 행사개요

- 일시 : 2018. 12. 5(수) 16:30~17:50
- 장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보험산업의 과제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토론 :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특히 보험업에 대한 적용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발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 피해구제)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❶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❷ (판매행위 규제) 적합성 원칙, 설명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 방지 노력을 기울

이도록 한다.

- ❸ (사후구제 강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부여되면 그에 대하여 책임도 같이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소비자 권리에 비해 책임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방적이고 온정적인 보호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으며, 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약화시키며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받을 유인을 없앨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억제하므로 업무행위 감독은 감독당국이 원칙을 제시하면 업계가 그에 따라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비교공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전 권역을 아우르는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의 공정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





# III.

## 2019년 주요 연구계획

신성장 모색

경영 효율성 제고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소비자 신뢰 확보



## 해외 주요국 생명보험상품 체계 분석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 변화된 경제, 사회, 규제 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해외 선진 보험시장이 환경변화 및 수요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상품 또는 해외제도를 국내 보험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시장의 전체적인 상품의 체계 또는 시장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 생명보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구조, 상품 비중 등을 분석하여 해외 선진 생명보험시장이 변화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하였는지를 전체적인 상품의 체계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 생명보험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찾고자 한다.

## 질병 및 사망원인 변화와 보험의 역할

조용운(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 질병과 사망 보장을 주요 보험상품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과 사망원인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계약자 주문형 보험상품(특정 원인 사망 보장 선택) 등을 개발하기 위해 원인별 사망률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생활습관 커넥티드 보험상품(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상품) 등을 위해 질병별 위험률의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질병과 사망원인 변화를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질병과 사망 보장보험의 발전 및 보험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생활양식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가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 등으로 질병과 사망의 양상은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보험사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총 보험수요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8.4%로, 보험수요의 주체로서 기업의 비중이 2000년(24.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자료에의 접근이 어려워, 가계와 달리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업환경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수준·기업수준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및 특성, 그리고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특성·결정요인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보험회사의 기업대상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 저금리, 시장성숙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양적 성장에서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 중심으로 성장 전략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회복세와 국내 금리상승, IFRS 17, IFRS 9 등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산업의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 금리, 제도의 변화가 해약률, 자산운용포트폴리오 및 운용이익률,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등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보험료를 전망하고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배상책임의 현황 및 과제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주요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화되어 있으며, 국내 주요 전문직업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강성호(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 과정에서 질병 및 장수리스크 증가로 고령층의 장기요양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친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간병보험 등 민영 서비스는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진료비 증가 등에 따른 재원 문제로 공적 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사적서비스의 역할 제고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에 해외의 공·사적 장기요양보험 협력방안 및 민영 장기요양보험 상품 개발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간병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회사의 예방서비스 활성화

김규동(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의 역할은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리스크 재무(Risk Finance)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사전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해외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역할은 기술의 발달과 인슈어테크의 적용으로 인해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사고예방 서비스 현황 및 관련 규제 조사와 국내 보험산업과의 비교를 통한 보험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도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본 연구는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인도 보험시장을 조사하고 인도 보험시장 진출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도 보험시장의 현황과 규제 및 감독체계를 인도 국내회사, 외국계 보험회사와 합작 보험회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해외 보험회사가 인도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회사가 인도시장 진출 시 당면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 및 전략을 소개하여 국내 보험회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도 보험시장 조사와 해외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국내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이를 유지하여 인도 보험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경영 효율성 제고

# 2

###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전략

김석영(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 위험분산의 목적으로 재보험을 활용하고 있으나 재보험 비용이 발생한다. 감독당국은 재보험 수지 역조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회사들에게 보유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보유확대는 사고 발생 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험대비 효과와 재보험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재보험 출재전략 비교 분석과 이론적 재보험 최적 출재율을 모색하여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에게 합리적인 재보험 출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 Liability-driven Investment)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2021년 이후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감독회계제도가 원가중심적이고 정태적인 현행 방식에서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동태적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대차대조표 모형을 통해 LDI 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직접판매 채널의 규제와 운영전략

정원석(연구위원) | 보고서

2000년대 이후 채널이 다변화되었고 이는 보험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전속설계사 채널의 규모와 보험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상관관계가 컸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한 명도 없는 A 보험회사가 독보적인 자기자본이익률 1위를 달리고 있고, 중소 생명보험회사가 초회보험료 1위를 하고 있다. 이는 전속설계사 이외의 채널 활용이 보험회사의 유효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판매 채널의 등장은 보험회사의 보험판매 전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미 많은 보험회사가 전화 및 온라인 판매채널을 구축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판매채널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규제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의 보험가입 특성 및 생명보험회사 마케팅 전략

최장훈(연구위원) | 보고서

생명보험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생명보험계약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4%에 이르고 개인별 보험가입률도 96.7%에 달한다.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실적(신계약 건수)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2006년 28,191,096건에서 2016년 16,551,00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명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입특성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소비자의 연령, 소득 및 자산, 직업,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유무 등의 상태가 다양한 종류의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제안서는 현세대와 인터넷/모바일 세대인 다음 세대의 보험가입 성향 및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퇴직연금 요구자본 제도 도입과 경영전략

김세중(연구위원) | 보고서

신지급여력제도(K-ICS)하에서 신용위험과 시장 위험에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반영되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2017년 5월부터 RBC제도에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채가 많은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시이율 하향 조정, 원리금보장형 비중 축소, 위험 전가 등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 요구자본 부담이 증가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위험관리 전략을 해외사례 등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건전성 제고 등 제도 선진화

### 보험산업과 예금보험: 확정형 목표기금을 중심으로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은행 예금에 맞춰 설계되어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보험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효율성 및 적합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금 조성 방식으로 사전 적립을 기반으로 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요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있다. 사전 적립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을 적시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정 목표기금액과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과도한 기금적립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차등보험요율제는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평가방식의 적합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의 기금조성 방식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방안

임준(연구위원) | 보고서

주요국의 경우에는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경우 계약자가 일정 부분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약이전 조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과거 IMF 위기 당시 부실 보험회사 퇴출 과정에서 퇴출 보험회사의 계약을 계약자의 손실 분담 없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부실 보험회사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는 계약이전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계약이전 조건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보험그룹 규제체계 연구

김해식(연구위원) | 보고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작업이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의 다국적 보험그룹(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AIG)로 구체화되고 있다. IAIS는 2018년 7월에 ComFrame 초안을 공표하고 2019년 10월경에 공식 채택하는 일정을 제시하면서 ComFrame의 보험 자본건전성기준 2차 초안(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version 2.0)도 2018년에 함께 공표한 바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ICS는 이미 보험회사 건전성제도 선진화 작업에 중요한 준거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등과 관련하여 ComFrame 규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mFrame 및 ICS의 공개초안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감독, 특히 건전성감독 설계 및 적용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공제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최창희(연구위원) | 보고서

현재 유사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기관은 100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공식적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공제에서 부실 발생 시, 조합원들 또는 관련 기업(개인)들이 연쇄부도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관된 관리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공제별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세부사항(기관운영, 회계, 공시 등)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가격 산정 등의 감독체계가 보험 관련 법령과는 차이가 있으며, 공제기관별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공제조합에 대한 현황 파악,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한 공제기관의 회계 투명성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 보고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제 및 의무보험제도는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 체계를 검토하고,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관련 각국의 법령 및 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의무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소비자 신뢰 확보

254

### 암보험 약관의 해석 :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여 왔다. 암보험 약관의 경우 의학적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 기준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기존의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들을 검토 및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 및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다수의 분쟁을 유발한 또는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약관 조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2년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래 현재까지 보호 수준이나 감독체계에 대한 이견 등으로 통과되지 않고는 있으나, 금융감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규제차익 없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전 금융권역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통합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나, 통합규제 방식하에서는 권역별 상품 및 영업환경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컨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상품 범위 확대 등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정방안이 연구·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정안 중 보험회사의 영업 및 민원처리 등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쟁점 조항을 선별하고, 각 쟁점별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하는 등 심층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업 발전 목적상 균형잡힌 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상절차를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고를 처리 중이며, 가/피해 운전자를 대리하여 합의절충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조기 합의와 이 과정에서 지급되는 향후치료비, 미수선 치료비 등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고 민원 증가, 법률위반 리스크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향후치료비와 미수선 치료비 지급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지, 지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민원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회사의 법률위반 리스크는 커질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과실상계, 합의, 보험금 지급의 과정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요국과 비교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 보험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 분석

조영현(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 위험보장, 정보 수집·분석·전파, 저축수단 제공, 자본공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Socio-economic)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종합적 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해 각 경로별로 분석을 시도하며, 보험산업의 기여에 관한 주요 지표들이 경제 주요 변수(성장률, 국민소득, 사회보장지출,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국제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특징적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 및 합리적인 산업정책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IV.

## 2018년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고령화리뷰  
각종 대외 연구 활동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18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 제목                                                                                                                      | 저자                      |
|-----------------------------------|-------------------------------------------------------------------------------------------------------------------------|-------------------------|
| 보험금융연구<br>제29권 제1호<br>(2018년 2월)  | 보험사 신뢰, 미디어 노출, 심리요인이 상해보험의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 이찬희, 김호일                |
|                                   | IFRS 17의 계약자행동을 반영한 금리연동형보험의 GMSB 비용 분석                                                                                 | 오창수, 김수은                |
|                                   | 고유변동성과 기대수익률의 횡단면 관계 검증: Carhart(1997) 4요인 모형을 중심으로                                                                     | 옥영경, 김정무                |
|                                   | 제목                                                                                                                      | 저자                      |
| 보험금융연구<br>제29권 제2호<br>(2018년 5월)  | 무수익여신 상승률의 결정요인과 실물 경제로의 전달 효과                                                                                          | 이인로, 이웅기                |
|                                   | Markov 전환율을 활용한 자영업자 생애근로유형별 연금소득대체율 추정                                                                                 | 강성호, 류건식                |
|                                   | Corporate Cash Holdings and the Effect of Chaebol Affiliated on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Evidence from Korea | 전홍민                     |
|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신규공모주 저가발행 차이는 존재하는가?                                                                                   | 송치승                     |
|                                   | 제목                                                                                                                      | 저자                      |
| 보험금융연구<br>제29권 제3호<br>(2018년 8월)  |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 정세창, 안철경                |
|                                   |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 정원석                     |
|                                   | IFRS 17 보험부채의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 오세경, 오창수, 박소정, 최시열, 박기남 |
|                                   | 보험투자자의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우민철, 김지현                |
|                                   | 제목                                                                                                                      | 저자                      |
| 보험금융연구<br>제29권 제4호<br>(2018년 11월) | 생명보험사의 채널다각화가 신계약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경희, 안철경                |
|                                   | 제3보험의 해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오창수, 권나연                |
|                                   | 국제회계기준(IFRS17)하에서의 사망률 위험조정 평가                                                                                          | 박규서, 김세중                |
|                                   |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한 보험고객과 설계사의 관계설정이 보험구매에 미치는 영향                                                                              | 박복희, 전희주                |

##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 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금융·보험 관련 환경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KIRI 리포트』,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제공하고 있다.

『KIRI 리포트』는 격주로 발간되는 웹 저널로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까지 총 460호가 발표되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 과거 『KIRI 위클리』가 『KIRI 리포트』로 개편되었으며, 그동안 주간 발간되던 것이 격주 발간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KIRI 리포트』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포커스, 이슈 분석, 해외 학술연구 분석, 글로벌 이슈, 금융시장 주요지표로 구성된다. 포커스는 경제, 금융, 보험산업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 이슈 분석은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핵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한다. 2017년 2월부터 발간된 해외 학술연구 분석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세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학문적 근거를 모색하여 보험산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슈는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한편, 1년 동안 발표된 『KIRI 리포트』를 집적하여 매년 1회 『KIRI 리포트 모음집』도 발간하고 있다.

『보험동향』은 분기별로 연 4회 발간되며,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 가을호부터 그동안 제공되던 테마진단은 폐지되었다. 경제금융 동향은 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국내보험시장 동향은 보험회사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계하여 수입(원수)보험료, 구성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성과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이사항 및 추세 변화 원인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해외보험시장 동향은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보험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의 분기별 경영성과, 수입(원수)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시장점유율, 자산운용 수익률, 판매채널 등을 간략히 분석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 변화와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한 보험시장의 변화 추세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수입(원수)보험료, 수익과 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수요 변화, 보험 가입 행태, 보험산업 주요 이슈 등의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권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결과 데이터와 통계치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감독 당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일부는 보험 관련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조사 결과를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 활용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분석 자료로 재 활용하고 있다.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해 2018년 5월 시행되었으며,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추출된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총 2,440명(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1:1 개별 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보험 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본조사에는 보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 채널 및 이유와 관련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에는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노후생활준비 실태,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종신보험 연금 전환 의향이 포함되었다.

| 연도    | 주요 이슈                                                                                                       |
|-------|-------------------------------------------------------------------------------------------------------------|
| 2001년 |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
| 2002년 |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
| 2003년 |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
| 2004년 |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
| 2005년 |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존속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
| 2006년 |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
| 2007년 |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
| 2008년 |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
| 2009년 |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
| 2010년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 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 자산관리서비스, 대출 관련)              |
| 2011년 |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
| 2012년 |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
| 2013년 | 방카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
| 2014년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보험, 은퇴자산 선택행위,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은퇴 이후 소득원,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 |
| 2015년 |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노후소득 등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
| 2016년 |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
| 2017년 |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연성보험사기                                                            |
| 2018년 | 기술발전에 대한 반응,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노후생활준비 실태(연금, 종신보험)                                            |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8)

## 4. 고령화리뷰

사회안전망연구실이 주관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는 『KIRI 고령화리뷰』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현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사적 부문의 역할에 대해 시사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관련 통계, 정책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소개하고 있다.

『KIRI 고령화리뷰』는 과거 연간보고서로 발간되었던 것을 반기별로 발간하다가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월간지 형태로 개편하였다. 『KIRI 고령화리뷰』는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는 포커스, 전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슈 분석,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다루는 국내 동향/해외 동향, 고령화와 관련된 각종 핵심 지표들을 업데이트하는 고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령화 지표는 관련 지표들을 인구 및 복지재정, 노동·빈곤 및 노후소득, 건강 등 3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문제를 포함하여 연금 및 건강보험 이슈에 대해 공적·사적 부문 간 균형있게 다루면서 발간되는 정간물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KIRI 고령화리뷰』의 차별성과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다.

## 5. 각종 대외 연구 활동

### 5.1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보험학회, “2018년 정기총회 및 창립 54주년 기념학술대회”

#####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보험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8. 5. 15(금) 13:3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사회 :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1 : 소비자보호와 불완전판매(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권오광 (교보생명 전문위원), 김진원 (ING생명 상무),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윤정 (현대해상 상무),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 장원재 (메리츠화재 전무), 조연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표)



## 한국연금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연금학회
- 일시 및 장소 : 2018. 5. 17(목) 13:30,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601호 강의실
- 춘계학술대회 자유주제 제1세션(16:00)
- 사회 :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
- 자유주제 제1세션 발표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실태 및 과제  
(류간식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위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지철원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구위원)



## 국회 정부위원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 행사 내용

- 주최 : 국회 정부위원회 전재수 의원실·제윤경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일시 및 장소 : 2018. 9. 12(수) 10:2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세션2 : 인슈어테크 현황과 과제(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구태언 (레드벨벳벤처스 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화재보험협회·한국리스크관리협회, “반복되는 대형 화재와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행사 내용

- 주최 : 화재보험협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18. 5. 15(화) 14:00,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
- 좌장 : 류근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발표1 : 반복되는 대형화재의 시사점과 위험관리 개선방안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선임연구위원)
- 발표2 : 화재 안전관리와 보험요율연계 강화방안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3 : 화재리스크 보험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이필수 메리츠화재 상무)
- 토론 :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김성호 (보험개발원 부문장, 상무),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팀장, 상무)



## 5.2 작업반, 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보험판매채널 건전성 제고방안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                  | 작업반 명 / 주최                       | 참여자           |
|------------------|----------------------------------|---------------|
|                  |                                  |               |
| 각종 T/F           | 실손유관기관 임원 협의체 작업반 / 손해보험협회       | 이태열, 강성호, 이정택 |
|                  | 자본규제개선 작업반 / 금융위원회               | 전용식           |
|                  | 실손보험 반사이익추정관련 연구기관 작업반 / 한국개발연구원 | 이태열, 이정택, 김동겸 |
|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작업반 / 손해보험협회          | 김세중           |
|                  | 금융그룹 통합감독간담회 / 금융위원회             | 김해식           |
|                  | 보험판매채널 건전성 제고방안 작업반 / 금융위원회      | 정원석           |
|                  |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작업반 / 금융위원회         | 변혜원           |
|                  | 퇴직연금 운용, 자산관리 관행개선 작업반 / 금융감독원   | 최장훈           |
|                  | 손해사정 제도개선 관련 작업반 / 금융위원회         | 정성희           |
|                  | IFRS 17 적용지원 작업반 / 회계기준원         | 조영현           |
|                  | 암보험 약관개선 작업반 / 금융감독원             | 양승현           |
|                  | 남북교류 활성화 관련 업계 작업반 / 손해보험협회      | 정성희           |
|                  | 소액단기보험사 도입방안 작업반 / 금융위원회         | 정성희           |
|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총괄 작업반 / 금융위원회  | 김해식, 황인창      |
|                  | 보험산업 감독혁신 작업반 / 금융감독원            | 안철경           |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작업반 / 금융위원회     | 김해식           |
|                  | 금융소비자, 금융교육 작업반 / 금융위원회          | 변혜원           |
|                  |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작업반 / 금융위원회  | 김석영           |
| 회의/<br>자문/<br>포럼 | 작업반 명 / 주최                       | 참여자           |
|                  |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 김석영           |
|                  | 2018년 금융감독자문회의 / 금융감독원           | 안철경           |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자문 / 금융보안원 | 황인창           |
|                  | 리스크관리학회지 부편집위원장 / 한국리스크학회        | 조재린           |
|                  | 보험상품위원회 생보분과위원회 / 생명보험협회         | 황현아           |
|                  | 보험조사협회의 / 금융위원회                  | 변혜원           |
|                  | 보험상품위원회 / 금융위원회                  | 조용운           |
|                  | 채권정리위원회 / 국토교통부                  | 황현아           |
|                  | 경쟁도 평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임준, 오승연       |
|                  | 경제적 가정 자문 그룹 / 보험개발원             | 황인창           |
|                  | 의료행위 범위 관련 민간합동법령해석위원회 / 보건복지부   | 양승현           |
|                  |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연금분과위원회 / 통합재정추계위원회    | 강성호           |

## 6.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6.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18년 보험연구원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8년에 11회를 맞이하고 있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포함하여 총 4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시니어케어 활성화 및 공·사 협력’을 주제로 한 KIRI 심포지엄 2018년 제13회는 삼성화재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2018년 9월 7일에 개최되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개최한 제11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2018년 10월 17일에 개최되었다. 보험연구원 단독으로 개최한 KIRI 국제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을 주제로 2018년 11월 5일에,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2018년 11월 30일에 개최되었다.

| 시니어케어 활성화 및 공·사 협력                        |                                                 |                                   |
|-------------------------------------------|-------------------------------------------------|-----------------------------------|
| 2018년 제13회<br>심포지엄<br>(2018년 9월 7일)       | 소주제                                             | 발표자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br>- 장기요양 10년의 성과, 향후 10년의 과제 | 윤종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
|                                           | 요양시설·요양병원 현황과 역할 정립 방안                          |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 일본 개호 비즈니스의 동향과 시사점                             |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                                           | 동경해상의 장기요양사업 추진 사례<br>- 민간의 역할                  | Shintarou Furuichi (동경해상 개인상품업무부) |
|                                           | 일본 개호사업의 수익성 확보 방안                              | Kenta Taguchi (노무라종합연구소 헬스케어산업그룹) |
| 4차 산업혁명 시대, 판매채널과 보험산업의 변화                |                                                 |                                   |
| 제11회<br>국제보험산업<br>심포지엄<br>(2018년 10월 17일) | 소주제                                             | 발표자                               |
|                                           | 인슈어테크와 중국 보험산업 변화                               | 뤼젠룽 (동양생명 대표)                     |
|                                           | 인슈어테크와 미국 보험산업 변화                               | 로렌 리앙 (메트라이프 미국 본사 루먼랩 부사장)       |
|                                           | 국내 온라인보험의 변화상                                   |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                 |
|                                           |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 홍영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장)          |

|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                             |                                                             |
|------------------------------------|-----------------------------|-------------------------------------------------------------|
| 2018년<br>국제심포지엄<br>(2018년 11월 5일)  | 소주제                         | 발표자                                                         |
|                                    | 보험의 사이버-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 권옥진 (St. John's 대학 교수)                                      |
|                                    | 일본의 사이버보험                   | 도이 다케시 (MS&AD InterRisk Research & Consulting, Inc 시니어 매니저) |
|                                    | 중국의 사이버보험 시장현황 및 발전전략       | 프랭크 왕 (Gen Re China 언더라이팅 디렉터)                              |
|                                    | 한국의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         |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                                                             |
| 2018년<br>국제심포지엄<br>(2018년 11월 30일) | 소주제                         | 발표자                                                         |
|                                    |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변화 |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 Solvency II 관련 주요 쟁점        |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 Solvency II 하에서의 자산운용       |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
|                                    | Solvency II 하에서의 자본관리       | Rötger Franz (Societe Generale Director)                    |

## 6.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와 관련된 일련의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 대한민국 OECD 대표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보험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8년 6월의 제101차 OECD 보험회의까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8년에는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시장중심의 보험 및 사적 연금 시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손해보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보험 역할 및 재보험 시장의 위험관리, 사이버 리스크 보험,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장수위험 완화를 위한 대안, 금융교육의 표준안 제정, 감독과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6월 회의에서 한국 보험시장의 현황과 IFRS 17 도입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준비 관련 이슈들을, 2018년 12월 회의에서는 한국 보험시장의 향후 전망 및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 이슈들을 정부를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



의 현황과 주요이슈에 대해서 주요국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7. 보험·금융 도서 정보 제공

266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eGen Touch」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8년 12월 말 현재 단행본 25,000여 권, 정기간행물 1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 V.

##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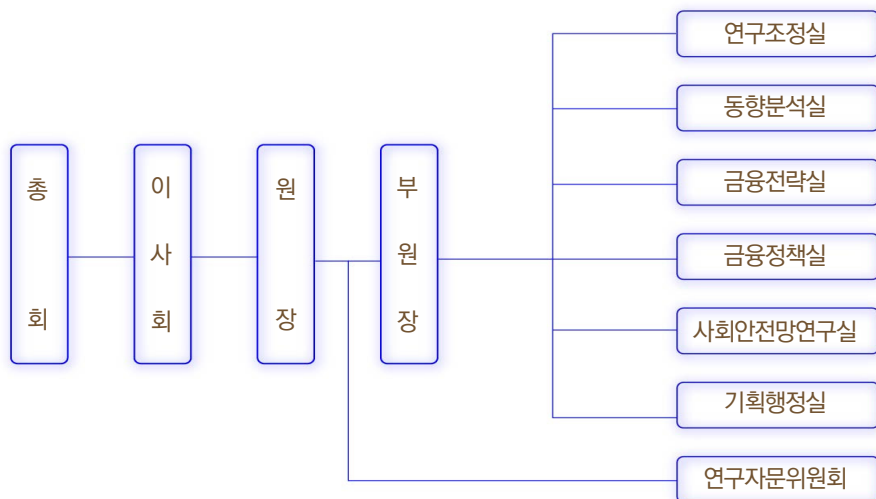
4대 한기정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 보험연구원<br>주요 연혁 | 일자        | 주요 내용                    |
|----------------|-----------|--------------------------|
|                | 1995년 9월  | 보험연구소 설치                 |
|                | 1996년 9월  |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
|                | 1999년 9월  |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
|                | 2004년 7월  |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
|                | 2006년 1월  |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
|                | 2007년 12월 |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
|                | 2008년 2월  |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
|                | 2009년 2월  |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
|                | 2010년 4월  |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
|                | 2010년 11월 |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
|                | 2013년 4월  |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
|                | 2016년 4월  |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

###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3.1 조직도



####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18년에는 2018년 1월 1차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2018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8년 연구자문위원회는 2019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18년 11월에 개최되었다.

## 4. 임직원 현황

(2018. 12월 말 현재)

| 원장 | 연구직  |     |      | 행정원 | 초빙연구위원 | 임시직원 | 합계 |
|----|------|-----|------|-----|--------|------|----|
|    | 연구위원 | 연구원 | 연구조원 |     |        |      |    |
| 1  | 28   | 23  | 4    | 8   | 2      | 5    | 71 |

##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
| 한기정 | 원장 |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 박사 |

### 부원장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궐위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연구분야           |
|-----|-----|------------------------------|----------------|
| 이태열 | 부원장 |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

### 연구조정실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연구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업무분야        |
|-----|-------|---------------------------|-------------|
| 조재권 | 실장    |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 연구조정 업무 총괄  |
| 김선아 | 감사/부장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감사, 연구행정 업무 |
| 장동식 | 수석연구원 |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 박사과정 수료       | 행사 업무       |
| 최원  | 선임연구원 |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홍보, 전산 업무   |
| 이수정 | 인턴    | 명지대학교 철학 학사               | 사무보조 업무     |

## 동향분석실

-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 국내 보험회사 재무분석
-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 금융 및 경제관련 주요통계의 집적관리
-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 보험 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연구분야                 |
|-----|-------|----------------------------------------|----------------------|
| 전용식 | 실장    |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
| 조영현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
| 이승준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
| 김세중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금융보험, 연금             |
| 김진억 | 수석담당역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재무관리                 |
| 권오경 |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 회계                   |
| 이혜은 | 연구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재무관리                 |
| 김유미 |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보험계리                 |
| 최예린 |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 글로벌리스트, 보험           |
| 서명희 | 연구조원  |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 금융전략실

-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 일반생명보험 관련 연구
- |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연구
-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 | 자산운용 연구
-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정성감독 연구
- |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 |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연구분야                   |
|-----|--------|--------------------------------|------------------------|
| 정성희 | 실장     |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보험계리사             | 응용통계(회귀분석, 실험설계), 보험계리 |
|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
|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국제금융, 파생금융             |
|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 국제경제, 응용미시             |
| 최창희 | 연구위원   |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 보험계리, 경영과학             |
| 송윤아 | 연구위원   |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
| 황인창 | 연구위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
| 김규동 | 연구위원   | Temple University 보험학 박사/보험계리사 | 보험, 보험계리               |
| 기승도 | 수석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 통계학, 자동차보험             |
| 채원영 |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응용통계                   |
| 이아름 | 연구원    |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 금융, 무역                 |
| 한성원 |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 재무                     |
| 홍민지 | 연구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거시경제                   |
| 문혜정 | 연구원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계량경제, 거시경제             |
| 이유리 | 연구조원   |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 금융정책실

-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관한 연구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연구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연구분야              |
|-----|--------|---------------------------------------|-------------------|
| 김해식 | 실장     |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평가    |
| 백영화 | 부실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변호사                       | 보험법               |
| 안철경 | 선임연구위원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
| 김석영 | 연구위원   |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
| 임준  | 연구위원   |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산업조직론             |
| 변혜원 | 연구위원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산업조직, 응용미시        |
| 황현아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수료/변호사                     | 보험법, 상법           |
| 양승현 | 연구위원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법학 석사/변호사 | 비교법학, 보험법         |
| 정원석 | 연구위원   |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산업조직, 게임이론        |
| 김세환 | 부장     |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재무 및 보험           |
| 박정희 | 선임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마케팅               |
| 정인영 | 연구원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국제금융              |
| 이소양 | 연구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재무관리, 중국동향        |
| 손민숙 | 연구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형법, 보험법           |
| 이규성 | 연구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금, 재무            |
| 강해리 | 연구조원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 사회안전망연구실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 연금에 관한 연구
-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반 이슈 연구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연구분야              |
|-----|--------|----------------------------------------------|-------------------|
| 강성호 | 실장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재정금융, 연금보험        |
|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연금·보험 계리사                       |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
| 조용운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
| 최장훈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 박사               |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보험계리 |
| 오승연 | 연구위원   |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노동경제, 보건경제        |
| 이상우 | 수석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
| 김동겸 | 수석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재무관리              |
| 김혜란 | 연구원    |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재무관리              |
| 안소영 | 연구원    | Cass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보험, 리스크관리         |
| 정민지 | 연구조원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

### 기획행정실

-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의전 및 비서업무
-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 성명  | 직위    | 최종학위                                   | 업무분야          |
|-----|-------|----------------------------------------|---------------|
| 김경환 | 실장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손해사정사                     | 기획행정업무 총괄     |
| 홍성연 | 파트장   | 서울산업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                       | 회계, 출장, 규정 업무 |
| 변철성 | 수석담당역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자료실 업무        |
| 이상운 | 수석담당역 | 동서울대학교 공업경영학 학사                        | 수익사업회계 업무     |
| 이정환 | 파트장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경제학 박사 수료 | 기획, 총무, 행사 업무 |
| 김형진 | 수석담당역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공인노무사                     | 인사, 예산 업무     |
| 이성원 | 담당역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 급여, 회계 업무     |
| 성경은 | 인턴    | 한동대학교 경영학 학사                           | 총무 업무         |
| 오현지 | 인턴    |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 학사                       | 교육 업무         |

##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정기간행물 | 간행물 명                                | 발간 주기              | 주관       |
|-------|--------------------------------------|--------------------|----------|
|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2, 5, 8, 11월) | 금융정책실    |
|       |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연간(8월)             | 동향분석실    |
|       | Korean Insurance Industry            | 연간(8월)             | 동향분석실    |
|       | 보험동향                                 | 계간(3, 6, 9, 12월)   | 동향분석실    |
|       | KIRI 리포트                             | 격주간                | 동향분석실    |
|       | 고령화리뷰                                | 월간                 | 사회안전망연구실 |
| 용역보고서 | 보고서 명                                | 저자                 |          |
|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 황현아 외 5인           |          |
|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정택 외 2인           |          |
|       | 보험업 경쟁도 평가                           | 임준 외 4인            |          |
|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연구               | 정성희 외 2인           |          |



## 2018 연차보고서

---

발 행 인 한기정

편집위원장 조재린

편 집 위 원 장동식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9.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